

월간

재정포럼 9

월호

MONTHLY PUBLIC FINANCE FORUM / 2012년 9월호 제195호

현안분석 • • 주택시장거래 급감과 거래과세의 기능/ 노영훈
• 농업인의 노후 준비와 재정 지원/ 임소영

정책토론포트 • • 한국조세연구원 개원 20주년 기념세미나

정책흐름 • • 2013년 국세 세입예산(안) 외

CONTENTS

권두칼럼

동물세계의 세금과 분배의 지혜들 · 노영훈 02

현안분석

주택시장거래 급감과 거래과세의 기능 · 노영훈 06

농업인의 노후 준비와 재정 지원 · 임소영 31

정책토론티포트

한국조세연구원 개원 20주년 기념세미나 48

주요국의 조세 · 재정동향

EU 외 64

정책흐름

2013년 예산안, '경제활력 · 민생안정 예산'으로 편성 90

2012~2016년 국가재정운용계획 95

2013년 국세 세입예산(안) 108

2012년 상반기 중앙정부 재정수지(잠정) 111

한국 고용의 현주소 112

이슈애포커스

조세연구 20주년 세미나 “소득세 안 내는 근로자 10명중 4명” 외
..... 125



동물세계의 세금과 분배의 지혜들



노영훈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재정포럼』 편집위원장

붉은털원숭이나 흡혈박쥐 같은 동물들은 먹을 것을 나누어 종족을 보존한다고 한다. 코코넛 열매를 발견한 첫 붉은털원숭이는 ‘여기 먹이가 있다’라는 신호를 동료들에게 보내 그것을 함께 나누어 먹는다고 한다. 흡혈박쥐도 먹은 피를 게워내 운이 없어 배고픈 동료들에게 먹이는 재분배의 원칙을 실천한다. 구성원 중 이를 어기고 혼자 먹다 발각되면 제일 힘센 놈이 가혹한 처벌을 하는 등 조직의 규율을 유지하는 장치도 있다고 한다. 우리는 지금까지 중고등학교 생물시간에 배웠던 개미나 벌의 사례에서 분업의 이득을 터득한 군집체 동물의 계층구조와 사회성에 대해서만 알고 있었다. 동물행태학자들은 붉은털원숭이나 흡혈박쥐 이외에도 굴뚝새, 열대어 등 수많은 군집동물 사회의 세금 및 재분배 사례를 보고하고 있다. 군집동물의 개체 간 상호의존도 및 협력이 절실할수록 공동의 선을 위한 ‘세율’도 높다고 한다.

인간사회의 공동체 대 개인구성원 간 관계는 재분배 그 자체

하물며 동물도 이렇진대 10만년 인류역사에서 군집생활을 통해 종족을 보존해 온 인간사회의 공동체 대 개인구성원 간 관계는 재분배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다. 원시시대 전통을 그대로 유지하는 남미 파라과이의 아쉐이(Ache)족은 사냥하여 얻은 먹을거리로 공동의 밥상을 차려 나눠먹는다고 한다. 최고의 사냥꾼은 그가 잡은 사냥물의 60% 이상을 부족을 위해 내놓는다고 하니 이는 60%를 넘는 높은 개인소득세율에 해당하는 셈이다. 인류가 수렵생활을 끝내고 목축시대에 들어오면서 먹고 남은 것을 저장할 수 있는 기술이 발전하고 개인의 생산수단 사유화도 허용되면서 생산과 상업활동에 있어서 개인도 자본을 축적할 수 있게 되었다. 그 결과 수렵시대 때보다 공동체 내 구성원 간 불평등이 심화됐다. (이를 교정하기 위해)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섬 남부지역 탠드로이(Tandroy) 원시 부족은 한 개인이 죽으면 그가 사육하던 가축들을 부족민들이 모두 공동으로 잡아먹는 100% 세율의 상속세 제도를 운영하기도 했다.

결국 유전자나 종족의 보전을 위해 무리를 이루어 살아가는 동물이나 인간은 공동 협력과 이기적 행동 억제를 위해 제도와 규율을 만들게 된다. 부족이건 왕국이건 근대국가가건 공동체 구성원의 개인 능력과 노력의 정도는 천차만별이니 최소한의 공동체 질서 유지와 외침 방어를 위해 능력 있는 일부 구성원들에게 희생을 요구하는 셈이다. 세금은 구성원 개개인의 이기적인 행동을 억제하고 공동의 이익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다. 외침 방어를 위한 병역의 무도 넓은 의미에서는 '몸으로 때우는 세금'인 셈이다. 또 거둔 것을 능력 없고 운 없는 공동체 구성원들과 나누는 재분배제도가 기초생활보장 등 복지제도인 셈이다.


2008년 이후 밀어닥친 글로벌 금융 쓰나미로, 그리고 재작년부터 불거진 유럽발 재정 및 은행위기로 전 세계가 경기침체로 고통받고 있다. 그 결과 소득과 부의 분포가 불평등한 현상에 대해 많은 나라들이 조세제도를 개편하고 있다. 폐지되었던 부유세를 부활하기도 하고, 최고소득자에 대한 개인소득세 최고세율을 추가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런 때야말로 인간이나 동물이 군집을 이루어 모여 살기 시작한 과거로 돌아가 위기를 극복하는 지혜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 위에서 언급한 동물들이나 원시시대 부족민들이라면 오늘날의 위기 극복을 위해 어떻게 세금과 재정제도를 운영했을까?

.....
세금은 구성원 개개인의 이기적인 행동을 억제하고 공동의 이익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다.
또 거둔 것을 능력 없고 운 없는 공동체 구성원들과 나누는 재분배 제도가 기초생활보장 등 복지제도인 셈이다.
.....

위기 극복을 위한 세금과 분배의 지혜

첫째, 위기상황에 처한 공동체가 외부환경이 힘들 때일수록 구성원들은 더욱 더 상호부조의 정신을 발휘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조선시대 왜란과 호란을 맞아 우리 선조들이 보여준 의병활동과, 그리고 가까이 1997년 외환위기에서 우리 국민이 보여준 금모으기 행사는 우리 민족이 공동체의 위기 극복을 위해 이기심을 극도로 자제하는 내공을 이미 갖추고 있다는 좋은 예로서, 우리나라는 위기 극복을 위한 좋은 여건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일자리 나누기는 동물사회에서의 먹을 것 나누기와 큰 틀에서 차이가 없다.

둘째, 원칙 없는 나눔의 미학을 강조하느라 시장자본주의의 핵심인 개인의 창의성, 혁신 마인드, 기업가 정신을 위축시키게 되면 사회발전과 성장의 원동력을 잃게 된다. 따라서 위기의 시대에 사냥을 잘 하거나 사냥터를 넓힐 수 있어서 공동체 전체의 파이를 키울 수 있는 행위들에 대한 보상에 인색해서는 안 된다. 탤드روی 족처럼 형평성을 위해 자본 스톡(stock)을 다 소비해 버려서야 되겠는가?

마지막으로, 세금이나 정부지출과 같은 재정적 수단은 공동체의 보존과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필요 장치이니, 위기하에서 관찰되는 이기적 개인의 탈세 행위나 부조리 부패는 철저히 감시해야 할 것이다. 혼자만 먹어 배가 불룩해져 탈세행위가 쉽게 드러나는 동물과 달리 인간에게는 화폐가 있으니 은닉하기가 더욱 쉽기 때문이다. 

* 이 원고는 『이코노미스트』(2009. 5. 5)에 게재된 것을 필자가 수정·보완한 것입니다.



| 현안분석 |

- 주택시장거래 급감과 거래과세의 기능
노영훈 ·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농업인의 노후 준비와 재정 지원
임소영 · 한국조세연구원 부연구위원

* 이 원고는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서 한국조세연구원의 공식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편집자 주>

주택시장거래 급감과 거래과세의 기능

I. 서론



노영훈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yhrul@kipf.re.kr)

과거 참여정부 시절에 부동산 거래과세 완화와 보유과세 강화라는 정책명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거래세에 해당하는 취득세 및 등록세의 법정세율 완화가 시작되었다. 한편 주택에 대한 거래세인 취득세 및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과거 지방세법상의 '시가표준액'에서 '주택공시가격 및 실지거래가액' 중심으로 개편되어 과세표준이 상승하기 시작하였다. 그 당시 거래세 세율 인하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선진국은 거래비용은 높을지언정 거래세율은 낮다”, “외국의 거래단계 실질비용 부담수준도 각종 중개 및 수수료 등을 포함할 때 높다” 등 다양한 주장들이 있었고, 부동산 거래비용의 국제비교 연구도 있었다.¹⁾ 흥미로운 것은 부동산 거래시장에서 거래세건 거래수수료건 일시적(upfront) 비용으로 거래시점에서 발생하는 부담의 변경이 거래량에 미치는 비효율성 또는 후생효과는 정책당국자들의 직접적인 관심사는 아니었다.

2008년 말 세계 금융위기 이후 우리나라는 주택가격 하락으로 민간부문의 주택대출의 부실자산화가 진행되고 증가된 차압물량도 매물화하면서, 신규 주택대출에 대한 용자 조건 및 대출 심사도 강화되어 주택매매시장 거래가 더욱 위축되고 있다. 또한 2~3년 전에 대체로 계약금 5~10% 비용으로 선분양되었던 아파트 계약자들이 60% 이상의 중도금 납부를 '아파트집단대출²⁾'로 충당하다가 사용승인(또는 준공) 시점에 이르러 분양가격 이하로 시장가격이 하락하여 시공사를 상대로 입주 거부 및 각종 소송이 제기되는 등 가격 하락과 거래량 감소로부터 파생된 매우 다양한 양상의 현상들이 관찰되고 있다.

1) 김정훈(2004), 김현애(2010)

2) 분양계약자에 대한 아파트집단대출은 향후 들어설 주택물건을 담보로 대출이 이루어지는데 그 물건을 취득할 권리만 있을 뿐 그 물건에 대한 완전한 소유권도 확보하지 못했으므로 대출금융기관은 기존주택에 대한 담보대출과 달리 입주 예정시점에서의 담보대상 주택에 대한 시세예측 및 계약자 개인의 신용능력을 평가했어야 했는데, 2~3년 전의 물건만 보고 대출이 실행된 셈인.

본고에서 다루고자 하는 주택시장의 거래 급감과 주택거래세수 감소의 문제는 최근 언론보도 2건에서 나타난, 어떻게 보면 상반된 정책 주장에 대한 관심에서 출발한다. 지난 8월 13일 우리은행 부동산연구팀이 발표한 『주택시장 변동 예측 및 조세정책효과 분석 연구』 보고서와 관련하여 “취득세 감면 시 월 주택거래량 2.8% 증가”라는 보도³⁾와 서울연구원이 수행한 『취득세 인화에 따른 지방세제 개편방안』 정책보고서에 대해 “취득세를 감면, 서울 세수기반 훼손”이라는 타이틀로 요약 보도한 기사⁴⁾가 그것이다. 전자는 취득세 등 거래세 부담이 주택시장 거래량에 미치는 효과를 명시적으로 계량화하여 제시하면서 상당히 효과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셈이고, 후자는 부동산 거래 활성화의 효과가 없다고 주장하는 내용이기 때문이다.

물론 지난해에도 이와 유사한 논란은 있었다. 2011년 3월 22일 정부는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으로 50% 취득세 경감안을 발표한 후 주택취득세 경감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세수 감소분의 전액 보전 여부와 관련하여 지방재정 보전 검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여 논의하기로 결정했을 때이다. 주택취득세 50% 경감으로 보전해야 할 지자체 세수 감소분의 규모와 관련하여 지방정부 및 행정안전부에서는 주택거래량의 세율 인화에 따른 탄력성은 매우 낮아서 세수 감소분은 거의 세율 경감에 따른 세수 손실분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던 반면, 국토해양부 등 경감대책을 입안한 부처들은 거래 활성화를 목적으로 시행하는 세율 경감에 거래량이 어느 정도 반응할 것이므로 세수 감소분은 거래량 증가 부분을 감안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마침 정부는 지난 9월 10일에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해 개별소비세율 인하,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율 조

주택시장의 거래 급감과 주택거래세수 감소의 문제와 관련하여 취득세 등 거래세 부담이 주택시장 거래량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 서로 상반된 분석이 나오고 있다.

정과 함께 부동산시장 거래 활성화를 위해 취득세율 50% 감면과 미분양주택 구입 시 5년간 양도차익 비과세를 내용으로 한 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⁵⁾

본 연구는 거래량 변화를 확인하는 수집 자료의 문제점, 명목법정세율 변경을 통한 거래세 부담이 거래시장에서 발휘할 수요와 공급효과의 논리, 거래가액에 따른 차등세부담이 갖는 과세의 형평성 및 비효율성 문제를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이러한 논의에 기초하여 주택거래시장의 거래세 관련 세제 개편 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한 주택취득세 감면의 효과를 엄밀하게 실증적으로 분석할 때에 유의해야 할 ① 종합대책 중 세율 인하만의 효과만을 추정했는가 ② 취득세 감면발표 시점과 발표 시점 간의 시차에 따른 발표효과(announcement effect) 문제, ③ 감면발표 이후 시행 이전까지의 기간 동안에 발생하였을 거래분의 연기 효과 등을 엄밀히 살펴보는 실증분석 연구는 향후 과제로 남기기로 한다.

3) 『서울파이낸스』지 보도, 우리은행 부동산연구팀은 2011년 한시적으로 실시된 감면은 매월 2.8%의 거래량 증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당시 감면기간이 약 9개월 정도임을 감안하면 약 25% 정도의 거래량 증대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분석함.

4) 『세계일보』, 서울연구원(구 서울시장개발연구원) 김진 · 배준식(2012).

5) 본 원고의 초고기 원내세미나에서 발표되던 당일 발표된 9.10부동산대책 중 주택취득세 50% 감면에 초점을 맞추어 원고를 소폭 수정함.

국토해양부의 온나라포털(건축물 기준) 주택거래량 통계를 거래원인별(매매, 판결, 교환, 증여, 분양권, 기타)로 분류한 자료 중 매매나 교환거래만을 대상으로 하고, 또 거래주체별 분포 중 개인 대 개인으로 국한된 거래들만을 기존 중고 주택에 대한 유상거래량으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

II. 주택거래량 감소와 주택취득세 세부담 및 세수 변화

1. 주택거래량 관련 통계

가. 우리나라 주택거래량 통계의 현실과 애로점

우리나라 주택시장의 거래량만을 조사한 통계로는 <부표 1>에서 볼 수 있듯이 두 가지 자료원천(source)이 존재하는데, 국토해양부 온나라부동산 통합포털 사이트의 건축물거래통계와 실거래아파트공개건수가 있다. 전자는 매매, 판결, 교환, 증여, 신탁·해지, 분양권, 기타 등 7개 거래 유형을 망라하여 집계하다가 올해부터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거래는 제외한 거래량 통계로 개편되었다. 반면 후자는 2006년 주택 및 부동산거래신고제 도입 이후 유상매매거래 자료 중 겹중 부적정 및 미완료 같은 이상 관찰치(outlier), 그리고 분양권 및 입주권 거래와 지분 거래를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는데 그 이유는 실거래가지수 작성의 정확성을 제고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기 때문이다.⁶⁾ 국토해양부의 온나라포털(건축물 기준) 주택거래량 통

계를 거래원인별(매매, 판결, 교환, 증여, 분양권, 기타)로 분류한 자료 중 매매나 교환거래만을 대상으로 하고, 또 거래주체별 분포 중 개인 대 개인으로 국한된 거래들만을 기존 중고 주택에 대한 유상거래량으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

그러나, 이러한 건축물거래 통계자료 또한 상속의 경우는 별문제 없이 제외할 수 있지만, 법원경매·공매로 인한 이전자료를 포함하고 있지 않은데도 주택 시장 불황기에는 이러한 방식으로 급매물이 가격조정과 함께 정리되는 것이 일반적인 특성이므로 이러한 거래가 제외된다는 것은 큰 단점이라 할 수 있다. 법원의 주택 관련 경매 물량은 서울·인천·경기의 경우 각각 지난 1년간(2011. 9~2012. 8) 1만 3,446건, 1만 411건, 2만 6,118건이고 매각률(또는 낙찰률)은 31.5%, 35.2%, 31%여서 매각건수는 각각 4,234건, 3,663건, 8,085건에 달하는데, 서울 아파트 거래량 및 수도권 아파트 거래량에 최소한 5~10% 정도는 추가되어야 법원경매 및 공매 등 비정상거래도 포함한 중고아파트 소유권 변동에 따른 거래량이라고 볼 수 있다. 참고로 미국의 전미부동산중개업자협회(National Association of Realtors)가 매월 연간 기준으로 조정된 기존주택거래량(annual rate of existing home sales)에는 비정상거래(distressed sales)⁷⁾로 차압주택 foreclosure) 및 은행허용강통주택거래(short sales)까지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대법원 법원 행정처의 법원경매 자료를 전달받아 거래량 자료에 포함되도록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우리나라는 선분양제도가 아파트 등 공동주택들의 공급 과정에서 보편화되어 있는 상황과 맞물려 주택의 범위와 거래량 산정의 기간 구분을 정의하기 매우 어려워진다.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조

6) 아파트 실거래가 산정 시 사용되는 매매건수를 국토해양부 제공 (온나라포털) 아파트 매매건수와 비교해 보면 지역적으로 다소 차이는 있지만 평균 77~86% 수준에 불과하여 거래량이 과소집계된다고 할 수 있음.

7) In U.S. distressed sales account for 30 to 50% of the total annual sales rate of 4.5 to 6.5 million during 2008 to 2010 period.

합)입주권이나 분양권에 대한 계약도 주택선물을 미래 특정시점에 인도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분양시점 가격기준으로 계약한 선물거래이므로 넓은 의미의 주택 거래라고 할 수 있다. 즉, 현재 상태로서는 (실물)주택이 아니라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지만, 현·선물을 망라한 장기적 주택시장을 상정하면 이러한 거래도 주택거래로 포함될 수 있기 때문이다. 2~3년 전 선분양되어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존재하다가 신축 또는 재건축주택이 완공되어 실물주택으로 전환되는 것들을 언제 거래된 것으로 처리하느냐는 중요한 문제이다. 신축의 경우 분양계약을 맺은 2~3년 전에 거래되어 완공시점에 인도된다고 해석하면 중고주택 거래시장에서는 제외하는 것이 합리적이지만 현행 거래량 통계에는 포함되어 있다. 또한 주택재건축 및 재정비사업은 건물 멸실과 함께 기존 주택재고에서 제외한 후 재건축 완료 후 신규 주택시장에서 공급으로 다루는 것이 합리적이지만 작년까지는 거래량 통계에 포함되다가 올해부터 신탁 및 해지로 재분류되어 제외되기 시작했다.⁸⁾ 조합입주권 및 분양권거래와 선분양된 주택의 완공(또는 사용승인)분을 이렇게 분리할 수 있으나, 준공후 미분양물량은 그래도 포함하게 된다. 주택재건축 및 재정비사업의 추진이 지연됨에 따라 조합으로의 신탁 및 해지활동이 둔화되는 것 또한 거래침체 현상의 일종으로 해석할 수는 있다.

국토부 주택거래 6개 거래원인별 분포 중 매매 대 분양권거래의 상대적 비중 변화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아파트의 경우 거래시장 침체기였던 2006년에 수도권과 서울은 각각 62.1 대 31.9와 70.4 대 21.5로 분양권 거래비중이 매우 높았음을 알 수 있다. 매매시장이 활황기였던 2006년의 수도권 분양권 거래비율은 14.6%와 10.9%에 불과하여 2010년에 비해 절반 정도

우리나라는 선분양제도가 아파트 등 공동주택들의 공급 과정에서 보편화되어 있는 상황과 맞물려 주택의 범위와 거래량 산정의 기간 구분을 정의하기 매우 어려워진다.
(조합)입주권이나 분양권에 대한 계약도 주택선물을 미래 특정시점에 인도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분양시점 가격기준으로 계약한 선물거래이므로 넓은 의미의 주택거래라고 할 수 있다.

수준이었음을 고려하면, 특히 침체기에는 기존주택매매보다는 분양권 거래(향후 입주할 신축주택 또는 재건축 중인 아파트 조합원입주권 등) 형태의 거래가 중요해지는 것이 관찰된다.

〈표 1〉 수도권 기준 아파트거래 거래원인별 건수 및 비중
(단위: 동(호)수, %)

	합 계	매 매	판 결	교 환	증 여	분양권	기 타
2006년	573,280 (100.0)	436,978 (76.2)	1,306 (0.2)	126 (0.0)	11,795 (2.1)	83,739 (14.6)	39,336 (6.9)
2007년	353,343 (100.0)	251,069 (71.1)	1,538 (0.4)	116 (0.0)	9,407 (2.7)	72,177 (20.4)	19,036 (5.4)
2008년	330,287 (100.0)	236,753 (71.7)	1,311 (0.4)	190 (0.1)	10,486 (3.2)	73,871 (22.4)	7,676 (2.3)
2009년	376,601 (100.0)	257,539 (68.4)	1,128 (0.3)	227 (0.1)	19,052 (5.1)	96,282 (25.6)	2,373 (0.6)
2010년	283,859 (100.0)	176,408 (62.1)	860 (0.3)	131 (0.0)	12,988 (4.6)	90,439 (31.9)	3,033 (1.1)
2011년	333,665 (100.0)	246,846 (74.0)	1,045 (0.3)	134 (0.0)	12,547 (3.8)	70,876 (21.2)	2,217 (0.7)
2012년 (7월)	134,622 (100.0)	91,230 (67.8)	636 (0.5)	57 (0.0)	6,211 (4.6)	35,740 (26.5)	748 (0.6)

8) 주택재건축사업에 들어가는 아파트들의 경우 조합에 구아파트에 대한 신탁등기를 하게 되고 완공 후 이전고시를 한 후에는 신탁등기해지와 신축아파트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게 되는데 이러한 거래들이 빈번히 발생하는 서울 및 수도권 주택시장에서는 그 시간적 처리가 중요함.

우리나라는 2005년 참여정부의 보유세 강화정책에 따른 (지방)재산보유세 개편과 종합부동산세 신설은 당시 거래과세인 취득세 및 등록세에도 커다란 세제 및 세정적 변화를 야기했다.

〈표 2〉 서울기준 아파트거래 거래원인별 건수 및 비중

(단위: 동(호)수, %)

	합계	매매	판결	교환	증여	분양권	기타
2006년	182,299 (100.0)	141,812 (77.8)	673 (0.4)	67 (0.0)	4,840 (2.7)	19,838 (10.9)	15,069 (8.3)
2007년	88,448 (100.0)	65,817 (74.4)	816 (0.9)	61 (0.1)	3,321 (3.8)	13,012 (14.7)	5,421 (6.1)
2008년	88,171 (100.0)	63,347 (71.8)	579 (0.7)	94 (0.1)	4,296 (4.9)	15,871 (18.0)	3,984 (4.5)
2009년	104,452 (100.0)	79,042 (75.7)	362 (0.3)	122 (0.1)	5,648 (5.4)	17,950 (17.2)	1,328 (1.3)
2010년	66,301 (100.0)	46,672 (70.4)	397 (0.6)	55 (0.1)	4,227 (6.4)	14,222 (21.5)	728 (1.1)
2011년	80,537 (100.0)	63,622 (79.0)	377 (0.5)	65 (0.1)	3,925 (4.9)	11,921 (14.8)	627 (0.8)
2012년 (7월)	32,012 (100.0)	23,273 (72.7)	152 (0.5)	27 (0.1)	1,980 (6.2)	6,336 (19.8)	244 (0.8)

결국 분석대상 범위를 좁혀 현재 존재하는 주택저량(existing house stock) 중 (매매)거래되는 주택들만에 대한 수요 및 공급을 1년을 단위로 측정할 때 거래시장으로 국한하여 분석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경우 '시간적' 측면에서 여전히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매매시장이 존재하고 '신축주택(new home sales) 유량시장(flow market)'과 밀접한 상호연관성을 가지므로 이들과 연계하여 분석할 수밖에 없다.

나. 주택취득세 등 과세당국 자료

어느 나라에서나 행정구역이나 등기소별로 부동산에 대한 권리관계가 변동되는 경우 등기·등록 및 신고를 의무화하고 있는 법규정 때문에 이에 대한 행정 업무를 기록으로 남긴 공적장부(대장)를 통해 거래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법원등기소 부동산등기부, 시·군·구청의 토지 및 건축물대장, 부동산거래신고대장 등이다. 거래단계에 각종 조세가 부과될 경우 거래내역이 신고되면서, 세정당국은 보유과세 세원관리상 유지관리하고 있는 각종 재산세대장을 거래내용을 반영하여 갱신(update)하는 업무도 수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5년 참여정부의 보유세 강화정책에 따른 (지방)재산보유세 개편과 종합부동산세 신설은 당시 거래과세인 취득세 및 등록세에도 커다란 세제 및 세정적 변화를 야기했다. 2004년 귀속분까지 주택에 대한 취득세는 주택건물과 그 부속토지로 구분하여 신고서작성 및 과세대장이 관리되어 지방세정연감상의 취득세 부과편도 과세물건이 토지·건축물·중기 등으로 구분되어 정리되었다. 따라서 토지와 건물이 일체로 거래되는 것이 일반적인 주택거래임에도 불구하고 토지분 취득세와 건축물분 취득세 부과자료로부터 주택에 대한 취득세 부과자료를 정확하게 추출해 내는 것은 불가능하였다. 그러다가 2005년 귀속분부터는 지방세정연감 취득세 부과편에 주택취득세에 대한 건수와 금액이 전국 및 광역지자체별로 총액이 수록되고 또 신고납부분과 보통징수분과 같은 징수방법별로도 구분되어 집계되는데, 그 이유는 주택에 대해서는 토지와 건물을 통합평가하고 통합과세하는 방식으로 변화했기 때문이다. 〈표 4〉는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연감 취득세 부과편의 주택취득세에 대한 연도별 건수, 금액, 추정징수액을 전국, 수도권, 서울 지역으로 구분하여 정리한 것이다.

지방세인 취득세 납세의무가 주택에 대해 발생하는 대부분은 지방세법 규정⁹⁾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기존 주택의 유무상거래 및 신축주택 취득의 경우들이다. 따라서, 신축아파트의 준공이나 사용승인 후 분양계약자가 입주하는 시점에서는 취득세 납세의무가 소유권보존등기 이전 시점이라 하더라도 발생한다. 따라서 지방세정연감상의 최근 3년간의 2008년, 2009년, 2010년 주택취득세 부과 건수 및 세액은 128만건, 115만건, 107만건 및 2조 9331억원, 2조 9,626억원, 2조 8,420억원으로 나타나는데, 연간 과세건수 100만건 이상에는 신축주택완공건수, 주택개보수건수 등이 모두 포함된다. 국토해양부의 건축물거래 중 주거용 건물물 기준으로 한 전국 주택거래건수 103만 7,229건과 비교할 때, 국토부는 신축주택 완공을 거래로 파악하고 있고 행안부는 취득으로 파악하고 있으므로 양쪽 자료에 모두 포함되어 있다. 여기에 행안부쪽 주택취득세 과세자료는 증축 및 개보수, 상속 등도 포함하므로 가장 넓은 거래량 개념이며, 국토부 자료와 마찬가지로 중고주택만의 유상거래(매매)만을 추출해 내야 이러한 거래에 적용되는 주택취득세 세율 변화에 따른 거래량 변화를 추정해 볼 수 있다.

2. 주택거래량 급감의 정도

국토부의 거래량 통계를 사용하여 올해 주택시장 거래량 급감 현상을 강조하는 글들이 많은데 우리가 빠지기 쉬운 비교 기간의 함정을 살펴보기로 하자. 연도별 국토부 거래량 통계는 1월부터 12월까지를 기준으로 월별거래량을 지역별, 주택유형별, 거래유형별로 집계하고 있다. 올해 7월 말까지의 월거래량만이

지방세인 취득세 납세의무가 주택에 대해 발생하는 대부분은 지방세법 규정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기존주택의 유무상거래 및 신축주택 취득의 경우들이다.

이용가능하므로, i) 과거 연도들의 인위적인 1~12월 합계액과 올해의 1~7월 합계액을 기간 단위 차이를 감안하여 비교할 수 있고, ii) 전년도 1~7월 누적거래량들과 비교할 수도 있고, iii) 아니면 최근 1년간(즉, 2011.8~2012.7) 누적거래량을 과거 해당 기간들과 비교할 수도 있다. [그림 1]에서 드러나듯이 월별거래량은 변동성이 심하고 매매거래로 국한한다 하더라도 계약일에서 잔금 종료까지 주택 매매에 통상 3개월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므로 분석의 기본시간 단위로 삼기에는 부적절하다. 따라서, 최소 3개월, 6개월, 12개월 기간들의 거래량 자료를, 인위적인 기간 구분에 기초한 분기·반기·연도 거래량 자료를 계절조정된 것들과 대조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2011년 한 해 서울의 주택 거래량은 14만 1,596호로 2006년의 32만 3,392호와 비교하여 그 절반에도 못 미치는 43.8% 수준이었고, 올해 들어 전국 주택 거래량도 현재 집계 가능한 1월부터 7월 말까지 매매거래 기준으로 40만 79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2% 줄었고, 국토해양부가 자료를 집계하기 시작한 2006년 이후 사상 최저치라는 발표가 있었다. 그러나, 올해 7월까지의 전국 주택 거래량은 거래가 많았던 작년 2011년 동기가 아닌(거래량이 적었던) 2010년 동기와 대비하면 97.8%로 유사한 수준이다. 또, 올해 7

9) 지방세법 제6조는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고 규정하여, 기존주택을 매매, 교환, 상속·증여하는 유무상거래 이외에도 주택 신축도 포함하는 등 보다 훨씬 넓은 범위를 가지며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과세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국세인 양도소득세상의 양도의 개념과 다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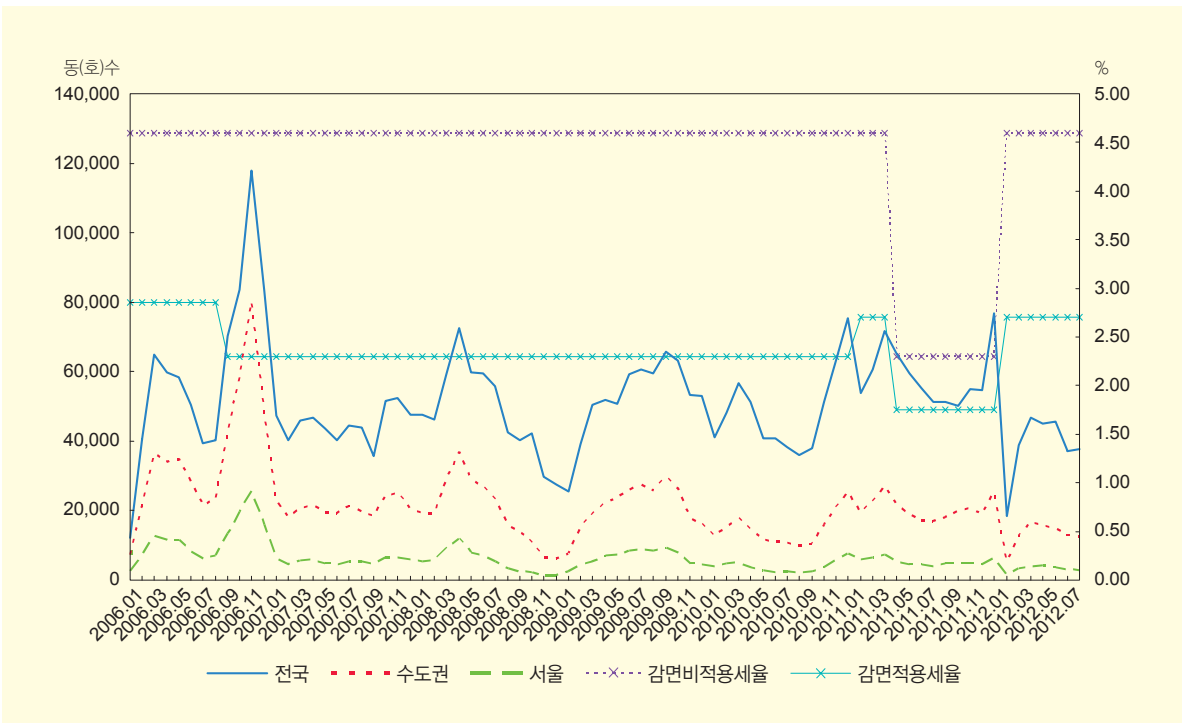
결론적으로 말하면 2012년 올해 상반기 주택거래량이 급격히 감소한 것은 명확하며, 침체기였던 2010년에도 못미치는 수준이다.

월까지의 7개월간 서울 아파트 거래량 3만 2,012건은 거래가 많았던 2006년 및 2009년 연간거래건수 18만 2천건 및 10만 4천건과 비교하면 7개월임을 감안하더라도 크게 적은 것처럼 보지만, 거래가 적었던 2010년 6만 6,301건과 비교해도 낮은 수준이다. 다만 연도 기준이 아닌 최근 1년을 기준으로 비교하면, 작년 8월부터 올해 7월까지의 최근 1년간 서울 아파트 거래량 6

만 3,946건은 그 전 1년 동안의 거래량과 대체로 유사한 수준이다. 기준점(baseline) 기간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거래량 침체에 대한 인식은 달라진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2012년 올해 상반기 주택거래량이 급격히 감소한 것은 명확하며, 침체기였던 2010년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지역적으로 보면 수도권 및 서울이 그리고 주택유형 중에서는 아파트의 매매 거래량 감소가 가장 심해서, 전국아파트 거래량 중 수도권과 서울 지역의 거래 비중이 2006년의 60.6% 및 19.7%에서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33.9% 및 8.6%로 줄어들었다. 즉, 아파트의 매매거래만 분기별로 정리한 [그림 2]를 살펴보면, 올해 1사분기 거래량이 전국 수도권 서울 모두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8년 4사분

[그림 1] 아파트 매매 건수와 주택 취득 시 적용 세율 추이(월별)



주: 1. 취득 시 적용되는 세율은 농특세, 교육세를 포함한 세율임.
2. 아파트 매매 건수 기준

기 최저치나 2010년 3사분기 거래량에 근접했고, 올해 1월부터 7월까지로 연장할 경우 거래량은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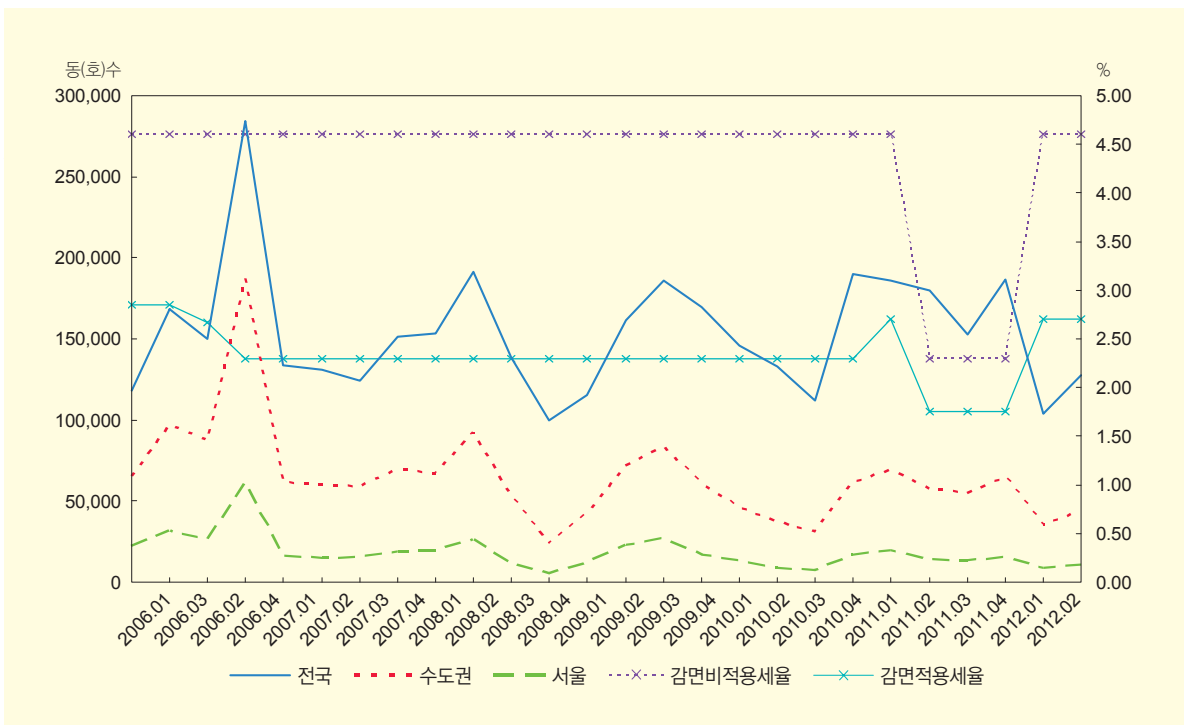
3. 주택취득세 세율 및 세수변화

〈표 3〉은 주택에 대한 거래과세들의 법정명목세율의 변화를 2004년부터 정리한 것이다. 참여정부가 보유과세 강화와 거래과세 완화를 추진하기 직전인 2004년까지는 총부담 합계세율 5.8%이었다. 2005년 등록세 세율 인하, 2006년 취득세 세율 인하로 개인간 주택매매의 경우 2.3%까지 크게 하락하게 된다. 2006년 한 해 연평균 주택거래세율 합계는 기간가중치를

참여정부가 보유과세 강화와 거래과세 완화를 추진하기 직전인 2004년까지는 총부담 합계세율 5.8%이었다. 2005년 등록세 세율 인하, 2006년 취득세 세율 인하로 개인간 주택매매의 경우 2.3%까지 크게 하락하게 된다.

적용할 경우 2.67%가 되어 33% 정도 하락한 셈이다. 그러나 2005년부터 거래세과표가 실지거래가액에 접근하도록 변경되면서, 종전의 취득 및 등록 당시의 신고가액으로 저가 신고된 단독주택 등에 대해 (행자부) 시가표준액 대비 3배 수준으로 그리고 아파트 (국세

[그림 2] 아파트 매매 건수와 주택 취득 시 적용 세율 추이(분기별)



주: 1. 취득 시 적용되는 세율은 농특세, 교육세를 포함한 세율이며 분기별 평균치임
2. 아파트 매매 건수 기준

주택취득세는 최저치에 달한 2010년의 경우, 최고치였던 2006년 대비 취득건수는 20% 감소하지만 부과세액은 8% 이내로 감소하는 등 거래량 감소폭에 비해 세액 감소는 상대적으로 적어 세수는 대체로 유지되는 경향을 보이는데 동 기간중 주택거래세 법정세율에는 그리 큰 변화가 없었다.

청) 기준시가와 대비하여 투기지역 내의 아파트들은 실거래가신고가 의무화되어 1.5~2배 수준이 되었으므로 세율 인하와 과표 인상이 결합된 거래세 세부담은 오히려 증가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된다.

취득세 감면은 원래 2006년 9월 1일 지방세법개정 시부터 2009년 말까지만 한시적으로 적용토록 지방세법 부칙에 일몰규정으로 명기되어 있었는데, MB정부가 들어 침체된 주택거래 활성화 등을 위하여 2010년 말까지 적용시한이 연장되었다. 2010년부터 4%로 환원될 계획이었으나 2010년 저세율 적용 기간을 1년 더 연장했고 2011년부터는 9억원 초과 주택 혹은 다주택 보유자의 취득에 대해 법정세율인 4%로 환원했지만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세율을 불과 3개월여 만에 다시 본세를 1%와 2%로 인하했다. 이같은 감면 조치는 2011년 말 일몰된 후, 2012년 들어서 취득세는 2.7%의 경감세율과 4.6%의 기본세율로 환원되었다. 이 중 2011년부터 9억원 초과 고가주택의 유상거래에 대한 세부담 급등이 예상되어 2010년 4사분기에는 고가주택 비중이 높은 서울 강남지역은 미래거래를 앞당기는 효과가 발생하였다. 고가주택 유상거래를 앞당겨 왜곡을 야기한 효과와 더불어, 9억원을 소액 상회한 주

택취득자들의 담세능력이 9억원 이하 주택취득자에 비해 2배를 넘는다고 보기 어려워 세부담 형평성 문제가 야기되었다.

2011년부터 주택에 이중적으로 과세되던 (구) 취득세·등록세는 지방세 유사세목을 통합하여 세목을 간소화한다는 취지하에 취득세와 (취득관련분) 등록세가 취득세로 통합되고, 과거 각각 신고·납부하던 것을 잔금납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로 신고·납부토록 변경되었다.¹⁰⁾

주택취득세는 2005년부터 집계되어 2006년 취득건수 134.5만건에 3조 776억원 (부과)세액으로 최고치를 기록한다. 그 이후 2008년, 2009년, 2010년 주택취득세 부과 건수 및 세액은 128만건, 115만건, 107만건 및 2조 9,331억원, 2조 9,626억원, 2조 8,420억원으로 변화하는데, 최저치에 달한 2010년의 경우, 최고치였던 2006년 대비 취득건수는 20% 감소하지만 부과세액은 8% 이내로 감소하는 등 거래량 감소폭에 비해 세액 감소는 상대적으로 적어 세수는 대체로 유지되는 경향을 보이는데 동 기간중 주택거래세 법정세율에는 그리 큰 변화가 없었다(2.85% → 2.3%).

〈표 3〉에 따르면 2006년의 주택관련 거래세 명목세율은 4.0%에서 연평균 2.67%로 33% 정도 인하되었고 거래량은 행안부 주택취득세건수로 12.5% 주택취득세수는 25.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거래세 명목세율의 연간기준 거래량탄력성은 0.37 세액탄력성은 0.77이라고 말할 수 없다. 그 이유는 주택거래세 과세표준 인상 및 수 많은 주택시장 변수들이 복합적으로 발생했기 때문이다.

10) 취득과 무관한 등록세와 면허세는 「등록면허세」로 통합 간소화함.

〈표 3〉 주택 거래과세의 법정세율 변화 추이

구분 \ 년도		2004년	2005년	2006.1.1~ 2006.8.31	2006.9.1~ 2010.12.31 ¹⁾	2011.1.1~ 2011.3.21 ²⁾	2011.3.22~ 2011.12.31 ³⁾	2012.1.1~
취득세	본세(유상·매매·교환)	2%	→	2%(1.5%)	2%(1.0%)	4%(2.0%)	2%(1%)	4%(2.0%)
	농특세(세액의 10%)	0.2%	→	0.2%(0.15%)	0.2%(0.1%)	0.2%(0.5%) ⁴⁾	0.1%(0.65%) ⁴⁾	0.2%(0.5%)
	교육세(세액의 20%)	-	-	-	-	0.4%(0.2%)	0.2%(0.1%)	0.4%(0.2%)
	계	2.2%	→	2.2%(1.65%)	2.2%(1.1%)	4.6%(2.7%)	2.3%(1.75%)	4.6%(2.7%)
등록세	본세(이전등기)	3%	2%(1.5%)	2%(1.0%)	→	취득세와 통합	-	-
	교육세(세액의 20%)	0.6%	0.4%(0.3%)	0.4%(0.2%)	→	취득세에 부과	-	-
	계	3.6%	2.4%(1.8%)	2.4%(1.2%)	→	-	-	-
합 계		5.8%	4.6%(4.0%)	4.6%(2.85%)	4.6%(2.3%)	4.6%(2.7%)	2.3%(1.75%)	4.6%(2.7%)

주: 1 () 안은 (개인간) 주택거래에 대한 감면이 감안된 법정세율임.

1) 2006년 9월 1일의 지방세법 개정으로 지방세법 제273조의 2에 과거 개인간 주택거래에 대한 경감세율이 법인에게서 신규 분양받는 주택에 대해서도 적용되게 되었으며, 취득세에 대한 경감률을 25%에서 50%로 확대하여 2010.12.31까지 적용.

2) 2011.1.1부터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부동산등기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가 부과되지 않고, 취득·등록세가 통합되어 취득세만 과세됨. 2010년말 종료 예정이었던 (개인간)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등록세 50% 감면 혜택이 9억원 이하 1주택 취득자에 한해 2011년 말까지 1년간 연장. 반면 9억원 초과주택 취득과 다주택자의 주택취득에 대하여는 2011.1.1부터 감면 배제됨을 의미.

취득세율:

- 9억원 이하, 1주택: 2%(100분의 50 경감)

- 9억원 초과 또는 2주택 이상: 4%

3) 2011년 3월 22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잔금을 치르는 주택에 한해서 한시적 감면

- 9억원 이하, 1주택: 1%(100분의 75 경감)

- 9억원 초과 또는 2주택 이상: 5%(100분의 50 경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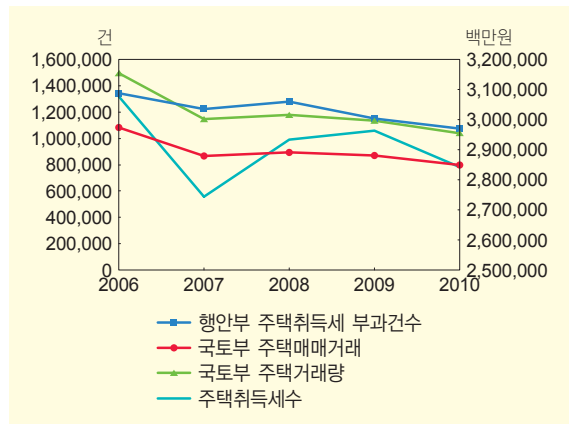
4) 감면 시 감면세액의 20%

〈표 4〉 국토부 주택거래량과 행안부 주택취득세 비교

(단위: 건, 호, 백만원)

연도	국토부거래량	국토부 매매거래만	행안부 주택 취득세건수	주택취득세수
2005			1,195,608	2,449,599
2006	1,494,935	1,082,453	1,344,607	3,077,652
2007	1,148,574	867,933	1,221,564	2,743,246
2008	1,179,742	893,790	1,277,821	2,933,131
2009	1,133,637	870,353	1,149,145	2,962,601
2010	1,037,229	799,864	1,074,593	2,842,000
2011	1,231,393	981,238		
2012(7)	543,128	400,799		

[그림 3] 국토부 주택거래량과 행안부 주택취득세 비교



결국 2008년부터는 부동산교부세는 거래세 감소분을 보전해 주는 장치로 활용되는데, 중앙정부가 주도한 주택취득세의 법정명목세율 감면이 있을 때마다 중앙과 지방정부 간에는 세수손실의 규모와 방식을 두고 갈등이 발생해 왔다.

4. 주택취득세 감면에 따른 세수보전

주택취득세 감면에 따른 지방세 세수손실을 중앙정부가 지방재정조정제도를 통해 보전해 주는 제도는 2006년부터 시작되었다. 당시 '부동산 보유세 부담 강화'를 위해 2005년 국세인 종합부동산세가 도입되면서 지방 재산세 감소분을 보전하기 위해 도입한 지방교부세법 및 하위 규정에, '부동산거래세 부담 완화정책'으로 2005년부터 법정명목세율이 인하되면서 2006년 12월 27일에는 종합부동산세의 교부기준을 규정한 지방교부세법시행령에 세율 감소분을 재산세 감소분과 거래세 감소분¹¹⁾으로 구분하면서 시작되었다. 거래세 보전이 시작된 2006년부터 세수 감소분에서 거래세 감소분이 차지하는 비중은 급격히 늘어나게 되는데, 2006년 재산세 감소분은 3,840억원이고 거래세 감소분은 4,827억원이어서 55.7%를 차지하던 비중이 2007년의 9,199억원은 92.2%에 해당하고, 2008년의 7,465억원은 97%에 달한다. 즉, 최초 종부세 도입 연도인 2005년에는 재산세 세수 감소분만 있었지만 그 이후 3년간은 세수 감소분의 대부분을 거래세 감소분을 보전하는 방향으로 바뀌게 된다. 세수 감소분을 보전하고도 남는 잔여액이 크게 늘어나게 되

는 2008년부터 균형재원으로 교부한 2조 1,156억원은 총부동산교부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3.3%로 높아지게 된다.

결국 2008년부터는 부동산교부세는 거래세 감소분을 보전해 주는 장치로 활용되는데, 중앙정부가 주도한 주택취득세의 법정명목세율 감면이 있을 때마다 중앙과 지방정부 간에는 세수손실의 규모와 방식을 두고 갈등이 발생해 왔다. 이는 부동산교부세 주요 재원인 종부세 세수가 2008년 말 이후 종합부동산세 부담 완화에 따라 세수가 최고치에 달했던 2.7조원에서 1조원대로 급감하면서 부동산거래세 세수 감소 보전용 재원인 부동산교부세와 세수 감소액 간 균형을 맞추기 힘들어지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III. 국제비교 시 유의점과 시사점

1. OECD 회원국들의 자산거래세 국세·지방세 세수비중

아래의 <표 5>와 <표 6>은 주택거래시장에서 부과되는 거래세들이 중앙정부의 국세로서 부과되는지 지방정부의 지방세로서 부과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OECD 세수통계를 재정리한 것들이다. 국가별로 주택이나 부동산자산만을 과세대상으로 거래세를 부과하는 나라들이 예외이므로 주택거래세 세수를 포함한 4,400단위 중분류에 해당하는 금융 및 자산거래세(Taxes on financial and capital transactions) 세입 통계 수치를 기준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인지세(stamp duty)라는 명칭의 조세가 중앙정부의 국세로서, 또는 주 단위의 지역

11) '거래세 감소분'은 2005년도분 취득세부과액과 등록세부과액을 합한 세액에 1996년부터 2005년까지의 10년간 전국 평균 취득세·등록세 세수 증감률지수를 곱한 세액에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 부과액을 합한 세액을 차감하여 산정하도록 정하였음.

〈표 5〉 중앙집권국가(Unitary Country)의 중앙·지방정부 간 재산과세 세수비중(2009)

(단위: %)

국 가	조세 구분	4000							총세수액
		4100	4200	4300	4400	4500	4600		
		재산 과세	부동산 보유세	(순) 부유세	상속세 증여세	(자산) 거래세	수시적 재산과세	기타 정기적 재산과세	
칠 레	중앙	34.1	1.6	-	100.0	100.0	-	-	91.8
	지방	65.9	98.4	-	0.0	0.0	-	-	8.2
체 코	중앙	54.8	0.1	-	100.0	100.0	-	-	97.9
	지방	45.2	99.9	-	0.0	0.0	-	-	2.1
덴 마 크	중앙	28.3	0.0	-	100.0	100.0	49.9	-	73.6
	지방	71.7	100.0	-	0.0	0.0	50.1	-	26.4
에스토니아	중앙	0.0	0.0	-	-	-	-	-	77.9
	지방	100.0	100.0	-	-	-	-	-	22.1
핀 란 드	중앙	48.8	0.0	-	100.0	100.0	-	-	66.0
	지방	51.2	100.0	-	0.0	0.0	-	-	34.0
프 랑 스	중앙	18.7	0.1	100.0	100.0	13.2	-	-	69.8
	지방	81.3	99.9	0.0	0.0	86.8	-	-	30.2
그 리 스	중앙	84.1	0.0	0.0	100.0	98.7	-	100.0	98.9
	지방	15.9	100.0	100.0	0.0	1.3	-	0.0	1.1
헝 가 리	중앙	33.5	0.0	-	56.4	56.4	-	-	89.9
	지방	66.5	100.0	-	43.6	43.6	-	-	10.1
아이슬란드	중앙	16.2	0.6	100.0	100.0	100.0	100.0	100.0	70.0
	지방	83.8	99.4	0.0	0.0	0.0	0.0	0.0	30.0
아 일 랜 드	중앙	46.2	0.0	-	100.0	100.0	-	-	96.0
	지방	53.8	100.0	-	0.0	0.0	-	-	4.0
이 스 라 엘	중앙	20.5	0.2	-	-	100.0	100.0	-	90.3
	지방	79.5	99.8	-	-	0.0	0.0	-	9.7
이 탈 리 아	중앙	73.3	0.0	100.0	94.6	94.5	100.0	76.1	78.0
	지방	26.7	100.0	0.0	5.4	5.5	0.0	23.9	22.0
일 본	중앙	18.7	0.0	-	100.0	72.5	-	-	53.4
	지방	81.3	100.0	-	0.0	27.5	-	-	46.6
한 국	중앙	33.4	16.4	-	100.0	32.8	-	-	78.5
	지방	66.6	83.6	-	0.0	67.2	-	-	21.5
룩셈부르크	중앙	95.6	0.0	100.0	100.0	91.7	-	-	93.5
	지방	4.4	100.0	0.0	0.0	8.3	-	-	6.5
네 덜 란 드	중앙	55.1	2.8	100.0	100.0	100.0	-	-	94.2
	지방	44.9	97.2	0.0	0.0	0.0	-	-	5.8

〈표 5〉의 계속

(단위: %)

국가	조세 구분	4000							총세수액
		4100	4200	4300	4400	4500	4600		
		재산과세	부동산보유세	(순)부유세	상속세증여세	(자산)거래세	수시적재산과세	기타 정기적재산과세	
뉴질랜드	중앙	2.1	0.0	-	100.0	100.0	-	-	92.7
	지방	97.9	100.0	-	0.0	0.0	-	-	7.3
노르웨이	중앙	51.6	18.5	44.3	100.0	100.0	-	-	81.8
	지방	48.4	81.5	55.7	0.0	0.0	-	-	18.2
폴란드	중앙	0.0	0.0	-	0.0	-	-	-	79.3
	지방	100.0	100.0	-	100.0	-	-	-	20.7
포르투갈	중앙	44.3	0.0	-	97.7	98.6	-	-	92.0
	지방	55.7	100.0	-	2.3	1.4	-	-	8.0
슬로바키아	중앙	0.3	0.1	-	100.0	100.0	-	-	94.8
	지방	99.7	99.9	-	0.0	0.0	-	-	5.2
슬로베니아	중앙	0.0	0.0	-	0.0	0.0	-	0.0	83.2
	지방	100.0	100.0	-	100.0	100.0	-	100.0	16.8
스웨덴	중앙	60.1	46.0	-	100.0	100.0	-	-	51.7
	지방	39.9	54.0	-	0.0	0.0	-	-	48.3
터키	중앙	70.0	0.0	-	90.3	89.5	-	-	88.4
	지방	30.0	100.0	-	9.7	10.5	-	-	11.6
영국	중앙	56.7	48.2	-	100.0	100.0	-	-	93.4
	지방	43.3	51.8	-	0.0	0.0	-	-	6.6
스페인	중앙	0.9	0.0	6.6	2.6	0.1	0.0	100.0	44.4
	지방	99.1	100.0	93.4	97.4	99.9	100.0	0.0	55.6

주: 사회보장기여금은 계산에서 제외
 자료: OECD, Revenue Statistics 1965-2010, 2011.

정부에서 부과되는 이유는, 소유권 등 권리의 등기·등록을 공적장부(공부)에 등재하도록 신고의무가 법률에 규정되어 있고 이를 담당하는 업무가 국가 또는 지역정부 소속 행정업무이면서 이러한 공부에 등록되어 공개된 정보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사인 간의 재산권 관련 법률행위에 대해 정부가 공적으로 인증한다는 의식에 기초하기 때문이다.

중앙집권형 국가군들은 대부분 자산거래 시 거래세가 중앙정부의 인지세, 등록면허세 등의 명칭으로 부

과되어 국세비중이 100%에 가깝게 나타난다. 그 예외에 해당하는 국가들로 프랑스, 헝가리, 일본, 한국, 스페인을 들 수 있는데, 이 중 스페인과 프랑스의 국가형태는 조금 더 세밀하게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첫째, 스페인의 경우는 OECD 자료에서는 지역국가(regional country)로 분류되지만, ‘연방형 국가’에 포함시키는 보고서도 있으며 언론에서도 그렇게 취급하고 있다.¹²⁾ 따라서 〈표 5〉와 〈표 6〉에서는 두 가지 경우 모두를 계산하여 각각 중복되게 기재하였다. 둘

〈표 6〉 연방제 국가(Federal Country)의 중앙·지방정부 간 재산과세 세수 비중(2009)

(단위: %)

국 가	조세 구분	4000							총세수액
		재산 과세	부동산 보유세	(순) 부유세	상속세 증여세	(자산) 거래세	수시적 재산과세	기타 정기적 재산과세	
호 주	연방	0.0	0.0	-	-	0.1	-	-	80.2
	주	63.6	37.9	-	-	99.9	-	-	16.4
	지방	36.3	62.1	-	-	0.0	-	-	3.5
오스트리아	연방	58.0	4.9	-	100.0	100.0	100.0	-	93.6
	주	2.7	6.1	-	0.0	0.0	0.0	-	1.9
	지방	39.3	89.1	-	0.0	0.0	0.0	-	4.5
벨 기 예	연방	8.0	0.7	100.0	0.0	11.4	100.0	-	84.3
	주	50.7	3.2	0.0	100.0	88.6	0.0	-	7.3
	지방	41.4	96.2	0.0	0.0	0.0	0.0	-	8.4
캐 나 다	연방	0.0	0.0	0.0	-	0.0	0.0	-	45.2
	주	14.4	8.2	100.0	-	75.7	11.1	-	43.2
	지방	85.6	91.8	0.0	-	24.3	88.9	-	11.5
독 일	연방	0.0	0.0	0.0	0.0	0.0	-	-	51.5
	주	46.3	0.0	100.0	100.0	100.0	-	-	35.6
	지방	53.7	100.0	0.0	0.0	0.0	-	-	12.9
멕 시 코	연방	0.0	0.0	-	-	0.0	-	-	95.5
	주	32.7	31.5	-	-	34.7	-	-	2.9
	지방	67.3	68.5	-	-	65.3	-	-	1.6
스 페 인	연방	0.9	0.0	6.6	2.6	0.1	0.0	100.0	44.4
	주	50.0	0.0	33.3	94.4	97.0	0.0	0.0	39.8
	지방	49.0	100.0	60.0	3.0	2.9	100.0	0.0	15.8
스 위 스	연방	23.9	0.0	0.0	0.0	97.6	-	-	47.2
	주	45.6	28.4	59.6	70.2	1.9	-	-	32.1
	지방	30.5	71.6	40.4	29.8	0.5	-	-	20.7
미 국	연방	4.5	0.0	-	81.9	-	-	-	47.8
	주	3.9	3.2	-	16.9	-	-	-	28.7
	지방	91.6	96.8	-	1.2	-	-	-	23.5

주: 사회보장기여금은 계산에서 제외
 자료: OECD, Revenue Statistics 1965-2010, 2011.

뉴욕주 부동산이전세는 소유권(deed)을 포함하여 부동산에 대한 어떤 권리를 500달러 이상의 대가를 치르고 이전하는 거래에 부과된다. 거래종료, 즉 인도 후 15일 이내에 납부해야 하며, 매 500달러당 2.00달러 즉 0.4%의 세율이 적용된다.

제, 프랑스의 중앙과 지방정부 구조는 스페인과 유사하게 3단계이면서 연방제 국가의 주에 해당하는 지역(region)에서登記업무와 거래세를 부과하지만 권력이 중앙정부에 집중되어 있어서 OECD는 중앙집권형 국가군으로 분류한 셈이다. 결국 스페인과 프랑스도 연방제 국가들이 주정부 수준에서 부과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셈이다. 그렇다면 자산거래세 세수의 국세·지방세 비중 측면에서 특이성을 보이는 국가들은 헝가리, 일본, 한국에 국한되는 셈이다.

2. 주요국 대도시에서의 주택거래세¹³⁾

가. 뉴욕주 부동산이전세와 뉴욕시 부동산 거래세 등

뉴욕주 부동산이전세는 소유권(deed)을 포함하여 부동산에 대한 어떤 권리를 500달러 이상의 대가를 치르고 이전하는 거래에 부과된다. 거래종료, 즉 인도 후 15일 이내에 납부해야 하며, 매 500달러당 2.00달러 즉 0.4%의 세율이 적용된다. 납세자는 원칙적으로

양도자라는 점이 특이하나, 미납부하거나 비과세대상자라면 양수자가 납부해야 하므로 양도자와 양수자가 연대납부의무가 있다. 또한 코옵(Co-Op)형태 아파트에 대한 지분 같은 경제적 이익의 이전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장기임대계약이나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갖고 있는 법인격에 대한 지배지분의 이전들에 대해서도 부과된다.

여기에 추가하여 100만달러 이상의 양도금액으로 거래되는 주택에 대해서는 소위 ‘맨션세(mansion tax)’라고 불리는 세율 1%의 세금이 추가된다. 그 대상은 1,2,3-가구 단독주택들의 이전거래에 대해서이다.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는 사람, 통상 매수자가 이 추가 세금을 내야 한다. 그러나 양수자가 비과세대상자라면 양도자가 내야 한다. 부동산이전세는 최초 창설단계 시에 부동산투자신탁(REIT)에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REIT로부터 매수하는 경우 중 감면대상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50% 감면된다. 감면세율은 기존 REIT에 이전하는 경우에도 적격하면 적용되는데, 2005년 9월 1일 일몰규정으로 폐지될 예정이다.

뉴욕시 행정법¹⁴⁾에 근거를 둔 뉴욕시 부동산이전세(Real Property Transfer Tax)는 뉴욕주가 REIT를 부과하듯이 시 정부도 부동산매도자에게 부과하는 시세인데, 대부분의 주택의 경우 세율은 50만달러 이하의 경우 1%이고 50만달러를 초과하는 고가주택의 경우 초과액이 아닌 거래액 전체에 대해 1.425%이다. 주택 이외의 상업용 부동산의 경우 해당 세율은 50만달러 이하 및 초과인 경우 각각 1.425%와 2.625%¹⁵⁾이다. 거래 후 30일 이내에 ACRI(SAutomated City Register Information System)를 통해 전자신고 납부

12) 최근 유럽재정위기의 한가운데 놓인 스페인에 대한 언론보도들에서는 “...스페인 안달루시아주는 지방 정부 중 네 번째로 중앙정부에 자금지원을 요청했다.”라는 표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스페인은 연방제국가는 아니지만 지역정부를 ‘주’로 표현하고 있음.

13) 부가가치세(VAT)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많은 OECD 회원국들은 기존 중고주택의 매매과 관련해서는 면세제도를 예외없이 채택하고 있으므로 VAT는 제외하여 논함.

14) NYC Administrative Code, Local Law: Title 11, Chapter 21, Administrative Code, Enabling Act: Tax Law Section 1201(b).

15) 시세로서 뉴욕시 일반재정에 귀속되는 세율인 1.625%와 교통청(Mass Transit Authority) 및 민간버스회사에 귀속되는 1%를 합한 세율임.

하도록 되어 있으며 통상 매매계약 클로징 단계에서 거래쌍방이 정산비용(closing costs) 중 하나로서 정산되면서 매도인측 변호사가 대리납부하게 된다.

결국 100만달러가 넘는 고가주택의 경우라도 뉴욕시 주택매매거래에서 거래세로 부담하게 되는 총실효세부담은 2.825% 이하이다.

나. 영국 런던시의 인지세

런던에서의 주택 매매거래 시에 관련되는 조세는 국세인 인지세(Stamp Duty Land Tax)가 유일하다. 이것은 영국(UK) 내 토지 및 부동산거래에 대해, 부동산유형 및 거래가액에 따라 차등과세되고 있다. <표 7>은 주택소유권(freehold) 매입 및 임대계약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거래가액 구간별 차등세율(1~7%)들을 정리하고 있다. 주상복합용도 주택이거나 상업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거래가액 구간별로 1~4% 범위의 별도 차등세율이 존재하나 주택에 비해 중과하고 있지는 않다. 특징적인 사항은 거래가액이 어떤 과표 구간에 속하면 거래가액 전체에 대해 해당 인지세율이 적용된다는 점이다. 즉, 영국 인지세의 세율 구조는 초과누진세율 체계가 아니다.

올해 2012년 3월 22일부터 200만파운드(한화 30억원 상당)를 초과하는 초고가 주택에 대해 최고세율 구간 7%를 추가하기 전까지는 5%가 최고세율이었다. 또한 작년부터 논란이 되어 온 외국계 매수자가 개인이 아닌 법인 특히 신탁의 형태를 취하여 매수하면서 조세회피를 하는 행태를 방지하기 위해 특수한 200만 달러 초과 주택 구입에 대해 15%라는 징벌적 인지세를 도입하였다.

결국 우리나라의 고가 주택에 해당하는 9~10억원

런던에서의 주택 매매거래 시에 관련되는 조세는 국세인 인지세가 유일하다. 이것은 영국 내 토지 및 부동산거래에 대해, 부동산유형 및 거래가액에 따라 차등과세되고 있다.

주택 거래의 경우 4% 미만의 실효 세부담을 지게 되고 초고가 주택(한화 30억원 초과)의 올해 경우 3월 21일 이후 거래분부터 7%까지 세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

<표 7> 영국의 인지세(SDLT)

(단위: £, %)

매매가	세율
125,000 이하	0
125,000 초과 250,000 이하	1
250,000 초과 500,000 이하	3
500,000 초과 1,000,000 이하	4
1,000,000 초과 2,000,000 이하	5
2,000,000 초과 (2012.3.22 이후)	7
2012. 3. 21일 이후 초고가주택 특정거래 매수자가 법인 또는 특정형태 신탁인 경우	15

자료: (<http://www.hmrc.gov.uk/sdlit/intro/rates-thresholds.htm>)

다. 일본 동경의 주택 관련 거래세

동경도 내에 소재한 주택에 대한 매매거래 시에는 ① 도도부현세인 부동산취득세¹⁶⁾ ② 국세인 등록면허세, 그리고 ③ 국세인 인지세가 취득자에게 과세된다. ①, ②번 조세는 신고납부주의 세목이지만 신고금액 자진계산(self-assessment) 방식이 아니라 과세표준금액이 '고정자산평가액'¹⁷⁾ (우리나라의 재산세 과

16) http://www.tax.metro.tokyo.jp/shisan/tucosan.html#hu_1

17) 법조문상에는 '총무대신이 정한 고정자산 평가기준에 의해 평가?결정된 가격'이라고 기술되어 있고, 원칙적으로 고정자산세(우리나라의 재산세) 과세장부에 등록되어 있는 가격인.

동경 시내에 소재한 주택의 거래세 부담을 총합계한 실효세부담은 실지매매거래가액을 기준으로 2.6%을 넘지 않는다.

세표준)이고, ③번 조세는 계약서에 기재된 금액이다. 일본의 부동산취득세를 이해할 때 가장 주목해야 할 사항은 그 과표가 부동산보유세인 ‘고정자산세’ 과세 평가액과 동일하다는 사실이므로, 고정자산세 과세대상 부동산에 대한 과세평가가 부동산취득세의 세수를 결정하는 중요한 축이 된다. 즉, 취득당시의 취득자가 부담한 실지거래가액이 아니고 매년 정기적인 보유과세 평가액을 부동산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부동산 취득세의 세수추계를 위해 등기소로부터 동경도에 통보되는 등기부등본자료 상에 첨부된 계약서상의 거래금액과는 무관하게 부동산취득세 과세표준이 결정된다. 부동산취득세는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토지, 가옥 등 부동산소재지를 관할하는 도세사무소(도세출장소)·지청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고, 등록면허세는 등기신청 시 납부해야 하며, 인지세는 인지세법에 정해진 양도계약관련 문서작성 시 인지 구입을 통해 납부하게 된다.

토지와 가옥을 유상·무상으로 구입하거나 가옥을 건축하는 등으로 인해서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에는, 등기 유무에 관계없이 과세되므로, 매매, 증여, 교환, 건축(신축, 증축, 개축) 등에 의해 개인 및 법인이 취득한 부분이 과세대상이다. 서울은 2003년 4월 1일부터 2015년 3월 31일 사이에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3%이다. 단 2003년 3월 31일 이전에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는 4%(주택은 3%)이었다.¹⁸⁾

일본은 토지와 건물을 철저히 분리하여 등기 및 과

세대장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부동산취득세 및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또한 주택의 경우라도 주거용 건물인 가옥(B)과 부속토지(L)로 구분하여 각각의 공제액(DB 및 DL)을 차감한 후 공통의 기본세율(3%)을 곱한 후 구한 각 세액들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한마디로 주택에 대해서도 철저한 가옥(건물)과 부속토지에 대한 분리평가 및 분리과세를 우리나라와 달리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부속토지인 주택용 택지에 대한 취득 시 경감해 주는 공제액(DL)은 토지 구입 또는 임대후 신축한 경우에, 주택가옥(건물)에 대한 공제액(DB)은 거주요건, 일정범위 내 바닥면적, 건축연도 요건에 따라 차등 일정액을 감면해 주고 있다. 고정자산세 과세평가액을 토지의 경우 70%, 건물의 경우 30%로 가정하고 공제가 전무하다고 가정할 경우 법정명목세율이 3%이더라도 부동산취득세의 실효세율은 1.5% 정도로 추정된다.

국세로 부과되는 일본의 등록면허세의 세율은 <표 8>에서 볼 수 있듯이 법정명목세율은 2%이지만 과표현실화율을 감안하면 1% 내외일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국세인 인지세의 명목세율은 <표 9>에 정리되어 있는데, 전술한 부동산취득세나 등록면허세와 달리 과세표준이 ‘계약서에 기재된 계약금액’이므로 성실 신고를 가정할 때 실효세 부담은 매매가액의 범위별로 다르지만 1천만엔 이하 저가주택의 경우 0.1~0.4%, 이를 초과하는 주택들은 0.1% 이하이며 1997년 4월 1일 이후 계약분에 대해서는 1천만엔 초과주택들에 대해 10~20% 세액을 경감해 주고 있다.

결국 동경 시내에 소재한 주택의 거래세 부담을 총합계한 실효세부담은 실지매매거래가액을 기준으로 2.6%을 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18) 지목이 택지가 아닌 비택지 부속토지에 지어진 주택토지분 취득세에 대해서는 2006년 4월 1일부터 3.5%, 2008년 4월 1일부터 4%가 적용됨.

〈표 8〉 일본 주택매매의 등록면허세 세부담

	내 용	과세표준	세율	경감세율
토지등기	매매 또는 경매	부동산 가액 ¹⁾	2%	2012. 4. 1~2013. 3. 31 : 1000분의 15
건물등기	매매 또는 경매	부동산 가액	2%	개인이 주택용 가옥을 신축하거나 취득하여 거주용으로 이용되는 경우에는 주택용 가옥의 경감세율 ²⁾ 적용

주: 1) 부동산가액이란 등록면허세법 제10조에 따라 등기할 때의 가액이며, 지방세법 제341조 제9호로 기재된 고정자산 과세장부에 등록된 가격으로 매매대금이 아님.
2) 천분의 1~천분의 3

〈표 9〉 일본 주택매매의 인지세

	인지세액	금 액	감면평균세율
부동산매매 계약서, 부동산교환 계약서, 부동산매개 중서 등	1만엔 미만	비과세	
	10만엔 이하	200엔	
	10만엔~50만엔 이하	400엔	
	50만엔~100만엔 이하	1천엔	
	100만엔~500만엔이하	2천엔	
	500만엔~1천만엔 이하	1만엔	
	1천만엔~5천만엔 이하	2만 → 1.5만엔 (▽0.5만엔)	0.15~0.03
	5천만엔~1억엔 이하	6만 → 4.5만엔 (▽1.5만엔)	0.09~0.045
	1억엔~5억엔 이하	10만 → 8만엔 (▽2만엔)	
	5억엔~10억엔 이하	20만 → 18만엔 (▽2만엔)	
	10억엔~50억엔이하	40만 → 36만엔 (▽4만엔)	
	50억엔 이상	60만 → 54만엔 (▽6만엔)	0.00108~
계약금액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200엔		

주: 부동산 양도에 관한 계약서 중 기재된 계약금액이 천만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997년 4월 1일부터 2013년 3월 31일까지 작성한 것의 세액에 대해서는 경감조치가 있음

상해시의 경우 호화고가주택인 경우라 하더라도 주택거래 시 취득자의 거래세 부담은 3% 이하이다.

라. 중국 상해시의 계세(契稅) 등

보통주택에 대해서는 i) 최초구입이면서 90㎡ 면적 이하의 소형주택에 대해 1% 세율로, ii) 그 외의 경우는 1.5% 세율로 과세되며, 상품주택(비보통주택)에 대해서는 3%의 세율로 지방세인 계세(契稅)가 부과된다. 과세표준은 상해시주택거래센터(상해시 등기소)에 매매계약서를 첨부하여 신고되는 실지거래가격이다. 납세의무자는 매수자이다. 다른 나라들처럼 인지세 성격의 ‘계약인화세’, ‘권리증인화세’가 존재하나 문서작성 건당 80위안, 5위안 수준으로 미미한 금액이 부과된다. 따라서 상해시의 경우 호화고가주택인 경우라 하더라도 주택거래 시 취득자의 거래세 부담은 3% 이하이다.

〈표 10〉 세계 주요 대도시 내 주택거래세 비교(과세의 경우)

도시	세목명	과세주체	납세자	과세표준	법정명목세율	기타
뉴욕주	부동산이전세 (NYS-RETT)	주세	매도자	실지거래가액	0.4%	
맨션세		주세	매수자	실지거래가액	1%	매매가 100만달러를 초과하는 고가주택에 대한 추가과세
뉴욕시	부동산거래세 (NYC-RPTT)	주세	매도자	실지거래가액	1% (50만달러 이하) 1.425% (50만달러 초과)	
런던	인지세 (SDLT)	국세	매수자	실지거래가액	12.5~25만파운드 1% 25~50만파운드 3% 50~100만파운드 4% 100~200만파운드 5% 200만파운드 초과 (2012.3.22 이후) 7%	
동경	부동산취득세 등록면허세 인지세	도도부현세 국세 국세	" " "	고정자산세 평가액 고정자산세 평가액 실지거래가액	3% 2% 거래금액별 정액세	
상해	계세	시세	"	실지거래가액	1% (소형 및 최초구입) 1.5% (소형) 3% (상품주택)	
서울	취득세 인지세	도세 국세	" "	실지거래가액 실지거래가액 ¹⁾	2.7% (경감세율) 4.6% (9억원 초과 등) 15만원 (1~10억원) 35만원 (10억원 초과)	1억원 미만 주택은 비과세

3. 소결론: 외국의 시사점과 취득세감면 예상효과

가. 외국의 주택세제 비교 연구의 시사점과 유의점

앞에서 우리는 OECD 회원국들의 주택, 부동산, 그리고 금융자산의 거래세들의 세수가 주로 중앙정부의 국세 특히 인지세 형태로 부과되고 있음을 관찰하였다. 예외적으로 지방세 세목으로 그것도 주정부 수준의 지역정부 수준에서 부과되는 국가들이 몇몇 있기는 하나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국세 비중이 낮은 나라에 속함을 파악하였다. 우리나라가 주택에 대한 거래과세인 취득세가 과세표준 및 세율 측면에서 전국적으로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로 존치하게 된 역사적 배경은 일본강점기시대의 전통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 또한 1977년 국세인 부가가치세가 창설되면서 관련 지방세목인 유흥음식소세를 VAT 내에 흡수하면서 세수 보전을 해 주기 위해 국세였던 등록세를 지방세로 보내는 세목 교환의 결과 일본의 국세인 등록면허세와는 달리 광역자치단체 지방세로 취득세와 등록세가 모두 속하게 되었다. 그 결과 일본의 자산거래 세수 국세·지방세 비율은 72.5:27.5인 반면 한국은 32.8:67.2로 판이하게 달라지는 결과를 나타냈다.

주택거래시장에서 매수자 및 매도자가 부담하게 되는 각종 조세를 국제 비교하여 어떤 시사점을 얻고자 할 경우에 거래세(turnover tax)의 법정명목세율을 단순 비교하여 거래 활성화를 위해 높여야 또는 낮춰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검토해 보자. “외국 대비 거래세율이 높아 거래를 위축시킨다”, “우리나라 평

균 주택거래세 부담이 높지 않으니 더 낮출 필요 없다”, “OECD 국제비교상 한국의 거래과세 명목세율 중간 정도이다” 등도 마찬가지이다. 주택시장의 지역성(locality)을 간과한 것이다. 주택시장은 주택의 위치적 속성상 한 국가 내에서도 지역적으로 분화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므로 국가간 주택시장은 서로 분리되어(segregated)있고, 또 주택은 비교역재(non-tradable)이므로, 국가간 또는 국제적 대도시간 주택거래세의 고저가 주택거래시장 내 시장 참여자에게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판단된다. 설혹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부동산 투자자(global property investor)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매수자의 입장에서 부담하게 되는 최초 투자비용을 구성하는 여러 요인 중 하나일 뿐이므로 거래세 세부담이 반영된 세후투자수익률에 영향을 미칠 경우에 한해 특정국 부동산 거래를 기피할 수는 있으나, 주택거래시장 참여자들은 주로 내국 거주인들이 대부분이고 우리나라처럼 주택취득세가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과세되는 상황에서는 주어진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다만 외국 주요 도시의 주택취득세 제도를 살펴본 결과 아래와 같은 특징들은 우리나라 세제개편 시 주목할 필요가 있다. 뉴욕시의 부동산이전세 사례는 법적 납세의무자를 매도자로 규정한 주택거래세가 종가세(ad valorem) 방식으로 부과될 때 최종 세부담의 귀착이 달라지는 효과를 분석하여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일본의 부동산취득세와 (보유과세인) 고정자산세 간 관계처럼 부동산취득세과표와 고정자산세과표가 정확히 일치하는 거래세 구조는, 매수자가 주택구입 후 수년 동안 부담하게 될 보유세(지방재산세) 흐름 중 일부를 앞당겨 취득시점에서 일시적 부담(upfront fee)으로 선납하는 성격으로 이해할 경우 매수 여부보다는 매수 후 보유기간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부동산취득세는 거래 시장에서 마찰(sands-on-the-wheel)적 부작용을 줄

주택시장은 주택의 위치적 속성상 한 국가 내에서도 지역적으로 분화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므로 국가간 주택시장은 서로 분리되어있고, 또 주택은 비교역재이므로, 국가간 또는 국제적 대도시간 주택거래세의 고저가 주택거래시장 내 시장참여자에게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판단된다.

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주택의 유상거래 시 거래세가 존재하지 않는 캘리포니아 주는 주택의 보유단계 지방 재산세 과표의 현실화를 신규 취득자에게만 허용하는 방식으로 거래세와 보유세를 연계시킴으로써 주택거래세가 없으면서도 사실상 존재하는 효과를 발휘하여 거래 여부 및 보유기간 행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나. 주택취득세 감면의 예상 효과

결국 주택거래 시 관련된 거래세 세부담이나 관련 수수료 등 비용의 국가나 대도시간 높고 낮음을 가지고 거래 위축에 대한 우려나 개편을 주장하는 논거로 삼기보다는, 동일한 지역적 주택시장 내에서의 거래세 부담의 시간적 변화나 인별 차등과세가 미치는 부작용에 기초한 개편 논의가 보다 적절할 것이다.

예를 들어, 주택자본에 대한 세후투자수익률은 아래의 식 (1)상의 ρ 로 표현된다. 먼저, 주택자본의 세전사용자비용은 자가거주 실수요자이건 투자목적 수요자인 다주택소유자이건, r 이라는 임대수익(률)(또는 주택자본 기회비용)과 $p^e - p/p$ 라는 기대자본수익(률)의 두 구성 요소가 핵심 결정 요인이다. 여기에 주택자본 투자 및 보유와 관련된 각종 조세를 관련 세율 들인, 소득세율(t_y)과 자본이득세율(t_{cg}), 주택보유세

최근 전세보증금의 급등으로 무주택자에서 최초 주택소유자가 되려는 세입자의 경우, 즉 거의 최저점에 달한 가격조정이 이루어진 주택이라고 판단이 서면 양도세 혜택은 무시하더라도 주택취득세의 50% 감면만으로도 매수 수요를 자극할 수 있을 것이다.

율(τ), 그리고 주택취득세 연간할부상환율(γ)¹⁹이 감안되어 세후사용자비용이 결정된다. 여기서, 감가상각 및 관리비인 d 는 조세가 아니지만 주택소유기간 중 정기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으로 추가된다. 본 연구의 관심 사안인 거래세로서의 중가세 주택취득세 세액은 $t_a \cdot P$ 인데, 이는 주택소유 예상기간(n) 동안의 일정 할부금액 $\gamma \cdot P$ 흐름의 현재가치(present value)와 일치하도록 결정된 γ 를 합하면 최종 세후투자수익률이 된다(식 (2) 참조).

$$\rho = r(1 - t_y) + \left(\frac{p^c}{p} - 1\right)(1 - t_{cg}) - d - \tau - \gamma \quad \text{식 (1)}$$

$$t_a \cdot P = \sum_{i=0}^{n-1} \gamma \cdot P / (1+r)^i \quad \text{식 (2)}$$

위 식들을 통해 주택취득세의 50% 감면 및 5년 양도차익 비과세정책이 주택매수수요를 증대시켜 거래를 활성화할 수 있는지를 판단해 보자. 자가점유를 목적으로 주택매수를 고려하고 있는 실수요자의 경우 첫 번째 항인 임대수익은 발생하지 않으므로 향후 주택가격 상승이 예상될 수 있을 만큼 가격이 하락한 시점을 선택하여 소유기간 중 구입 후 5년 내 양도차익이 집중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주택취득세 50%

감면 혜택 기간을 활용하여 매수하여 세후투자수익률을 극대화하려 할 수 있다. 만일 관심지역 내 매수 고려 중인 대상 주택에 대한 추가적인 가격 하락이나 가격회보 현상이 상당 기간 예상된다면 양도차익 5년 비과세는 별 의미가 없게 된다. 양도세 혜택은 양도차익이 기대되는 경우에 유인책으로 작용할 수 있을 뿐 양도손실이 예상되거나 양도차익이 0인 대상주택에 대해서는 매수 수요를 야기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만 실거주 수요자로서 최근 전세보증금의 급등으로 무주택자에서 최초 주택소유자가 되려는 세입자의 경우, 추가적인 가격 하락은 없을 것으로, 즉 거의 최저점에 달한 가격 조정이 이루어진 주택이라고 판단이 서면 양도세 혜택은 무시하더라도 주택취득세의 50% 감면만으로도 매수 수요를 자극할 수 있을 것이다.

추가적인 주택 매수로 다주택소유자가 되어 임대주택 사업을 영위하려는 수요자의 경우, 관심 대상 주택으로부터 5년 내 양도차익이 집중적으로 발생한다고 예상되더라도 위의 투자수익률식상의 첫 항인 임대수익에 대한 소득과세의 불확실성 때문에 주저하게 될 요인이 존재한다. 즉, 3주택소유자가 되면 예외 없이 전세로 임대한 경우라도 전세보증금 합계액에 대한 간주임대소득과세가 이루어지고, 고가주택을 구입한 경우라면 1주택소유자라도 월세임대에 대해서는 과세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이다. 즉, 투자목적 주택수요자들에게는 투자수익을 구성하는 두 가지 큰 구성요소인 임대소득과 자본이득의 불확실성하에서 주택취득세만의 50% 세일효과가 거래량을 크게 증가시킬 것을 기대하기는 무리라는 판단이다.

19) 주택취득세처럼 취득시점에 매수자가 부담하는 중개수수료, 대출비용 및 기타 거래비용들도 초기 일회에 부담하는 경우 이를 초기거래비용(upfront transaction cost)으로 합산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추가대출받으면서 예상소유기간 동안 일정 금액씩 상환하는 방식으로 연간상환율에 포함시킬 수 있음.

IV. 결론 및 정책 시사점

우리나라의 최근 주택시장 거래침체 현상은 기준점(baseline)을 어떻게 설정하느냐, 그리고 지역별·주택유형별·거래원인별로 구분하여 그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달라진다. 특히 우리나라는 수도권 및 대도시지역에서 선분양이라는 제도적 특성과 보편화된 주택재건축·재개발 활동이 거래량(및 거래가격)의 시간적 단위를 정의하기 매우 어렵게 만들고 있다. 예를 들어, 2012년의 기존 주택매매시장만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2010년도에 선분양계약되어 2012년도에 완공된 신축주택을 포함하는 거래량 통계자료에서 이를 제외하고 법원 경매분 등을 포함시켜야 하며 분양권 거래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 등의 애로점 때문에 거래량 통계는 거래시장의 현황을 과소 또는 과대평가할 수 있다.

주택거래시장의 가격과 거래량은 수요와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매우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지만, 식 (1)에서도 표현하였듯이 기본적으로 세전투자수익률의 두 구성 요소인 '시세차익(capital gain)'과 '임대소득(rental income)'의 크기에 달려 있다. 다음으로 이들 두 구성 요소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조세부담 및 주택취득세와 같은 일시적 거래비용이 세후투자수익률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법정명목세율뿐 아니라 과세표준의 시가 대비 과표율(assessment ratio) 또한 비과세·감면 변화를 통해 영향을 미치므로, 취득세의 법정세율 인하를 통한 거래활성화정책은 타 조건들이 모두 동일하다는 가설적인 현실 가정하에 매우 제약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다만 주택취득세 50% 감면을 거래 활성화 차원에서 작년 수준처럼 다시 시행하기로 한 9월 10일 발표는 동 발표를 기다리고 있던 일부 계층에는 주택매입 유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즉, 현 주택매매시장 상황에서 전세세입자 가구로서 실수요 목적의 주택 구입을

우리나라는 수도권 및 대도시지역에서 선분양이라는 제도적 특성과 보편화된 주택재건축·재개발 활동이 거래량(및 거래가격)의 시간적 단위를 정의하기 매우 어렵게 만들고 있다.

계획하던 가구들은 한시적으로 주어지는 주택취득세 할인가간을 활용하여 자가수요자(owner-occupier)로 전환하려는 거래는 발생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주택취득세 감면이 자주 반복되면 시장참여자는 항상 이를 기대하여 비할인가간의 거래를 위축시키게 되고, 한시적 감면기간이 짧으면 감면기간 이후 정상적 거래를 앞당겨 거래하는 왜곡을 발생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주택취득세에 대해 한시적으로 그리고 매우 제한적인 형태로 시행되는 주택취득세 50% 감면정책은, 2012년 말까지 무주택자나 1세대 1주택자가 9억원 이하 비고가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국한되며 현재 1세대 1주택자라면 2년 내 구주택을 처분해야 감면세액이 추정당하지 않게 된다. 즉, 거래가액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매수 수요에는 4.6%의 명목세율과 실지거래가액 전액을 과표로 세액이 산정되는 반면, 그 이하 가액의 주택 구입에 대해서는 매수자가 무주택자 또는 1세대 1주택자로서 대체주택을 수요하는 경우에 한해 2.7%의 경감세율이 실지거래가액 또는 그보다 낮은 수준의 주택공시가격을 과표로 세액이 결정되어 세부담이 100% 이상 차등화될 수 있는 차등과세(tax wedge)가 발생한다. 차등과세에 따른 초과부담(excess burden)의 크기는 결국 수요 및 공급탄력성에 달려는데(·거래량 감소 정도 및 세후가격 증가 정도) 현실 지방재정 여건상 증가물품세적 주택취득세를 완전 폐지할 수 없는 현실 여건이라면 현재의 거래

**차등세율을 단일 주택취득세율로
개편하는 것에 대해 저항이 심하다면,
기준금액 9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고세율을 적용하는 초과누진세율제도로의
전환이 담세능력 차원에서 보다
형평한 것으로 보인다.**

세 법정세율이나 세부담 과다 여부보다는 차등과세가 거래시장에서 야기하는 비효율성 문제점을 더욱 우려하여 단일세율로 개편되어야 할 것이다. 후자는 9억 원이라는 고가주택 기준이나 다주택자 기준이 매수자의 경제적 위치(economic position)를 반영하므로 물품세적 주택취득세의 초과부담을 줄여주는 방향으로 기능할 가능성을 주장할지 모르나, 주택가액이나 주택소유 채수는 매우 불완전한 소득이나 순부의 대용물(proxy)이라는 판단이다. 또한 초과누진세율처럼 9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만 고세율(4.6% 대 2.7%)이 적용되는 구조가 아니라 전체 거래금액에 고세율이 적용되어 배 가까이 세부담이 차등화되는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판단이다. 즉, 거래 시점에서 담세능력 차원에서 접근한다면 기준 금액인 9억 원을 전후로 해서 담세능력이 배로 증가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차등세율을 단일 주택취득세율로 개편하는 것에 대해 저항이 심하다면, 기준금액 9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고세율을 적용하는 초과누진세율제도로의 전환이 담세능력 차원에서 보다 형평한 것으로 보인다.

중앙정부가 거래활성화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지방 정부의 세수 비중이 높은 취득세 감면 정책을 항시 활용하면서 부동산교부세를 통해 세수손실분을 보전해 주는 상황이 상시화된다면, 지방정부의 중앙정부 의존도는 더욱 확대·심화되고 지방재정의 자율성은 훼손

될 우려가 높다. 지방세답게 지역이나 지방별로 과표나 세율이 차등화되지 않고 전국 통일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감안한다면, 오히려 취득세 및 등록세를 국세로 전환하면서 중앙과 지방 간 세목 교환이나 세원 조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조세개혁방향이 될 것이다. 이는 1977년 부가가치세의 창설 당시 국세였던 등록세와 지방세인 유흥음식소세 간 세목 교환 후 후자를 부가가치세에 흡수하면서 등록세와 취득세가 모두 지방세화되어 버린 35년 전 잘못을 교정하는 셈이다. OECD 회원국들의 자산거래과세(turnover tax)제도 및 세수의 국세·지방세 비중을 보아도 차등물품세율 적용을 통한 (지역적) 차등과세(tax wedge)가 미치는 경제적 비효율성을 우려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kipi](#)

〈참고문헌〉

국토해양부, 『온나라부동산정보통합포털』, 주택거래량통계
 김진·배준식, 「취득세인하에 따른 지방세제 개편방안」, 『서울연구원 SDI정책리포트』, 제121호, 2012. 8. 6.
 김정훈, 『취득·등록세의 후생효과』, 한국조세연구원, 연구보고서 2005.
 김현아, 『주택거래세 감면제도 개편방안 연구』, 한국조세연구원, 행정안전부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2010. 7.
 노영훈, 『실지거래가액신고에 따른 적절세율추정 및 제도적 실행방안』, 한국조세연구원, 정책보고서, 2003. 12.
 _____, 『지방세 세수추계에 관한 연구』, 인천광역시·충청남도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2005. 12
 _____, 『부동산 보유 및 거래세제 변화에 따른 지방

정부의 재정적 과제』, 2007 한국지방재정세
 미나 발표논문, 한국지방재정공제회·한국지
 방재정학회, 2007. 6.
 _____, 『2009년 종합부동산세 개편에 따른 지방세
 수변화와 정책과제』,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지
 방세지 2009. 5.
 노영훈·이장규, 『양도소득세와 취득·등록세의 과세
 기준 일원화방안 연구』, 재정부용역보고서,
 한국조세연구원, 1999.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연감 2006-2011』
 홍성민, 『주택시장 변동 예측 및 조세정책 효과 분석
 연구』, 우리은행 부동산연구팀 연구보고서,
 2012. 8.

Sheffrin, S. and Sexton, T., Proposition 13 in
Recession and Recovery, Public Policy
 Institute of California, 1978.
 OECD, OECD Revenue Statistics, 2003-2011
 OPTA, *Handbook of New York State and Local
 Taxes*, 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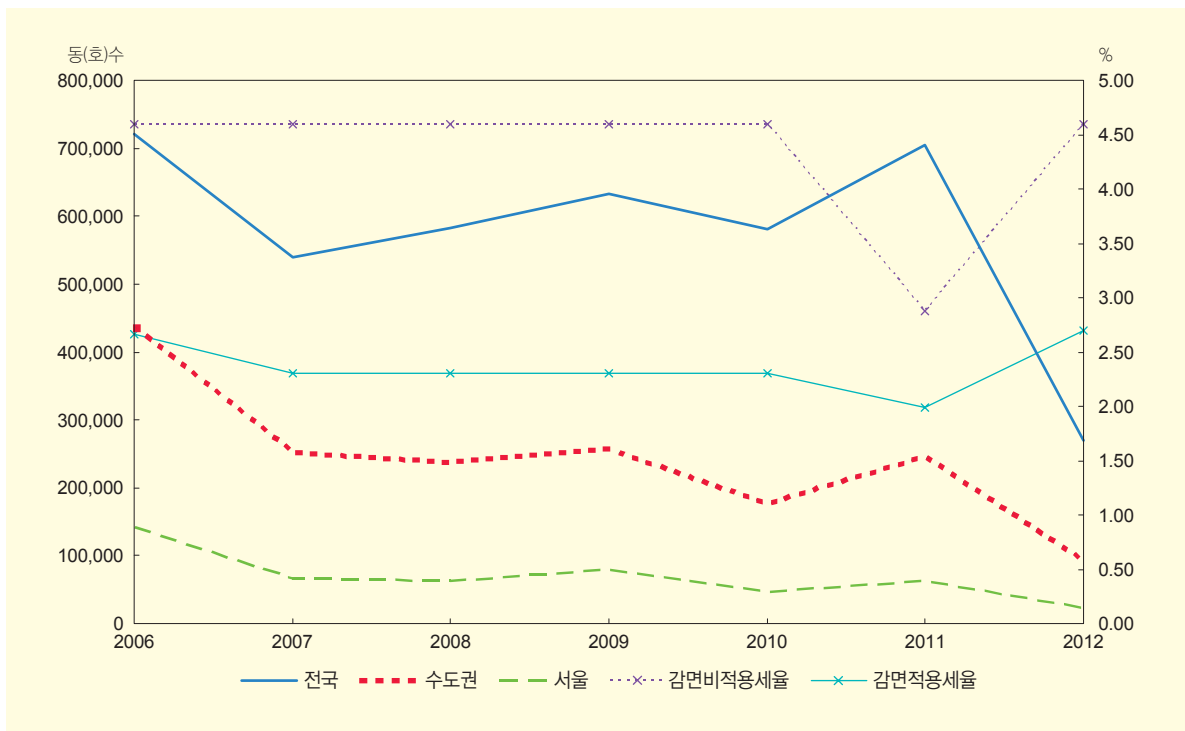
東京都 主税局, 『東京都 税務統計年譜』, 平成 15年度

〈부록〉

〈부표 1〉 부동산(아파트) 거래량 조사통계구분 및 변화내용

구 분	온나라 부동산 통합포털 '부동산' 거래통계		실거래 아파트 공개건수
	토지거래 기준	건축물거래 기준	
통계성격	공식 통계자료(통계청 승인통계)		보도 참고자료
포함대상	과거의 <u>검인 자료</u> 에 추가하여 부동산거래신고+주택거래신고자료		부동산거래신고+주택거래신고자료 ('06년 이후부터)
작성기준	토지거래(건축물 부속토지 거래) 중 지목이 대지 및 공장용지이고 건축물 주용도가 아파트인 거래를 집계(필지수)	건축물거래(건물만 거래된 경우 포함) 중 건축물 주용도가 아파트인 거래를 집계(호수)	아파트 매매거래 중 실거래가 검증 결과 적정인 건수를 집계 (실거래가 공개건수) ※ 매월 정기공개 외 추후 검증완료된 건을 추가 공개하고 있으나 시계열 유지를 위해 공개 건수에는 미반영
	매매, 판결, 교환, 증여, 분양권, 기타 6개 거래유형과 신탁·해지는 별도로 제공되어 포함		
비포함	경매(법원), 공매(자산관리공사, 공공기관 압류재산 공매처분), 상속, 수용 등 비포함		
통계작성 누락거래	지목이 대지 및 공장용지 이외인 아파트 거래, 부속토지 거래 없이 아파트만 거래된 경우	현재, 가장 정확한 아파트 거래 통계	공개에 부적합한 매매 거래 (검증결과 부적정 및 검증 미완료 건, 지분거래, 분양권 전매 등)
작성주기	매월 1회(거래 신고일 기준 작성)		
시계열 범위	'98년부터 작성 ('06년부터 작성 필요성이 적으나 시계열 유지를 위해 계속 작성 중)	실거래가 신고제도가 시행된 '06년부터 작성	실거래가 신고제도가 시행된 '06년부터 작성

[부그림 1] 아파트 매매 건수와 주택 취득 시 적용 세율 추이(연도별)



주: 1. 취득 시 적용되는 세율은 농특세, 교육세를 포함한 세율이며 연도별 평균치임
 2. 아파트 매매 건수 기준

농업인의 노후 준비와 재정 지원

I. 서론



임소영

한국조세연구원
부연구위원
(syylim@kipf.re.kr)

농촌지역 거주자들의 사회경제적 특징은 높은 수준의 고령화와 저소득이라고 할 수 있다. 이미 농·어촌 지역의 고령화는 심각한 수준으로서 2010년 현재 농가 인구 중 31.8%가 65세 이상이며 앞으로도 고령화 현상은 빠르게 진행되어 2022년에는 65세 이상 농가 인구 비중이 46.3%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2). 이는 국가 전체 노인인구 비중과 비교할 때 매우 높은 수준으로서 2010년의 우리나라 65세 인구 비중은 11.0%이다(통계청, 2010).

이처럼 빠른 속도의 고령화 진행에 대응하여 농업인의 노후 안전망을 확보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이지만 농업인들은 주요한 노후보장 수단인 국민연금 가입에 대해서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최경환·황의식(2007)이 실시한 실태조사에서는 청·장년층 농·어업인구의 국민연금 가입률이 53.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국가 전체 국민연금 가입자 비중(75.6%)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다(전병목·이은경, 2010). 또한 박대식 등(2011)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는 조사 지역 내의 60세 이하 농업인 중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는 비중이 59.8%에 불과해 저조한 가입 현상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은 가입이 강제된 사회보험이지만 지역가입자가 연금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우선 소득을 신고해야 한다. 보험료의 절반을 고용주가 부담하는 사업장 근로자와 달리 보험료를 전부 자비로 부담하는 지역가입자의 경우 국민연금 가입에 따른 경제적인 부담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거나 소득을 과소신고하여 보험료를 줄이려는 유인이 크다. 이와 같은 현상은 지역가입자가 많은 농·어업인들 사이에서도 나타나는데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서 정부는 농·어업 종사자에게 연금보험료의 최고 50%까지 지원해주고 있으나 미가입 또는 과소 소득 신고를 완전히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농업인의 국민연금 가입률이 저조한 이유를 살펴보고 국민연금 가입률 제고를 위한 재정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자 한다.

농가의 소득은 40대 초반에 최고치에 달했다가 이후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고 있는데 이를 비농가와 비교해 보면 다소 이른 시점에서 소득 감소가 시작됨을 알 수 있다.

II. 농업인의 소득 및 자산

1. 생애주기별 소득 및 지출 분석

농업인의 노후 준비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연령별 소득 및 지출 변화 추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경제활동이 활발한 청·장년기와 노년기의 경제상태를 비교해 보는 것은 생애주기에 따른 자원 배분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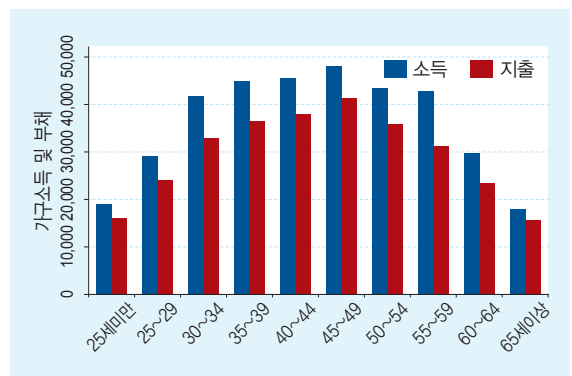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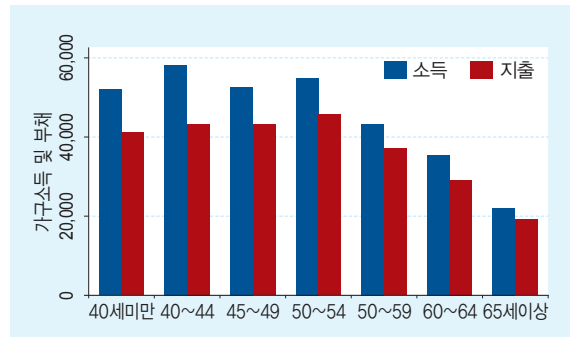
[그림 1]은 농가의 가구주 연령별 평균 연소득과 가계 지출을 보여주고 있다. 비교를 위해서 비농가의 가구주 연령별 평균 연소득과 가계 지출도 함께 표시되었다. 농가의 총소득과 총지출은 연령 변화에 대해 대체로 역U자 형태로 변동되고 있다. 농가의 소득은 40대 초반에 최고치에 달했다가 이후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고 있는데 이를 비농가와 비교해 보면 다소 이른 시점에서 소득 감소가 시작됨을 알 수 있다. 이는 상당한 수준의 노동력 투입을 요구하는 산업적인 특성상 농업에 종사하는 인구 중 젊은 연령층에서의 소득 수준이 높아졌다가 연령이 높아지면서 비농가보다 빠른 속도로 감소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연간 가계지출 또한 소득과 비슷한 양상으로 변하고 있는데 40대 초반의 가구에서 가장 많은 지출이 이루어졌다가 가구주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지출액이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다.

농가의 소득과 지출 수준을 비농가와 비교해 보면,

비농가의 경우 농가와 마찬가지로 연령에 대해 역U자 형태로 변동하고 있지만 정점에 이르렀을 때의 연소득은 농가에 비해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농가와 비농가의 전체 평균을 비교해 보면, 농가의 평균 연소득은 약 3,221만원이고 비농가의 평균 연소득은 약 3,812만원으로서 비농가의 연평균 소득인 농가에 비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농가의 경우 청·장년 시기에 비농가보다 높은 소득을 올릴 수 있으나 생애 전체 소득은 오히려 비농가에 비해 낮고 비농가는 정점에서의 소득 수준은 농가보다 다소 낮지만 생애 전체 소득은 높은 것으로 보인다.

[그림 1] 농가 및 비농가의 연소득과 가계지출

(단위: 천원)



주: 1. 2인 이상의 가구만 포함되었음.
 2. 자료에 제공된 가중치를 적용하였음.
 자료: 통계청, 『농가경제조사 2010』 원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2010』 원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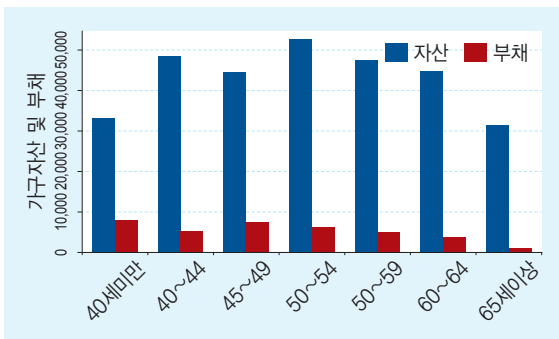
2. 생애주기별 자산 및 부채 분석

[그림 2]는 농업인의 연령별 자산 및 부채를 보여주고 있다. 농업인의 자산은 크게 유동자산과 고정자산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유동자산은 농산물 재고자산과 현금과 예금, 미수금 및 선급금 등을 포함한 당좌자산을 포함하고 고정자산은 토지, 건물, 기계·기구·비품, 대동물, 대식물, 무형 자산을 포함한다.

농가의 자산은 연령에 대해 역U자 형태로 변하고 있으며 50대가 되었을 때 최고치에 달하고 있다. 한편 부채는 30대일 때 가장 높았다가 연령이 높아질수록 낮아진다. 농가 자산과 부채의 변동은 생애주기에 따른 가족구성원의 변화나 지출 변동뿐만 아니라 가구주의 영농활동과도 연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30, 40대에는 차입을 통해 영농활동을 계속하면서 토지와 농기구 등 자산을 축적하여 50대에 이르면 자산이 정점에 이르렀다가 차츰 영농활동을 줄이면서 농업생산과 관계된 자산을 처분하기 때문에 자산이 감소하게 되며 동시에 부채도 함께 감소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림 2] 농가의 연령별 자산 및 부채

(단위: 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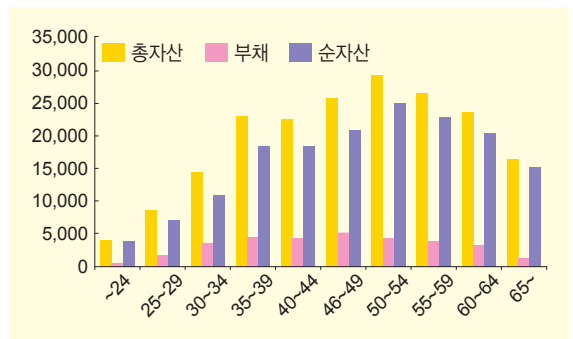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농가경제조사 2010』 원자료

농가의 자산은 연령에 대해 역U자 형태로 변하고 있으며 50대가 되었을 때 최고치에 달하고 있다. 한편 부채는 30대일 때 가장 높았다가 연령이 높아질수록 낮아진다.

이러한 농가 자산 및 부채 변동의 특징은 비농가와 비교를 통해서도 확인해 볼 수 있다.¹⁾ [그림 3]은 성명재(2011)가 2009년 재정패널 자료로 분석한 연령별 자산 및 부채 자료이다.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평균 자산보유 수준은 주택자산 및 금융자산이 정점에 이르는 50대 초반에 최고치에 달했다가 이후 급격히 감소한다. 또한 우리나라 가구의 평균 부채 규모는 자녀 교육비, 생활비 등이 가장 많이 필요한 40대 후반에 정점을 이루었다가 이후 꾸준히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역U자 형태로 변동하는 부채 규모는 농가와 달리 생애주기에 따른 재원의 수요가 반영되어 나타나는 현상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림 3] 우리나라 전체 가구 연령별 자산 및 부채

(단위: 만원)



자료: 성명재(2011)

1) 비농가의 자산은 주택이나 금융자산 등 소위 '부'에 해당하는 것이지만 농가의 자산은 영농을 하는 데 필요한 투입재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자산 규모에 대한 농가 대 비농가의 단순 비교는 다소 무리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농가의 전체 소득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현저하게 감소하여 65세 미만 가구의 연평균 소득은 4,486만원이나 65세 이상 가구의 평균 소득은 2,304만원으로 65세 이전 가구 소득의 절반가량에 그친다.

3. 고령 농업인의 소득 및 지출 분석

농업인의 노후 경제상황을 조금 더 자세히 파악하기 위하여 국민연금의 수령 시작 연령인 65세 미만과 65세 이상의 가구로 나누어 농가소득과 소득원천별 비중을 살펴보았다(표 1) 참조). 농가의 전체 소득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현저하게 감소하여 65세 미만 가구의 연평균 소득은 4,486만원이나 65세 이상 가구의 평균 소득은 2,304만원으로 65세 이전 가구 소득의 절반가량에 그친다. 특히 고령 농가 내에서도 연령별로 소득 감소가 현저하게 나타나는데 65~69세 농가의 평균 소득은 2,999만원이지만 80세 이상 가구의 평균 소득은 1,454만원으로 감소하였다. 농업인들은

뚜렷한 은퇴연령이 없이 70세 전후까지도 영농을 계속하기 때문에 65세 이후라 하더라도 사업소득을 지속적으로 획득하고 있다. 그러나 연령 증가에 따라 소득원의 구성비는 달라진다. 소득원천별 비중을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젊은 농가일수록 농외소득²⁾의 비중이 농업소득보다 높다. 70세 이전의 가구에서는 농외소득이 농업소득보다 높지만 70세 이상의 연령대에서는 농업소득의 비중이 농외소득을 추월하고 있다. 가구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농외소득의 비중이 줄어드는 반면 공적보조와 사적이전소득의 비중이 증가하여 농외소득의 감소분을 어느 정도 상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가구의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가구 지출규모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데 65세 미만의 농가에서는 연평균 4,269만원을 지출하고 있으나 80세 이상의 농가에서는 연평균 지출액이 1,667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출항목의 비중으로 살펴보면 고령 농업인의 지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식료품으로서 80세 이상 농가의 경우 전체 지출액의 24.8%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연령 증가와 함께 보건 관련 지출이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80세 이상의 농

〈표 1〉 연령별 농가소득 구성

(단위: 천원, %)

가구주 연령	농가소득	농업소득	농외소득	이전소득			비경상소득
				농업 보조금	기타 공적보조	사적 이전소득	
65세 미만	44,855	33.7	43.9 (0.6)	4.6	4.8	1.2	10.6
65세 이상	23,041	31.6	29.2 (1.6)	3.8	15.2	8.3	11.7
65~69	29,986	29.4	33.4 (0.9)	3.9	14.4	7.4	11.2
70~74	22,081	36.6	27.9 (1.9)	3.9	13.7	5.8	11.8
75~79	18,013	27.3	24.8 (2.2)	3.6	17.3	13.8	12.8
80세 이상	14,544	28.3	19.5 (2.2)	3.6	24.8	13.7	10.1

주: 괄호 안은 소득 대비 농지임대료의 비중임.
 자료: 『2010 농가경제조사』 원자료

2) 농외소득은 농업 이외의 사업을 경영하여 얻은 소득과 근로소득, 자본 수입을 모두 포함한다.

〈표 2〉 고령농가의 지출 구성

(단위: 천원)

지출항목	가구주 연령						
	65세미만	65세이상	65~69	70~74	75~79	80세이상	
소비지출	식료품	5,445	4,810	5,167	4,865	4,486	4,130
	의복비	956	320	519	320	256	151
	주거비	2,852	2,043	2,414	2,055	1,749	1,487
	보건	1,812	2,151	2,079	2,302	2,087	1,847
	교통통신	3,316	1,276	1,687	1,342	1,107	964
	여가	4,044	1,291	2,010	1,374	1,118	750
	기타 소비지출	9,544	3,808	5,358	3,864	3,025	2,633
	소 계	27,970	15,699	19,235	16,123	13,828	11,963
비소비지출	조세및부담금	885	274	467	404	174	216
	공적연금납부	676	99	178	94	91	72
	사회보험납부	662	205	274	244	182	131
	기타비소비지출	12,497	8,491	13,225	6,262	6,400	4,283
	소 계	14,721	9,069	14,144	7,004	6,847	4,702
합 계	42,691	24,767	33,379	23,127	20,674	16,6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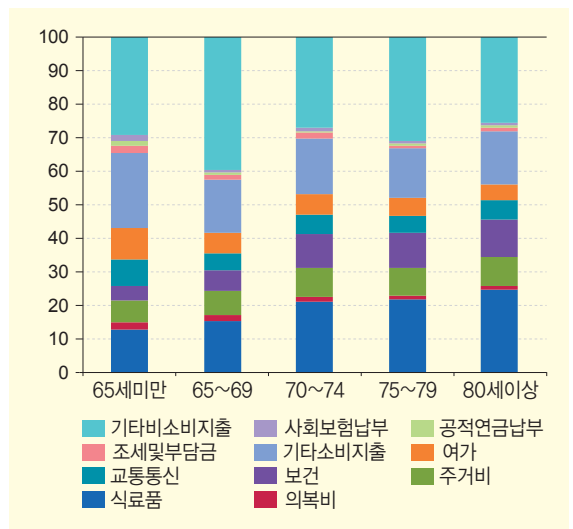
주: 샘플 가중치를 적용하였음.
 자료: 통계청, 『2010 농가경제조사』 원자료

가에서는 평균 11.1%의 지출액이 보건 분야에 쓰여지고 있다. 주거비 또한 고령 농가의 지출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65세 미만의 농가에서는 6.5%의 지출이 주거비에 쓰였으나 가구주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증가하여 80세 이상의 농가에서는 전체 지출의 8.9%가 주거비로 지출되고 있다.

〈표 3〉은 고령 농업인의 경제적인 여력을 나타내는 표로서 70세 이상의 고령농가중 적자가구 비중은 70세 미만의 농가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65~69세 농가의 경우 경제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어 비교적 높은 소득이 유지되나 조세 등 비소비 지출이 급격히 줄어 적자가구 비중이 38.7%로 하락하였다. 그러나 70대 가구의 경우에는 경제활동이 위축되면서 소득은 감소하는 반면 가계비의 감소폭은 크지 않아 적자가구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한편 〈표 3〉

〈그림 4〉 가구주 연령별 지출 비중

(단위: %)



자료: 통계청, 『농가경제조사 2010』 원자료

연령이 높아질수록 소득이 감소하고 빈곤 위험도는 높아지지만 고령 농가가 안정적인 소득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은 많지 않다.

의 두 번째 행은 2010년 기준 최저생계비보다 낮은 소득을 가진 가구의 비중을 보여주고 있는데 65세 미만의 농가 중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을 가진 가구는 10.6%에 불과하였으나 80세 이상의 가구 중에서 최저생계비보다 낮은 소득을 가진 가구는 33%에 이른다. 따라서 가구주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빈곤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3〉 연령별 빈곤가구 비중(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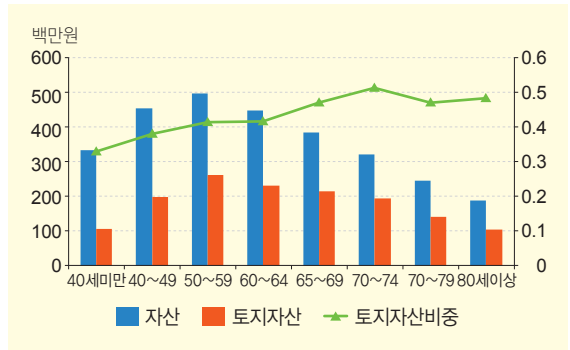
(단위: %)

가구비중	65세 미만	65~69	70~74	75~79	80세 이상
적자가구	41.5	38.3	44.1	44.9	41.6
최저생계비 이하 가구	10.6	12.6	21.0	28.0	33.0

자료: 통계청, 「농가경제조사 2010」 원자료

이처럼 연령이 높아질수록 소득이 감소하고 빈곤 위험도는 높아지지만 고령 농가가 안정적인 소득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은 많지 않다. 우선은 전 생애에 걸쳐 축적한 토지를 처분하거나 임대함으로써 자산을 소득으로 전환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으나, 농업인들의 주요 자산인 토지는 자산으로서의 비중은 높지만 실제 노후소득 안정에는 크게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 [그림 5]는 주택, 농기구, 동물, 토지 등을 합한 전체 자산 규모와 토지자산의 비중을 보여주고 있다. 농업인의 전체 자산평가액은 가구주의 연령이 50대에 이르렀을 때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80세 이상 농가의 평균 자산은 약 1억 8,840만원에 이른다.

[그림 5] 농업인의 토지의존도



토지자산 또한 고정자산과 비슷한 양상으로 변하고 있는데, 40세 미만 농가의 평균 토지보유액은 1억 5,886만원에 불과했으나 연령이 높아질수록 점차 증가하여 50대 농가의 평균 토지보유액은 2억 6,163만원에 이른다. 이후 토지자산은 꾸준히 감소하여 80세 이상의 농가는 평균 1억 381만원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자산과 토지의 평가액은 60대 이후부터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데 반해 전체 자산에서 토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커지고 있다. 40세 미만의 농업인 사이에서는 전체 자산 대비 토지 비중이 32.7%였다가 70~74세의 농업인 사이에서는 51.2%로 증가하였고 이후에 다소 감소하지만 큰 폭으로 하락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령 농업인들의 토지 의존 성향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사망 전까지 농업에서 토지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의존하다가 사망 시 자녀들에게 토지를 상속하는 경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표 1〉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농지 임대료로 얻는 소득은 고령 농가의 전체 소득에서 최대 2.2%에 불과해 고령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원이 되지 못하고 있다.³⁾ 자산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농지를 소득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정부의 필요성이 부각되는 대목이다.

Ⅲ. 농업인의 노후 준비

1. 국민연금 가입 실태 분석

정부는 1995년부터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하였으나 농업인의 국민연금 가입 실적은 여전히 저조하다. 현재 농업인의 국민연금 가입 현황과 관련하여 신뢰할만한 공식 통계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미가입률은 알기 어렵지만 선행 연구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농업인의 국민연금 가입률은 국가 전체 가입률과 비교했을 때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경환·황의식(2007)이 2007년에 500명의 농업인을 대상으로 국민연금 가입 여부를 조사한 결과 설문 대상자의 53.2%에 해당하는 266명이 국민연금에 가입했다고 대답하였다. 이는 국가 전체 국민연금 가입률과 비교했을 때 매우 낮은 수준으로서 2007년 경제활동인구 중 국민연금 가입자의 비중은 75.6%였다(전병목·이은경, 2010). 윤석명 등(2009)에 의하면 2008년도 농·어업 종사자 48만 2천명 중 58.1%에 해당하는 28만명이 국고 보조를 받아 국민연금에 가입하였다. 또한 박대식 등(2011)의 연구는 가장 최근에 수행된 연구로서 4개의 사례지역(대도시 근교농촌, 평야농촌, 중·산간농촌, 어촌)의 400명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현지통신원 3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4개 사례지역 농·어업인들 중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비중은 79.8%이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현지 통신원 중에서는 68.4%가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확한 미가입률은 알기 어렵지만 선행 연구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농업인의 국민연금 가입률은 국가 전체 가입률과 비교했을 때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⁴⁾ 이에 비해 60세 미만의 농·어업인들 중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비중은 다소 감소하는데 4개 사례지역은 40.2% 현지 통신원은 15.4%이다.

〈표 4〉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현황

(단위: 명, %)

응답범주	4개 사례지역 농·어업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현지통신원			
	응답자 전체		60세 미만		응답자 전체		60세 미만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현재 국민연금 보험료를 매월 내고 있다	81	20.2	67	59.8	62	31.6	44	84.6
내지 않고 있다	319	79.8	45	40.2	134	68.4	8	15.4
계	400	100.0	112	100.0	196	100.0	52	100.0

자료: 박대식 등(2011)

2010년 농가경제조사 대상 중 공적연금 납부 여부를 기준으로 국민연금 가입 여부를 평가한 결과 농가의 연령별·경기규모별 가입자 현황은 아래 〈표 5〉와 같다. 연령대에 따라서 공적연금 가입 비중은 달라진다. 40대 농가들의 공적연금 납입 비중은 72.3%이며 50대의 공적연금 납입 비중은 82.8%이다. 전병목·

3) 많은 연구자들이 농지를 소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역모기지론 형태의 소득 정책의 도입이 농가의 노후 소득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는 데 동의하고 있다. 황의식·채광석(2008)은 농지를 바탕으로 한 농촌형 역모기지론을 도입하면 적자가구의 비중이 34.9%에서 17.0%로 감소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보았다. 김병규 등(2011)은 1억원의 농지를 가지고 있는 65세의 2인가구의 가장이 농지연금에 가입하면 최저생계비의 80.46%를 총당할 수 있고 동일한 연령의 4인가구 가장이 가입하는 경우 최저생계비의 53.64%를 총당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최경환·황의식(2007)은 역모기지론이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유용한 대안임을 주장하면서 가계비를 충족하지 못하는 농가의 비중이 34.8%에서 24.8%로 감소할 것으로 내다보았다.

4)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는 농산물의 수급 및 가격 관측을 위해 현지 농민들을 통신원으로 선정하여 정기적으로 농산물 생산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따라서 통신원의 경우 평균적인 농민들에 비해 정부 정책에 대해서 정보가 많고 정부 보조의 수혜에 보다 적극적인 가능성이 높다.

청장년 농업인들이 국민연금 가입에 소극적인 이유는 우선 노후를 대비할 만한 당장의 경제적인 여력이 많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은경(2011)이 계산한 국민 전체 가입률 75.6%과 비교해 보면, 40대의 국민연금 가입은 국가 전체 평균에 다소 못 미치는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나 50대 농가는 국가 전체의 가입률보다 높은 수준에서 국민연금이 가입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60대와 30대를 합한, 70세 미만의 농가의 전체 공적연금 가입률은 57.1%에 불과하여 농업인들의 국민연금 가입 비중은 국가 전체 가입비중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다.⁵⁾ 이를 박대식 등(2011)의 조사결과와 비교해 보면, 4개 사례지역의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비중보다는 높지만 현 지통신원들의 납부비중보다는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지규모별로 가입자 비중을 살펴보면, 40대의 경우 1.0ha에서 2.0ha 사이의 경지를 가지고 있는 농가의 공적연금 가입률이 가장 높으며 경지면적이 증가할수록 공적연금 가입률이 낮아지고 있다. 반면 50대의 경우에는 경지면적이 증가할수록 공적연금 가입률이 높아지고 있다. 이는 공적연금에 대해서도 생애주기에 따라 태도가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즉, 경지면적이 많은 40대 농가일수록 공적연금에 대한 투자보다는 농업투자를 확대하는 데 우선 순위를 둘 수 있고 은퇴 시점에 가까운 50대 경영주는 노후소득 안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공적연금 가입 비율도 높아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5> 연령·경지규모별 공적연금 가입자 비중

(단위: %)

경지규모	경영주 연령			경지규모별
	40~49	50~59	60~69	
0.5ha 미만	63.1	79.6	43.0	57.9
0.5~1.0	76.1	76.3	38.2	54.2
1.0~2.0	78.7	85.4	36.3	56.8
2.0~5.0	70.9	84.7	35.8	57.7
5.0ha 이상	59.6	98.2	44.4	66.1
경영주 연령별	72.3	82.8	38.2	57.1

주: 1. 60~69세 이상은 일반 사업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는 될 수 없으나 임의계속가입자로 국민연금에 남을 수 있으므로 계산에 포함하였음.

2. 샘플 가중치를 적용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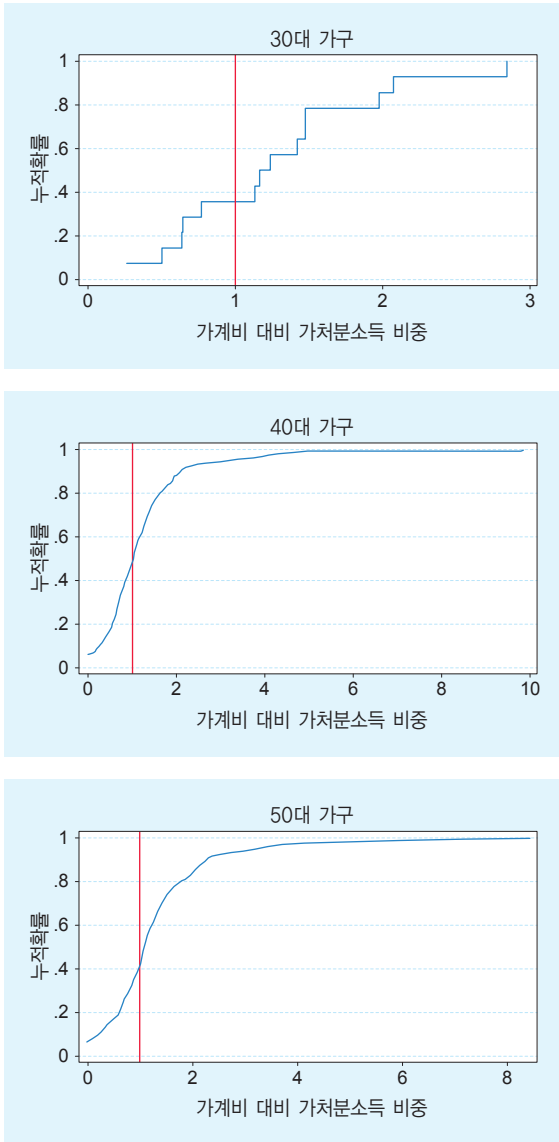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농가경제조사 2010』 원자료

청·장년 농업인들이 국민연금 가입에 소극적인 이유는 우선 노후를 대비할 만한 당장의 경제적인 여력이 많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60세 이하 가구의 50% 이상이 가계지출을 소득으로 충당하지 못하는 적자가구인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6 참조). 통계청에서 발표한 2012년 1분기 가계동향에 따르면 우리나라 2인 이상 가구의 28.4%가 적자 가구이다. 이와 비교해 본다면 농가의 소득 부족은 국가 평균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농가들은 전체 가구에 비해 여유소득이 부족한 상황이며 이는 국민연금 가입을 망설이게 되는 요인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처럼 경제적인 여건이 국민연금 가입 여부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또는 다른 요인들은 없는지 파악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국민연금 가입 회귀식을 추정하였다.

5) 농가경제조사에서는 국민연금과 기타 공적연금 가입 여부가 구분되지 않고, 납부예외자를 분류할 수 없기 때문에 가입자 비중 계산 시 오류가 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해석에 주의가 필요하다. 납부예외자는 실직, 휴직, 사업 중단 등 정상적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없어 국민연금 납부를 면제받는 사람으로서 김경아(2011)에 따르면 농·어촌 지역의 2011년 1월 기준 납부예외자는 102만 2,581명이다.

[그림 6] 청장년 농가 소득 대비 지출 비중



$$P_i = \beta_0 + \beta_1 income_i + \beta_2 asset_i + \beta_3 spouse_i + \beta_4 age_i + \beta_5 sex_i + \beta_6 edu_i + \beta_7 hhsz_i + \epsilon_i$$

P_i 는 국민연금 가입 여부를 나타내는 변수로서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을 경우 1, 그 반대의 경우에는 0 이 된다. 그러나 농가경제조사에서는 국민연금과 기타 공적연금을 따로 구분하지 않고 조사하고 있으므로 이 연구에서는 공적연금 보험료 납부여부를 대리변수로 사용하였다. income은 농가의 전년도 소득으로서 농업소득과 농외소득을 합한 금액을 이용하였다.⁶⁾ asset은 농가가 소유한 토지면적을 나타낸 것으로 농가경제조사에 기록된 연도말 기준 토지면적을 이용하였다. 변수 spouse는 경제활동을 하는 배우자의 유무를 나타내는 변수로서 외부에 고용되었거나 자영업을 하는 경우 1, 그 외 무임노동을 하거나 노동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0으로 표시된다. age는 가구주의 연령이다. sex는 남, 여를 나타내는 이항변수로서 가구주가 남자인 경우 1, 여자인 경우 0으로 나타낸다. 또한 변수 edu는 가구주의 교육수준을 나타낸다. 변수 hhsz는 농가의 가구원 수를 나타냄으로써 부양가족의 숫자가 국민연금 가입 여부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한다.

한편 농업인의 저조한 가입률과 함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은 농업인들이 실제 소득보다 낮은 수준에서 기준소득을 신고한다는 것이다(박대식 등, 2011; 최경환·황의식, 2007).⁷⁾ 따라서 농업인의 공적연금 가입 여부와 함께 공적연금 보험료 납부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위의 설명변수와 개별 가구의 공적연금 보험료 납입액 사이의 상관관계를 추정한다.

6) 농가경제조사는 매 5년마다 이루어지는 센서스 조사를 바탕으로 하여 표본을 추출하고 5년 동안 동일한 가구에 대해 조사를 시행한다. 따라서 2009년과 2010년 사이에 표본의 변화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가구키를 이용하여 전년도 소득을 추적할 수 있다.

7) 농업인의 과소 소득신고는 일반 자영업자의 비중이 높은 지역가입자 사이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빈번하게 일어난다. OECD(2007)에 따르면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지역가입자가 사업장 가입자에 비해 낮은 기준소득월액으로 가입하고 있으며 이는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나타나는 현상이다. 우리나라 농업인의 경우, 국민연금통계연보에 따르면 2010년 기준 농림어업종사자 중 국민연금 가입자의 약 절반이 지역가입자로서 이들의 기준소득월액 산정은 신고 내역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므로 이들 지역가입자의 과소신고가 농업인의 소득 과소신고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6〉 표본의 기초통계량

변수	관측수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공적연금 납부 (예: 1, 아니오: 0)	673	0.824	0.381	0	1
연간 공적연금 납부액(천원)	673	842.024	924.346	0	6,750.300
가구주 연령	673	52.6	4.9	30	59
소득(백만원)	673	47.658	46.950	0	596.596
토지면적(1000m ²)	673	12.136	15.473	0	148.326
배우자근로 여부 (예: 1, 아니오: 0)	673	0.379	0.485	0	1
가구주 성별 (남: 1, 여: 0)	673	0.979	0.145	0	1
가구주 학력	무학	초졸	중졸	고졸	대졸
관측수	15	128	168	336	26
가구원수	2명	3명	4명	5명	6명 이상
관측수	234	177	144	87	31

주: 자료는 가중치를 사용해 계산되었으며 음의 소득을 가진 가구의 경우에는 소득을 0으로 처리하였음.
 자료: 통계청, 『농가경제조사 2010』 원자료

분석을 위한 자료는 2010년 농가경제조사로서 2010년 한 해 동안 농가의 수입 및 지출내역을 총망라하고 있으며 총조사가구는 2,649가구이다. 그러나 이 연구는 국민연금 가입 여부를 분석하는 것이므로 연금 가입이 가능한 60세 미만의 가구주가 있는 가구로 분석대상을 한정하였고 그 결과 총 673개의 가구가 분석에 포함되었다.

공적연금 보험료 납부 여부를 종속변수로 놓고 추정한 결과 변수별로 크기에 차이는 있으나 가구소득, 가구가 소유한 토지의 면적, 배우자의 근로 여부, 가구주의 연령이 공적연금 보험료 납부와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농민들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 면적이 많을수록, 배우자의 소득이 있을 때 국민연금에 가입할 여력이 많아지게 되기 때문이다. 또한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국민연금에 가입할 확률이 높아지는데, 이는

은퇴연령에 가까울수록 노후 준비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할 수도 있다. 동시에 추정 결과는 연령이 낮을수록 국민연금에 가입할 확률이 낮아짐을 의미한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연금수령액이 높아진다는 점을 감안하면 현재의 청·장년 농업인들에게 있어 국민연금이 장래 노후소득 안정에 크게 기여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짐을 의미한다.

한편 가구주의 성별, 학력, 가구원 수 등 비경제적인 특성들은 공적연금 보험료 납입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이들 비경제적인 요인보다는 경제적인 요인에 의해 국민연금 가입 여부가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공적연금 납입액을 종속변수로 놓고 회귀분석을 시행한 결과 전년도 소득이 높을수록, 근로배우자가 있는 경우, 납입액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들 변수에 대해서는 Probit 추정 결과와 다르지 않았다. 반면 토지면적의 경우 Probit 추정 결과와 달리 납입액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없거나, 있다 하더라도 음(-)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토지의 보유 면적이 많을수록 공적연금 납부액이 낮아짐을 의미하며 공적연금에 가입한 납입한 농가라 할지라도 공적연금보다는 토지를 노후 소득원으로서 더욱 의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연령이 높을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공적연금 납입액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공적연금 납입 여부 추정 결과

변 수	종속변수: 공적연금 납입 여부		종속변수: 공적연금 납입액	
	Probit 모형		Tobit 모형	OLS 모형
	계 수	한계효과	계 수	계 수
전년도 소득	0.0038** (0.0017)	0.0010*** (0.0004)	4.7640*** (0.7928)	4.0596*** (0.7233)
토지면적	0.0162*** (0.0058)	0.0042*** (0.0014)	-1.0132 (2.2062)	-4.7579** (1.9457)
근로배우자	0.2548** (0.1244)	0.0635** (0.0298)	405.0971*** (77.4276)	368.6486*** (71.5334)
연령	0.0567*** (0.0135)	0.0146*** (0.0035)	60.5332*** (8.8014)	44.4600*** (8.4221)
성별	0.3304 (0.3062)	0.0971 (0.1005)	249.2834 (227.2143)	88.1408 (225.4810)
학력	0.1054 (0.0662)	0.0272 (0.0172)	156.7388*** (43.0516)	137.1151*** (40.5133)
가구원수	0.0902 (0.0581)	0.0236 (0.0149)	139.1479*** (35.2192)	125.9838*** (32.1642)
상수	-3.3858*** (0.8964)		-3955.4410*** (589.0580)	-2491.1170*** (565.4183)
Log likelihood/R ²	-309.2889		-4579.7309	0.1536
관측수	673			

주: 1. *** 1% 수준에서 유의함. ** 5% 수준에서 유의함.
 2. 괄호 안은 standard error임.
 3. OLS 추정치는 공적연금을 납입하고 있는 가구만을 대상으로 하였음.

위의 회귀분석 결과는 경제적인 여건이 국민연금 가입에 대한 중요 요인임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농업인의 국민연금 가입에 따른 경제적인 부담을 완화하는 것은 국민연금 가입률 제고에 상당 부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정부는 농업인의 국민연금 가입에 따른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금보험료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사업은 농·어업인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인 노후생활 도모 및 노후소득 보장을 목적으로 1995년 7월 1일부터 시작되었다. 시행 초기에는 보험료의 3분의 1을 매월 지원하였으며 2003년에는 최저등급 보험료의 2분의 1, 2004년 7월부터 기

공적연금 납입액을 종속변수로 놓고 회귀분석을 시행한 결과 전년도 소득이 높을수록, 근로배우자가 있는 경우에 납입액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들 변수에 대해서는 Probit 추정 결과와 다르지 않았다.

준 등급 이하는 본인 보험료의 2분의 1, 기준 등급 초과는 기준등급 보험료의 2분의 1을 지원하였다. 2010년 이후부터는 기준소득월액이 79만원 이하인 농·어업인에게 매월 보험료의 50%가 감면된 보험료가 부과되며 기준소득월액이 79만원 초과인 농·어업인에게는 3만 5,500원이 감면된 보험료가 부과된다.

근거법은 국민연금법 부칙 제7조, 농·어촌 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제5조,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농·어촌 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31조이다. 지원 대상은 지역가입자 중 농·어업인, 지역가입자에서 임의계속가입자로 된 농·어업인,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농·어업인이며 농·어업에서 발생한 소득보다 그 외의 소득이 많거나 총소득이 전년도 평균 소득월액의 12배를 초과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농·어업인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거주지 또는 토지의 소재지 지역의 이장·통장 및 관할 자치단체장으로부터의 확인 내용이 담긴 ‘국민연금 농·어업인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을 받은 농·어업인은 2006년부터 2011년 사이 평균 매년 약 24만 3천명이었으며 이는 동 기간 동안 농림어업 취업자의 약 3분의 1에 해당된다.

이처럼 연금보험료 지원 사업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업인들이 국민연금 가입에 소극적인 이유는 크게 세 가지인 것으로 추정된다.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을 받은 농·어업인은 2006년부터 2011년 사이 평균 매년 약 24만 3천명이었으며 이는 동 기간 동안 농림어업 취업자의 약 3분의 1에 해당된다.

첫 번째는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최경환·채광석(2008)에 따르면 젊고 고학력인 농업인일수록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이 농·어촌 지역으로 확대된 것은 1995년으로서 아직 완전노령연금 수급자가 나오지 않았다. 따라서 국민연금이 실질적으로 노후 소득 안정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을지에 대한 확신이 농업인들 사이에 퍼지기에는 국민연금이 충분히 성숙하지 못하였다. 또한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국민연금의 재정 불안정도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지 못하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고령인구의 비중이 증가하면서 근로 가능 인구는 감소하지만 연금 수령 인구는 증가하여 내는 만큼 받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인식이 강하게 작용하기 때

문인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 요인은, 현행 보험료 지원사업이 농업인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기에는 그 효과가 다소 미흡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연금보험료 지원사업에 대한 인지도가 낮기 때문에 지원사업의 활용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박대식 등, 2011). 뿐만 아니라, 현행 보험료 지원사업의 지침에 따르면 79만원 이하의 기준소득을 가진 농가는 월 보험료의 50%를 지원받고 79만원 초과 농가는 매월 3만 5,500원을 정액으로 지원받는다. 그러나 2010년 농가경제조사 결과 전체 농·어촌 지역 가구 중 79만원 이하의 가구는 약 10%에 불과해 대부분의 농가가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감면의 수준은 50%보다 낮다.

세 번째 요인은, 여타 노후보장 수단과의 경쟁관계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농업인의 경제활동에서 토지의 역할은 매우 크고 노후 자산으로서 토지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필요에 따라서 농지를 임대 또는 매도하여 노후소득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젊은 농업인에게 한정된 자원 내에서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것보다 토지를 추가 구매하여 농업수익을 올리고 노후 자금을 확보하는 것이 더욱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다. 위의 Tobit 및 OLS 회귀분석 결과는 토지를 많이 가진 농

〈표 8〉 연금보험료 지원 제도 예산 및 실적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지원인원 (월 평균, 천명)	274	255	239	230	243	219	230
기준소득금액 (최대지원가능액)	48만원 (21,600원)	52만원 (23,400원)	62만원 (27,900원)	73만원 (32,850원)	79만원 (35,500원)		
결산/예산 (백만원)	67,300 /67,300	73,129 /76,054	79,298 /88,398	88,847 /91,665	86,079 /93,977	n.a. /86,927	n.a. /92,428

주: 지원인원은 실제 지원한 인원을 집계한 것이 아니라 예산개요상의 지원계획 인원임
 자료: 국회결산자료(보건복지위원회예비심사검토보고서), 2006년
 국회결산자료(농림수산식품위원회예비심사검토보고서), 2007~2011년
 농림수산식품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2011, 2012년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 (<http://www.mifaff.go.kr/main.jsp>)

업인일수록 공적연금 납입액이 작아져 향후 노후 소득 원으로서 국민연금에 대한 기대가 크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국민연금 가입률을 제고하고 농업인들이 실제 소득을 신고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 확보가 우선적인 과제이다. 또한 보험료 지원사업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동 사업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 동시에 지원 수준을 상향 조정하여 국민연금 가입에 따르는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해 주는 것이 국민연금 가입률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지원 수준의 조정 방식은 기준선(79만원)을 유지하면서 저소득층에게 보다 높은 지원율을 적용하는 방식과 현행 지원율(50%)을 유지하되 기준선인 79만원을 상향 조정하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다. 첫 번째 방안의 경우 기준소득 79만원 이하의 저소득층에 대해 재정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소득 재분배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두 번째 방안은 50%의 지원율을 보다 많은 농업인이 누릴 수 있으며 첫 번째 방안에 비해 재정 부담이 적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농업인의 노후 준비를 지원하기 위한 보다 근본적인 방안으로서 농가의 경제적 특성에 맞추어 차별화된 지원 방법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자산의 보유량이 많은 농가의 경우 자산을 소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정책에 지원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2011년부터 시행된 농지연금에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는데 농지연금은 소유 농지를 담보로 맡기고 일정액의 연금을 매달 수령하는 역모기지론이다. 반면 자산이 부족한 소규모 농가는 농지연금을 통해 노후 소득을 확보할 수 없으므로 농지연금보다는 국민연금 지원을 통해 노후소득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보험료 지원사업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동 사업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 동시에 지원수준을 상향 조정하여 국민연금 가입에 따르는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해 주는 것이 국민연금 가입률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2. 농·어업인 대상 연금 지원제도의 해외 사례

OECD 국가들은 다양한 형태의 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의 연금제도와 동일선상에 놓고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그러나 농업인의 연금 가입과 관련하여 국가 차원에서 재정 지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우리나라와 OECD 국가들의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다. 연금보험료의 지원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는 급여지출의 일정 부분을 국가가 부담하는 형식이고 두 번째는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형식이다.

오스트리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폴란드, 스페인은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연금제도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그 외 별도의 농민연금을 운영하지 않고 있는 국가라 하더라도 농·어가에 대해 보험료 지원을 통해 농가소득을 보조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OECD 국가들은 높은 수준의 연금보험료를 책정하고 있으므로 지원이 비율이 같다고 하더라도 절대적인 재정 지원 규모는 더욱 크다. 더욱이 연금 보험료 지원을 통해 개별 농민이 부담하는 보험료는 경감되지만 농민이 수령하는 연금액은 피고용자나 여타 자영업자들의 연금액과 비교해 비슷한 수준이므로 가입 보험료 대비 수령액을 기준으로 본다면 농민들에 대한 정부 지원은 더욱 커진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오스트리아, 핀란드, 독일의 경우 농민연금제도에 지원되는 재

〈표 9〉 주요 국가별 농민연금보험 혜택

		대 상	보험납입액	정부보조
한 국	농 민	18~59세 사이의 자영농	소득의 9%	기준소득월액 79만원 이하: 보험료의 50% 79만원 초과: 3만 5,550원 정액 지원
	자영업자	18~59세 사이의 자영업자	소득의 9%	
오스트리아	농 민	농민: 자영농과 농사를 돕는 가족구성원(의무가입)	소득의 22.8%	소득의 7.8%(2001년 기준 자영농에 대한 정부보조비율은 74%)
	자영업자	농민을 제외한 자영업자 (자발적가입)	소득의 22.8%	소득의 5.3%
핀 란 드	농 민	소득연계: 5ha 이상의 농지를 경작하고 연소득이 2,752유로 이상의 모든 농민 (의무가입)	기본: 없음 소득연계: 소득 신고액의 21.4%	공제혜택을 감안하면 실제로는 평균 10.5% (2002년의 경우 정부보조 비율은 76%)
	자영업자	소득연계: 연 소득 5,504유로 이상의 4개월 이상 근속자 (의사 변호사 작가 등도 포함)	기본: 없음 소득연계: 소득 신고액의 21.4%	사업 초기 4년 동안은 16.05% (2002년의 경우 정부보조비율은 8%)
프 랑 스	농 민	자영농과 농사일을 돕는 가족 및 농장근로자	소득의 25.03%	사회보장제도 운영에 드는 비용의 18%만이 농민들의 납입료로 운영되며 나머지는 정부 보조
	자영업자	직종에 따라 각기 다른 4개의 연금보험에 가입	소득의 25.03%	
독 일	농 민	농민과 그 배우자(의무가입)	평균보험납부액은 피고용자의 평균 납부액의 절반 수준임	연금 총수입의 75%가 세금으로 총당됨 나머지 25%는 평률보험료수입으로 총당 (25% from flat rate contribution)
	자영업자	자영업자의 직종에 따라 다양한 종류의 연금시스템 존재	19.5%	
그 리 스	농 민	농민 및 5천명 이하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서 근로하는 피고용자	n.a.	총연금액의 3분의 1을 자비 부담 3분의 2는 국가 부담 (법령 개정 전인 1998년 이전에는 전액 국가부담)
	자영업자	기술자, 소매업자 및 운수자영업자	소득의 20%	
노 르 웨 이	농 민	상동	소득의 7.8%	피고용자보다 더 적은 부담으로 비슷한 수준의 연금혜택을 받음
	자영업자	상동	소득의 약 18.5%	
폴 란 드	농 민	1ha 이상의 농지를 소유한 모든농민과 그가족들(의무가입)	분기별 연금보험료가 월최소연금납부금의 30%가 되도록 고정	총 연금지출의 약 94%를 국가가 보조
	자영업자	고정납부: 모든 자영업자 소득연계: 모든 자영업자와 그가족들	소득의 39.82%	
스 페 인	농 민	자영농과 그 가족들	과세표준의 18.75% (2004년의 경우 한 달에 596.70유로)	
	자영업자	기술자, 소매업자 등	수입의 26.5%	

자료: OECD(2007)

원이 전체 연금지출의 4분의 3을 차지할 정도로 재정 지원의 규모가 크다. 또한 폴란드는 OECD 국가 중에서도 농민들의 연금 지원이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나라로서 농민들에게 지급되는 연금액의 95%가 정부재정으로 충당되고 있으며 이는 2002년 기준으로 GDP의 약 2.1%에 해당된다.

IV. 요약 및 결론

국민연금은 우리나라의 주요한 노후 준비 수단으로서 그 위치를 확고하게 구축해가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경제적인 부담을 이유로 국민연금 미가입과 과소 소득 신고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은 공공부조와 달리 개인이 기여한 만큼 돌려받게 되므로 보험료 과소납부나 미가입의 책임이 개인에게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은 국민연금과 같은 사회보험에 가입할 여력이 없으므로 인해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에도 연금사각지대에 처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취약계층에 대한 보험료 지원을 통해 경제적인 부담을 완화하여 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 일환으로 정부는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최대 50%까지 지원하고 있다. 경제적으로 취약한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들에게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하는 것은 앞으로 다가올 고령사회에 대응한 효과적인 노후 소득 지원책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보험료 지원에도 불구하고 농업인들은 국민연금 가입에 여전히 소극적이다. 2010년 농가경제조사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이전에 비해 농업인의 국민연금 가입 비중은 증가하였으나 청장년층의 가입은 여전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납부한 금액의 크기만큼 수령액의 크기가 달라지는 사회보험의 성격상 저조한 국민연금 가입률과 과소 신고 소득은 향후 농·

경제적으로 취약한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들에게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하는 것은 앞으로 다가올 고령사회에 대응한 효과적인 노후소득 지원책이 될 수 있다.

어촌 지역의 연금 미수급자나 저수급자를 양산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국민연금 가입이 저조한 요인을 분석하고 가입률 제고 방안을 세울 필요가 있다.

농업인들의 가입이 저조한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우선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과 경제적 부담이라고 할 수 있다. 연금보험료 지원 사업이 현재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경제적인 부담이 가입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은 연금보험료 지원 사업의 낮은 인지도나 효과성에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국민연금과 관련된 불안 요소를 제거하고 홍보를 강화하여 불신을 해소하는 것이 농업인의 국민연금 가입률 제고에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인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농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사업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인지도를 높이고 지원 수준을 상향 조정하여 농업인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자산 및 소득의 규모에 따라 차별화하여 재정 지원을 하는 것이 효율적인 방안이라 할 수 있다. 자산 보유 수준이 높은 농업인의 경우 자산을 소득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을 집중하고 자산이 적은 농업인에게는 국민연금 가입에 재정 지원을 집중하는 방식으로 개별 농업인의 경제 사정에 맞는 차별화 전략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김병규 · 송건섭 · 조덕호, 「농지연금제도를 통한 농촌 노인의 생계비 개선효과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자치학회보』, 제23권, 제3호, 2011, pp. 331~349
- 박대식 · 최경환 · 김강호 · 류성희, 『농 · 어업인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수혜실태와 정책 개선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C2011-44, 2011.
- 백화중 · 석상훈 · 김현수 · 이은영, 『한국인의 은퇴준비와 노후소득 수준의 적절성 평가』, 국민연금연구원 프로젝트 2011-02, 2011.
- 성명재, 『소득 · 자산 · 부채 결합분포 분석 및 정책적 함의 연구』, 한국조세연구원 연구보고서 11-03, 2011.
- 윤석명 · 강성호 · 권문일 · 원종욱 · 신화연 · 이은혜,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책보고서 2009-43, 2009.
- 전병목 · 이은경, 『사회보험 재정전망과 정책과제』, 한국조세연구원 연구보고서 10-10, 2010.
- 최경환 · 황의식, 『농업인의 노후 소득대책에 관한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R547, 2007.
- 최경환 · 채광석, “제16장 농업인의 노후 소득대책”, 『농업전망 2008』,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8
- 황의식 · 채광석, 「농촌형 역모기지론 도입효과 분석」, 『농촌경제』, 제31권, 제4호, 2008, pp. 17~32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전망 2012』, 2012.
- OECD, “Pension Schemes for the Self-Employed in OECD Countries,” OECD Social, Employment and Migration Working Papers, No. 84, 2009.

정책토론투리포트

■ 한국조세연구원 개원 20주년 기념세미나

* 본 원고는 2012년 9월 20일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에서 개최된 「한국조세연구원 개원 20주년 기념세미나」 중 제1부 중장기 조세·재정정책 운용방향의 주제 발표 및 토론 요약입니다. 주제 발표 및 토론의 내용은 소속기관이나 한국조세연구원의 공식 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편집자 주)





한국조세연구원 개원 20주년 기념세미나

기념세미나 개요

- **주최** 한국조세연구원 개원 20주년 기념세미나
- **일시** 2012년 9월 20일(목) 14:30~18:00
- **장소**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
- **진행순서**
 14:30~18:00 기념세미나
 15:10~16:50 개회사
 조원동 한국조세연구원 원장

1부: 중장기 조세·재정정책 운용방향

14:40~15:40 Session 1: 「조세정책의 과거, 현재, 미래」

- ▶ **사회자** 이만우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 ▶ **발표자** 안종석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 **토론자** 김중수 중앙일보 논설위원,
 이의영 경실련 상임집행위원
 임병인 충북대 경제학과 교수
 전주성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15:50~16:50 Session 2: 「장기재정전망과 재정정책 운용방향」

- ▶ **사회자** 김동건 서울대 행정대학원 명예교수
- ▶ **발표자** 박형수 한국조세연구원 연구기획본부장
- ▶ **토론자** 김성태 청주대 경제학과 교수
 백웅기 상명대 금융경제학과 교수
 신영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원장
 전영준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2부: 조세·재정정책과 “KIPF 역할”

17:00~18:00 Session 3: 토론

- ▶ **사회자** 송대희 前 한국조세연구원 원장
- ▶ **토론자** 곽태원 서강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김진표 민주통합당 국회의원
 나성린 새누리당 국회의원
 임주영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최흥식 하나금융지주 사장
 현진권 한국경제연구원 사회통합센터 소장

(가나다 순)

Session 1

조세정책의 과거, 현재, 미래

주제발표 요약

- 본 보고서는 지난 60년간의 조세·국민부담률과 세수입 구조 변화를 살펴보고, 현재의 상태를 국제 비교를 통해 평가하였으며, 미래 정책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환경의 변화와 그 시사점을 점검한 후 중장기 정책방향을 논의함

1. 조세정책의 변천과정과 평가

- 1953년에 5.3%였던 조세부담률이 2010년에는 19.3%로 3.6배가 되었으며, 사회보장기여금을 포함한 국민부담률은 25.1%로 4.7배가 되었음
 - 1950년대에는 재정자립을 위해, 1960년대와 1970년대에는 재정자립과 경제개발 투자를 위해 조세부담률을 증가시켰으며, 정치적 민주화가 진행된 1980년대 이후에는 복지제도 확충이 조세·국민부담률을 증가시킨 주요 동력이 되었음
- 시대별로 차이가 있긴 하지만, 조세부담률을 증가시키는 과정에서 대체로 소득세·법인세보다는 소비과세에 초점을 맞춤
 - 민간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소득·법인세에 다양한 조세지원제도를 두었으며, 세율도 비교적 낮은 수준을 유지함
 - 1990년대 후반이 되어야 소득과세(소득세·법인세)의 세수입이 소비과세보다 많아짐
 - 이는 소득·법인세의 과세 강화보다는 경제발전 에 따른 소득의 증대, 과표 양성화, 기업 구조

조정에 따른 과표 확대, 소비과세 부문에서의 구조조정 등으로 인한 것으로 판단됨

- 2010년 조세·국민부담률이 각각 19.3%와 25.1%로 비유럽 국가들에 비해서는 낮지 않은 수준이나 유럽 국가들에 비해서는 낮음(표 1 참조)
 - 소득세와 사회보장기여금, 일반소비세(VAT) 수입이 유럽 국가들에 비해 상당히 적은 편임
 - 국민부담률이 가장 낮은 집단으로서 비유럽 국가들로 구성된 집단 I 과 비교해 보면 소득세 부담은 우리나라가 상당히 낮고, 사회보장기여금은 높은 편이며, 일반소비세는 유사한 수준임
 - 한편 법인세는 GDP의 3.5%로 국민부담률이 가장 높은 북유럽 국가들(평균 3.5%)을 제외한 다른 모든 집단보다 높음

〈표 1〉 집단별 세목별 세수입의 대 GDP 비율(2010년)

(단위: %, US\$)

집단 구분 (국민부담률)	한국 (25.1%)	집단 I (27% 미만)	집단 II (28~33%)	집단 III (34~40%)	집단 IV (40% 이상)	전체
소득세	3.6	6.0 ¹⁾	7.0	7.8	12.6	8.7
법인세	3.5	3.1 ¹⁾	2.8	2.4	3.5	2.8
사회보장	5.7	4.8	7.8	11.7	11.7	9.2
일반소비세	4.4	4.4	6.7	7.9	8.1	6.7
개별소비세	2.7	2.1	2.5	3.5	2.8	2.7
재산과세	2.9	1.9	1.9	1.6	1.8	1.8
국민부담	25.1	24.0	30.7	36.3	43.8	33.8
조세부담	19.3	19.1	22.8	24.6	32.1	24.6
1인당 GDP	21,529	29,353	32,964	38,706	49,863	37,709
해당국가		비유럽국가	남유럽, 동유럽, 비유럽 국가	영국, 독일, 동유럽·북유럽 국가	북유럽 국가, 프랑스, 이탈리아	OECD 회원국

주: 1) 소득세와 법인세를 구분하여 통계를 제공하지 않는 칠레와 멕시코를 제외한 국가들의 평균

자료: OECD, Tax Database

- 주요 세목의 세율체계를 보면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최고세율은 OECD 회원국 평균치와 유사한 수준이나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기준소득은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임
 - 그 외에 우리나라는 부가가치세율이 상당히 낮은 수준이며, 자본소득인 이자·배당에 대한 세율은 종합과세대상인 경우 세율이 상당히 높음
 - 다른 국가들은 저율 분리과세, 배당세액공제 등을 통해 자본소득에 대한 세부담을 종합소득세율보다 낮거나(이자) 유사한 수준(배당)으로 유지함

- 또한 고령화 사회에서는 청·장년기에 벌어들인 소득의 일부를 저축하여 노년기에 사용하는 경향이 확대될 것이므로 저축에 대한 과세가 중요한 의미를 지님
 - 저축을 축소시키거나 저축상품의 선택을 왜곡시키는 정책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저축 행태에 대해 중립적인 조세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사회적으로 양극화가 중요한 이슈가 되는데, 조세정책을 통해서 소득재분배를 크게 개선할 가능성이 있는지, 즉, 정부의 소득재분배 정책에서 조세가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지, 있다면 그 방안은 무엇인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표 2〉 주요 세목의 세율체계(2010년)³⁾

(단위: %, 배)

	한국 (25.1%)	집단 I (27% 미만)	집단 II (28~33%)	집단 III (34~40%)	집단 IV (40% 이상)	
소득세율	노동소득세율 (최고세율기준) ¹⁾	38.5 (3.1)	40.4 (5.8)	40.5 (3.6)	36.7 (2.1)	49.2 (1.8)
	이자	38.5	29.0	22.1	19.6	32.9
	배당 ²⁾	51.0	42.7	39.7	38.1	48.8
법인세율	24.2	28.5	23.2	23.0	28.1	
일반소비세	10.0	13.8	17.2	20.4	22.3	
국민부담률	25.1	24.0	30.7	36.3	43.8	

주: 1) 평균임금의 배수, 예, 2는 노동소득이 평균임금의 2배 이상인 경우에 최고 세율이 적용됨을 의미

2) 배당에 대한 이중과세 조정 후 최종 세부담

3) 세목별 최고세율, 국세와 지방세 포함, 이자세는 2010년, 다른 세목은 2011년

자료: OECD, Tax Database

- 세계화는 법인세를 포함한 자본소득세의 개편 필요성을 제기함
 - ‘국내 투자 촉진’의 관점에서 법인세제를 다시 점검하고 개편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세계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된 1980년대 후반 이후 대부분의 국가가 법인세율을 인하하여 OECD 국가 법인세율 평균이 1981년 47.5%에서 2000년 31.6%, 2012년 25%로 인하됨
 - 국제투자를 통한 조세회피 가능성을 고려할 때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를 통한 재분배 정책은 큰 효과를 거두기 어려움

3. 중장기 조세정책 발전방향

2. 경제환경의 변화와 조세정책에 대한 시사점

- 고령화는 복지지출 수요를 증대시킬 것으로 전망되므로 재정수요가 얼마나 많이 증가될 것이며, 그에 대응하여 세수입을 증대시켜야 한다면 어떤 세목의 세수입을 증대시키는 것이 바람직한지가 중요한 이슈가 됨

- 적정 조세부담률 또는 적정 정부지출 수준의 문제는 경제학의 여러 분야에서 접근되어 왔으나 현실적으로 적용 가능한 정책을 도출하기에는 모두 한계성을 지님
 - 경제이론 및 실증분석 결과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정부 역할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바탕

으로 정치적 선택과정을 통해 결정될 수밖에 없음

- 우리나라는 ‘저부담-저복지’ 상태인데, 대부분의 비유럽 국가는 ‘저부담-저복지’를 유지하고, 북유럽 국가를 포함한 유럽의 부유한 국가들은 ‘고부담-고복지’ 형임
 - 최근 정치권에서 제시된 복지정책과 세수입 증대 조치를 종합해 보면 ‘저부담-고복지’로 이행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지속가능한 형태가 아님
 - 지속가능한 부담 수준은 조세구조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으므로 조세·국민부담률은 세수입 구조와 함께 결정되어야 함(〈표 1〉, 〈표 2〉 참조)
- 국제비교 결과는 향후 세부담 증대시 소득세와 사회보장기여금, 부가가치세 수입을 증대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시사함
 - 유럽 국가 중 국민부담률이 높은 국가들을 보면 소득세와 사회보장기여금이 국민부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일반소비세까지 더하면 75% 수준임
 - 우리나라는 소득세와 사회보장기여금이 35%, 일반소비세를 더하면 55%임
 - 법인세는 효율성 측면에서 가장 열등한 세목이며, 형평성 측면에서도 우수한 정책수단이 아니므로 장기적으로 세부담을 완화해 가야 할 것임
- 세목별로 보면 소득세는 최고세율의 인상보다는 세율구간 조정과 공제체계 개편을 통해 과세기반을 확대하고 소수의 고소득자가 아닌 국민 대다수가 납부하는 보편적 과세로 발전시켜야 할 것임
 - 최고세율은 OECD 국가 평균치와 유사한 데 비해 최고세율 적용기준 소득은 매우 높은 수준임
 - 또한 저소득층의 비과세자 비율이 높음

- 2010년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자 중 과세미달자와 세액이 0인 자의 비중이 43.8%, 근로소득 과세대상자 중 과세미달자 비중이 39.1%임

- 종합소득 적용시 이자·배당에 대한 세율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 상당히 높음
 - 다른 국가들은 이자에 대한 세율을 법인세율과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하고 배당에 대해서도 근로소득세보다는 낮은 세율로 과세하는 경향이 있음
 - 이러한 관점에서 이자·배당 등 자본소득에 대해 건강보험료 등 사회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은 다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 법인세는 세율 인상보다는 비과세·감면 축소를 통한 효율성 제고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함
 - 법인세율은 지방세 포함 24.2%로 OECD 회원국 평균(25%)과 큰 차이가 없으며, 법인세 수입의 대 GDP 비중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 상당히 높은 편임
 - 법인세 부문의 조세지출은 7조 490억원으로 법인세 수입 37조 3천억원의 15.9%인데, 이는 소득세(29%)보다는 낮지만 부가가치세(8.5%)에 비해서는 상당히 높은 수준임(2010년 기준)
- 부가가치세는 면세품목의 축소와 세율 인상을 모두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면세를 과세로 전환할 경우 물가인상에 대한 우려가 많은데, 김승래(2007) 외에 의하면 미가공 식료품 등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는 그 효과가 크지 않으며 일시적임
 - 부가가치세의 인상에 대해서는 역진성이 반대 논리로 제시되는데, 도시가계자료를 분석한 바에 의하면 총소득 대비 부가가치세 부담은 소득구간 별로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성명재, 2012)



토론 요약

조세정책 효과에 대한 면밀한 실증분석 필요



김중수
중앙일보 논설위원

향후 중장기 조세정책의 최대 현안은 복지재원 조달 문제이며, 복지정책의 방향을 어떻게 잡을 것인지부터 정해야 한다. 현재의 '저부담-저복지'에서 복구식 '고부담-고복지'로 가는 것은 무리이며, '중부담-중복지'가 바람직하고 '저부담-고복지'는 최악의 선택이라고 할 수 있다. 복지가 공짜가 아니라는 인식에서 출발해야 하며, 기회의 평등(교육, 보육)은 보편적 복지, 결과적 보정(기초생활보장, 공공부조 등)은 선별적 복지 방식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복지제도 4대 보험 중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은 기본적으로 수익자부담 원칙이며, 사회보장기여금으로 충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부가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장기요양보험과 기초노령연금은 세금으로 충당하되, 현재 지원대상이 너무 넓고 지급 수준은 너무 작으므로 재정부담능력을 감안하여 수혜대상과 지급 수준을 전면적으로 재설계해야 한다.

일자리가 최선의 복지이며, 근로장려세제 등 자력부조에 적극적인 세제지원이 필요하다. 기획재정부 장기전략회의에서 제기한 노인연령기준의 상향조정을 적극 검토해야 하며 복지수요 재산정, 재정부담 압박 완화 등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또한 노령자, 취약계층의 소득활동이 후생을 악화시키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조세정책의 효과에 대한 면밀한 실증분석이 필요하다. 막연하게 장래 복지수요를 위한 세수입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효과를 분명하게 제시해야 국민들이 정치적으로 선택할 수 있을 것이다. 세율이 높다고 세수가 늘지는 않는다. 세수는 세율보다 성장률과 상관성이 높아 보인다. 세목별로 세율 인상(인하)이 세수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해야 한다. 또한 성장률 변동에 따른 세수 변화를 감안해야 한다. 장기 저성장 지속 또는 구조적인 저성장이 고착될 경우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야 한다.

조세정책의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 낮은 세율, 넓은 세원, 국민 개세의 원칙을 수립해야 한다. 세율구조의 단순화와 과세표준의 합리적 조정이 필요하며 징벌적, 약탈적 세금을 지양해야 할 것이다.

기조 변화를 세분화하여 중장기 시각에서 조세정책의 기능 활용해야



이의영
경실련 상임집행위원

본 연구는 과거 자료를 분석하여 향후 정책대안을 제시한 것으로 방향 부분에서 신중하게 접근한 것 같다. 앞으로 전개될 중기재정(차후 5년) 계획에서는 과거 우리나라가 겪지 못했던 저성장, 고령화, 양극화, 세계화 등의 다양한 사회변동 요인이 있을 것이다.

고령화 사회는 복지수요 문제가 중점적인데, 베이비부머 세대가 차후 5년 동안 퇴직하여 대거 장년실

업이 발생할 것이다. 이들은 연령제한 때문에 연금수급을 받지 못할 것이다. 베이비부머의 자녀세대 또한 차후 5년 동안 청년 취업시장에 쏟아져 나올 것인데, 시장경제 여건을 감안할 때, 일자리가 부족하여 다수가 실업을 면치 못하고 삶의 질에 심각한 문제가 생겨나 복지수요가 증가할 것이다. 조세정책의 기능을 감안하여 눈에 보이는 기조 변화를 더욱 세분화하여 중장기 계획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이어야 할 필요가 있다. 경실련에서는 분야별 정책대안집을 발간하였으므로 참고하면 좋을 것이다.

큰 틀에서 중장기 조세정책의 운용방안은 첫째, 경제적인 측면에서 공평조세와 탈세 척결을 통한 소득과 부의 불평등 완화를 지향해야 하고, 둘째, 시장의 활성화, 성장잠재력 제고를 위한 재정과 세제의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하며, 셋째, 복지적 측면에서 조세의 왜곡효과를 완화하고 재정의 효율적 배분을 통한 경제효율성을 제고하는 방향이 필요하며, 넷째, 지역간 재정격차를 줄이기 위한 중앙과 지방의 세원조정이 중장기 경제정책방향에 필요하다.

적정 조세부담률 수준, 국민적 합의 필요



임병인
충북대 경제학과 교수

본 연구는 조세정책의 변천과정과 국제비교 등을 주요 지표인 조세부담률과 국민부담률 수치로써 잘 개관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세수입 구성의 변천과정,

주요 세목의 세율체계 등을 상세히 논의하고 있다. 특히, 눈에 띄는 분석은 조세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고령화를 비롯한 우리나라의 과제를 설정한 뒤, 고려 요소와 조세정책 이슈를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상의 결과에 근거하여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함으로써 논리적으로 체계적인 접근을 하고 있는 시의적절한 연구라고 사료된다.

연구에서는 주요한 미래환경의 변화를 고령화, 양극화, 세계화, 저성장 등 4개로 제시하고 있는데, 이외에 추가할 변화들이 더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우선 대내적 요인으로 국민들의 높아진 복지 요구, 통일 가능성, 지방자치에 대한 명확한 방향 설정을 통한 국세 및 지방세의 적절한 조합 필요성을 들 수 있다. 제시한 네 개 항목과 전문한 항목들을 대내외인과 대외외인으로 구분하고, 그에 맞는 조세정책 이슈를 제기했다면 보다 명확한 조세정책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에 대한 논의 중에서, 우리나라 적정 조세부담률 수준은 복지지출 등의 정부지출의 적정수준과 연계하여 국민적 합의를 도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대하여 전적으로 동감한다. 문제는 그 방법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세수입 구성의 발전방향에서 제시한 소득세와 사회보장기여금, 부가가치세 수입 증대와 법인세 부담 완화 방향도 원칙적으로 동의한다. 그러나 전통적인 세수입구성 구분방식이 아니라, 현재 유럽에서 시행하고 있는 탄소세 등의 환경 관련 조세를 기후변화에 대한 높은 국민인식 수준을 활용하여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며, 중장기적인 도입과제로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기여금에만 의존한 사회보험제도 운영이 형평성을 저해할 것이라는 지적과, 보편적 복지를 위해 사용하는 재원을 투표권을 가지지 않은 법인과 소수의

고소득자에게 집중 부담시킬 경우 선거에 의한 복지 확대 결정이 손쉬워질 것이라는 지적에도 전적으로 찬성한다. 따라서 지역단위의 주민투표제도를 이용하여 재원조달에 대한 찬반을 묻는 방식을 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고, 이런 시각에서 지방자치제에 대한 명확한 방향 설정을 통해 보편적인 복지재원의 지역조달 체계를 고려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담배 관련 세금과 주세의 국민보건위생 증진과 외부불경제 시정 측면에서의 운용과 관련하여 관련 조세의 제대로 된 외부불경제 시정효과를 위한 물가연동제 도입을 조기에 실시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된다.

조세부담 늘어난 것과 성장을 높아진 것은 밀접한 관련 있어



전주성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큰 그림에서 생각을 해보면, 조세를 매기는 원칙은 담세능력과 수익자부담원칙이다. 현실적으로, 합리적으로 매긴다면 국방과 같은 순수공공재는 lum-sum tax이고, 교육·교통 등 공공서비스는 수익자부담원칙이다. 이렇게 하면 형평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lum-sum 대신 대부분 소득세, 누진제 과세소득이 들어오는 것이다. 같은 소득이라도 자본소득보다는 노동소득이 더 우월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적정 조세

이론이다. 가장 기본적인 이론은 자본 대신 노동, 소비과세인 경우 부가가치세는 노동과세라고 볼 수 있으니 괜찮지만, 목적세나 개별소비세는 과세하지 말자는 것이 큰 틀이다.

우리나라는 소비세 비중이 낮고 법인세 비중은 높고 개별소비세 비중은 상대적으로 높아서 학자들이 비판하며 법인세와 자본과세를 낮추고 목적세를 없애며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제도를 없애자고 하지만 동의하지 않는다. 선진국형의 경우는 과세베이스가 모니터링된다는 전제하에 실시되지만, 많은 개도국들은 과세베이스의 모니터링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과세가 쉬운 관세 등에 매기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지난 20~30년간 우리나라처럼 조세부담률이 올라간 나라가 없다. 조세부담이 늘어난 것과 성장률이 높아진 것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선진국 관점에서선 비효율적으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굉장히 덜 비효율적이고 성공적인 세제였다. 우리나라가 경제는 선진적이지만 세제는 개도국형인 이유는, 지하경제 규모가 매우 크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지하경제 규모는 30% 정도로 거의 개도국 수준인데, 탈세가 매우 많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개도국형 과세제도를 가졌다고 볼 수 있다.

또, 법인과세와 자본과세의 혼동 문제가 있다. 자본과세의 일부는 법인과세이긴 하지만, 법인세에는 법인의 지대에 대한 과세와 위장된 개인소득이 법인에 의해 과세되는 부분 등 자본과세가 아닌 부분이 추가 과세되어 있다. 이 논문에서는 법인과세와 자본과세를 동일하게 놓고 연구했기 때문에 학술적으로는 훌륭하지만 정책시사점으로 응용하기는 곤란하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경우 법인소득세율과 개인소득세율 차이가 14% 정도 되는데, 이는 상당한 격차이며 상당히 위장된 개인소득이 들어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자료의 부족으로 연구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차라리 명목세율을 조금 올려서 개인소득세와 차이를 줄

이고 자본과세 자체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실효세율을 낮추는 것이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또, 조세회피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가난한 자영업자가 아니라 부자 자영업자와 대기업 임원 등이다. 이런 경우는 조세를 회피하기가 매우 쉽다. 사치세의 경우 다시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어차피 소득세 모니터링이 힘들다면, 사치재에 과세하면 된다고 생각한다.

선별적, 보편적 복지에 대한 문제는, 같은 예산 안에서는 당연히 선별적 복지가 맞지만, 복지 예산에 들어가는 비중 자체가 다르다. 보편적 복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부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세금을 낸다고 보기 때문에 수익자부담의 원칙이 더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부자들이 세금을 내는 것이 당연하지만, 저항을 없애기 위해 모두에게 혜택을 주어야 가능하다. 일반적 세수로 복지재원을 마련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인다. 1부 토론

Session 2

장기재정전망과 재정정책 운용방향



주제발표 요약

- 차기정부(2013~2017년)의 재정운용 핵심과제는 국민부담 증가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도록 재정수입을 확충하면서 경제성장, 복지 등 다양한 국민적 수요를 충족시키는 것임
 - 정부수립 이후 재정규모를 낮춘 수준으로 유지하면서도 국방, 교육, SOC 등 분야에 선택과 집중의 원칙하에 재원을 배분함으로써 경제성장과 사회발전에 기여
 - 향후 지속가능한 재정을 유지하면서 국민적·정치적 요구를 수용토록 의사결정의 기준과 원칙을 수립하고, 정치적 포퓰리즘으로부터 재정정책의 노출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제도적 접근 필요
 - 이 외에 재정정보 공개 확대 등 재정투명성 제고 노력도 필요
- 저출산·고령화, 복지제도 확대 요구, 경제위기 및 재정위험, 남북통일 등 4가지가 재정정책의 환경변화이자 국가재정에 대한 심각한 도전과제
 - 저출산·고령화 : 유례 없이 빠른 인구구조 변화로 2040년이면 주요 국가 중 가장 늙은 나라가 될 전망인데, 정부의 보육지원 등 저출산에 대응한 정책은 어느 정도 체계적으로 수립·집행되고 있는 반면, 미래 재정수요에 대한 점검 및 이에 따른 중장기 재원대책 마련은 미흡한 수준
 - ☞ 저출산·고령화만 반영하고 2012년 현재 복지제도 및 정책이 향후에도 계속 유지되는 것

을 전제하더라도, GDP 대비 공공사회복지지출(SOCX) 규모가 2009년 9.6%에서 2050년 21.4%(2007년 OECD 평균의 1.1배)에 달하여 조세부담률의 현 수준 유지시 2050년말 국가채무비율 128.2% 등 재정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

- 복지제도 확대 요구 : 소득격차 확대, 복지 사각지대, 낮은 보장수준, 미약한 소득재분배 정책 등으로 국민들의 복지확대 요구가 증가하고 정치권이 경쟁적으로 복지제도 확대를 공약하고 있어,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복지지출의 자연 증가와 더불어 복지지출 증가세를 가속화시킬 전망

☞ 정치권의 4·11 총선공약을 반영할 경우 공공사회복지지출 규모는 2050년 22.6%(새누리당)~24.5%(민주통합당)로 베이스라인(21.4%)의 1.06~1.15배 수준에 달할 전망

* 총선공약의 재원조달계획이 모두 실현되더라도 2050년말 국가채무비율은 102.6%(새누리당)~114.8%(민주통합당)에 달하는데, 만약 2050년 국가채무비율을 60%(EU 상한선)로 유지할 경우에는 국민부담이 높아져 현재의 '저부담-저복지' 구조가 '중부담-고복지' 구조로 이행할 것으로 전망됨

- 경제위기 및 재정위험 : 경제위기마다 재정악화가 반복되고, 위기 이후에는 잠재성장률이 하락하고 있으며, 매우 다양한 형태를 가지고 나타나는 공공부문의 재정위험도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음

☞ 한국은행의 『부채경제학과 한국의 가계 및 정부부채』(2012.4)처럼 공공부문의 재정위험이 일부 현실화되는 상황을 상정하여 재정을 재전망하면, 2050년말 국가채무비율이 당초 128.2%에서 156.4%로 약 28%p 정도 증가할 것으로 추정됨

- 남북통일 : 남북경제 격차가 과거의 동·서독보

다 더 커 통일비용이 막대할 것으로 추정(GDP 대비 통일 전 연 0.04~0.22%+통일 이후 10년간 연 1.3~6.6%)되는데, 시기나 그 크기의 불확실성이 커 시나리오에 의한 분석만 가능하고 불확실성은 사회 전체 차원에서 관리되어야 함

☞ 통일시기 및 재원조달 시나리오에 따라 국가채무 비율이 기준선 전망 대비 -6.8~+50.1%p (평균 17.0%p) 정도 변동할 것으로 추정되며, 통일재원 조달을 위해 국민부담률이 1~3%p 정도 높아짐

■ 장기재정전망의 정책적 시사점

- 복지수요, 재정위험, 통일비용이 비슷한 시기에 동시다발적으로 국가재정을 악화시킬 경우, 현재 OECD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건전한 우리나라 재정은 2050년에는 심각한 수준에 달할 전망

☞ 현재 OECD 평균의 70% 정도인 우리나라 재정규모 및 조세/국민부담률 수준이 2050년에는 OECD 평균 또는 이를 다소 상회할 것이며, 복지지출 규모도 OECD의 절반수준에서 1.2~1.3배 수준으로 증가하고 현재 OECD 평균의 30%에 그치고 있는 국가채무비율이 2050년말에는 OECD 평균의 약 1.6~1.7배에 달할 것으로 추정

- 그러나 인구고령화 추세나 복지제도 확대에 따른 복지지출 확대는 매우 확실하고 그 규모도 가시적인 반면, 재정위험이나 통일비용은 발생시기나 규모가 불확실하다는 점을 감안해야 함

☞ 지출변화의 성격을 구분하여 각기 적합한 재원대책 마련 필요, 정치적 포퓰리즘으로부터 재정정책의 노출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제도적 접근방법(재정준칙, 국가채무비율 목표, PAYGO 원칙, 중장기 재정전망 시스템, 의무/

재량지출 구분관리 시스템, 선거 전 재정보고서, 공공부문 재정위험 종합관리 시스템 등)의 필요

■ 구체적인 재정정책 운용방향

• 재정정책 방향

- 재정준칙을 중심으로 총량적 재정규율을 강화하여 국가채무비율의 하락세를 지속시키기 위해서는 종전의 재정건전화 정책을 재정의 지속가능성 유지를 위한 정책으로 전환시킬 필요

* 예 : 경기조정 재정수지를 증기에 걸쳐 균형 또는 소폭 흑자로 유지하도록 하는 새로운 재정준칙(경제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2세대' 재정준칙) 도입, 국가채무 증장기 목표를 25% 이내로 설정

- 복지지출 확대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인 세출구조조정 및 세입확충 방안 마련 필요

* 예 : 선진국에 비해 비대한 경제분야 지출이 경제성장에도움이 되지 못할 가능성에 주목하여 점진적으로 축소, 복지지출도 주어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가장 비용효과적인 방법을 모색, 세정에 대해 느끼고 있는 불공정·불공평하다는 인식을 불식, 일몰 도래한 비과세·감면제도의 폐지·축소 비율 상향 조정, 증장기 세제개편 방안 마련 등

• 재정제도 개선

- 장기재정전망 시스템, 의무/재량 구분관리 시스템, PAYGO 원칙, 선거 전 보고서, 재정운용 시스템 추가 개선, 공공부문 재정위험 관리시스템 구축 등 재정제도 개선으로 시스템에 의한 정책환경 변화에의 체계적 대응

• 사회복지 분야 정책방향

- 사회보장제도 내의 비효율성 제거 : 고용과 복지 연계, 복지전달체계 개선, 사회복지통합관리망 등 전산화, 부처간 역할 조정과 유기적 연계 강화, 제도의 유연성 제고 등

- 사회서비스 수요 증가에 따라 민간부분의 역할 강화, 보육지원에 대한 정책의 우선순위 설정 및 지원수단의 차별화, 보육서비스의 질적 제고 필요

- '넓은 세원, 낮은 세율'에 기초한 조세개편을 통한 세입확충 필요

-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재원 분담의 합리적 개선

• 의료 분야 정책방향

- 진료비 보상제도 개혁, 약제비 절감정책 등을 통한 지출 절감으로 건보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

- 건강보험 부과체계를 부과기반을 넓혀 모든 소득(종합소득)에 보험료를 부과하는 등 단일화

- 보다 효율적인 지출행태를 유도하도록 국고지원제도를 개선

-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

- 장기노인요양보험은 아직 제도적으로 발전 여지가 많지만 급속한 인구고령화에 따른 재정 부담에 사전적으로 대비할 필요

• 지방재정·지방공기업 분야 정책방향

- 지방정부 채무 수준이 경제위기, 복지관련 보조사업 확대, 각종 감세, 지방채 발행 요건 완화 및 공기업특별회계 지방채 증가 등으로 일시적으로 급증하였으나 중앙정부 채무에 비해 여전히 작은 규모

- 자체재원 확대-재정력 격차 축소-재정건전성 및 투명성 유지 등 지방재정의 딜레마 해소를 위한 일괄개혁 필요

- 지방공기업 부채규모 증가의 원인으로 ① 사업구조의 문제(도시개발의 사업 초기비용, 지하철 요금 등), ② 제도의 문제(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분석 기준 및 경영평가 기준 부재), ③ 거

버너스 부재(지자체, 지방의회, 지역주민, 중앙 부처, 감사원 등 책임성 부재) 등임

- 이에 지방재정·지방공기업에 대한 사전적·사후적 관리제도를 강화하는 한편, 문제가 되고 있는 사안별로 원칙(재정건전성 유지, 책임성 강화 등)에 입각하여 제도 및 거버넌스 개선을 통해 문제 해결
- 공기업 분야 정책방향
 - 최근 수년간 공공기관 부채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7개 공기업(토지주택공사, 한국전력공사, 도로공사, 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수자원공사)의 경우 부채문제가 심각한 수준
 - 상업성이 강한 공기업 부채는 국가부채와 동일한 성격은 아니지만, 국가재정 부담으로 전이될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상업성·수익성이 확보될 수 있는 공기업 부채는 자체적으로 해결토록 하고 공기업 재무관리 강화정책을 추진하는 등 노력 필요



토론 요약

세대간 재정부담 조정을 위해서는 관련 제도의 개혁 필요



김성태
청주대 경제학과 교수

기본적으로 발표자의 장기재정전망 및 재정규율 준수 필요성에 공감을 표시하며, 본 보고서에 대해 몇 가지 말씀드리겠다. 먼저 세대간 재정부담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본 보고서에서도 언급되어 있지만 현 정책이나 제도가 그대로 유지될 경우 현재세대의 부담이 미래세대의 부담으로 전가되는 상황이다. 세대간 재정부담의 조정을 위해서는 관련 여러 제도의 개혁이 필요하며, 이에는 고부담·저급여 방식으로 국민연금제도의 추가적인 개혁, 현세대의 부담을 강화하는 방안으로서 소비세제의 강화 등 세제개편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과거 1997년말 경제위기,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은 상대적으로 건전한 재정운용에 바탕을 두고 있다고 생각한다. 미래 위기상황에 대비해서 재정의 일정한 여력 확보가 필요한데, 이는 발표자가 지적한 것처럼 재정규율 강화 등이 한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제도적으로 이를 잘 운영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핵심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최근 정치권의 주장은 추가적인 세부담 없이 높은 수준의 복지를 구현할 수 있다고 가정하는 것처럼 보이나, 이는 가능하지 않으며 결국은 일반 국민들에게

이러한 복지제도의 핵심적인 문제를 인식시키고 현재 '저부담-저복지' 수준에서 '중부담-중복지'로 갈 것인지 아니면 '고부담-고복지' 수준으로 갈 것인지 등 국민들에게 의사를 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남북통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금까지는 통일을 비용 측면에서만 강조하고 있으나, 통일은 비용이자 대한민국 경제가 발전할 수 있는 계기도 될 수 있다. 잠재성장률 하락을 반전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으며, 통일비용을 우리가 부담할 수 있도록 미리 순탄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러한 순탄화가 중요한 이유는 그렇게 해야만이 통일비용 부담을 세대별로 골고루 나누어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기준선 전망에 대해서는, 본인이 추정한 최적조세 부담률(20.1~24.2%)을 볼 때, 본 보고서에서의 조세 부담률 20.1%는 보수적인 것 같다. 이를 변경하여 추정하여 보고, 궁극적으로 지속가능한 조세부담률이 얼마인지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향후 재정정책의 초점을 잠재성장률 제고에 두어야



백응기
상명대 금융경제학과 교수

발표자는 저출산·고령화를 반영하여 재정기준선을 전망하였고, 그 후 공공부문 재정위험의 일부 현실화, 남북통일, 각 정당의 복지제도 확대 공약 실천 등

시나리오하에서 재정총량을 전망하였다. 이미 도입된 제도만으로도 저출산·고령화는 2050년의 국가채무 비율을 128.2%까지 상승시킬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이 가능하며, 이는 지금부터라도 당장 재정건전성을 개선해야 하는 당위성을 제공한다 볼 수 있다. 이것은 지난 6월 국회예산정책처가 발표한 136.3%와 크게 다르지 않다. 130%에 달하는 높은 국가채무비율을 하락시키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조세부담률과 국민부담률의 상향조정이 불가피하다. 2050년의 국가채무 비율도 크지만 더 큰 문제는 2050년 이후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심각한 고령화의 진전으로 2060년에는 국가채무비율이 무려 218.6%까지 높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미리 대응하지 않으면 피할 길이 없다.

기준선 전망에서 소위 기준선의 틀을 결정하는 것은 잠재성장률이다. 일단 잠재성장률이 결정되면 그 후 인플레이션을 고려하여 경상성장률이 결정된다. 그 다음에는 금리, 세율, 각종 사회보장기여금 추계 등을 적절히 계상하여 총수입을 산출하게 된다. 총지출은 의무지출과 재량지출이 다른데 의무지출은 근거 법령에 따라 산출하되 대상자 수는 연령별 인구 수에 따라 설정하고, 재량지출은 변동 폭이 크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경상성장률과 동일하다고 가정하는 것이다.

비관적인 장기재정전망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우선 잠재성장률부터 높이는 것이 급선무이다. 그런데 잠재성장률은 경제성장률처럼 돈을 더 푼다고 해서 단시일에 개선되지 않고, 상당히 오랜 시간이 지나야지만 그 효과가 나타난다. 장기재정전망 결과를 보면 재정건전성과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모두 중요하기는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잠재성장률이 높아져야 이 모든 것이 개선될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향후 재정정책의 초점을 잠재성장률 제고에 둘 필요가 있다.

재정정책과 통화정책 간 공조를 통한 정책목표 달성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재정정책은 위기 극복을 위한 최후의 보루로 인식되었다. 2008년 말 미국발 금융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선진 각국은 확장적 재정정책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려고 했으며 그 규모는 유례가 없을 정도로 컸다. 아울러 확장적 재정정책은 전 세계에서 거의 동시에 진행되었다. 우리나라도 2008~2012년에 재정지출 확대와 감세를 각각 33조~34조원 규모로 시행하였으며 그 결과 위기에서 조기 탈출할 수 있었다. 그렇지만 적극적인 재정정책은 재정건전성 악화라는 비용을 지불해야만 했다. 최근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재정정책과 통화·금융정책 간 공조를 잘 하면 재정건전성을 크게 악화시키지 않으면서도 위기 극복을 잘 할 수 있음을 알게 되었다.

금융위기로 인하여 신용이 경색되고 경기가 침체되었을 때 기준금리만 적기에 잘 대응했어도 재정투입이나 감세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었다. 적기에 시행되는 최적 정책조합이 왜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부처간 혹은 기관간 정책 공조가 잘 되지 않고 서로의 권위와 입장만 내세운다면 국민부담은 그만큼 커질 수밖에 없다. 현 정부에는 정책을 합리적으로 조율할 만한 컨트롤타워가 없기 때문에 재정이 필요 이상의 비용을 지불하기도 한다. 경제위기는 앞으로 다양한 모습으로 더 자주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 때마다 재정정책을 최후의 보루로 해서 위기에서 빠져나오기는 어려울 것이다. 기관간의 원활한 공조를 바탕으로 비용을 최소화하는 최적정책조합의 모색이 과거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포퓰리즘적 선거 공약에 대한 사전 검증 시스템 마련해야

발표자의 자료는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복지 공약이 실현되었을 때 재정건전성이 얼마나 악화되는지 잘

보여주고 있다. 모형에서는 복지지출이 증가할 때 경제성장이 빨라지고, 그로 인해 재정건전성이 개선되는 채널이 명시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추후 연구를 통해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단순히 새누리당의 공약을 반영하면 공공사회복지지출 규모가 2050년에 22.6%, 민주통합당의 공약을 반영하면 공공사회복지지출 규모가 24.5%에 이르러 2007년 현재의 공공사회복지지출 규모 7.5%, 2007년 OECD 평균치 19.2%를 크게 초과한다는 것이 결론이다. 양당의 재원조달 방안을 그대로 따를 경우 국가채무비율은 크게 증가하지 않더라도 국민부담률은 지금보다 0.8~2.6%나 증가한다.

모든 선거 공약이 다 그렇지는 않으나 일부는 포퓰리즘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포퓰리즘적 시도는 경제위기를 초래하고 결과적으로는 빈곤층에 더 큰 영향을 주었다는 것이 역사적 교훈이다. 국민들은 어떤 공약이 포퓰리즘적인지 사전에 알기 어렵기 때문에, 정부는 정치권의 포퓰리즘적 공약을 공정하게 가려내고 국민들에게 알리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이런 취지에서 발표자는 선거 전에 정부가 재정보고서를 발간하고 선거 공약의 재정추계 결과를 검증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자고 제안하였다고 판단된다. 지난번에 정부가 정치권의 공약을 실현하는 데 소요되는 재정추계를 공표했다가 문제가 된 적이 있는데 이를 합법적으로 시행한다면 국민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재정준칙의 입법화 등을 통한 재정제도 개선

재정준칙의 도입은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는 데 큰 힘을 발휘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1년에 재정수지가 균형을 이룰 때까지는 총지출 증가율을 총수입 증가율보다 2~3% 낮게 유지한다는 한시적, 비법률적 재정준칙을 도입하였다. 그 결과 글로벌 금융위기로 악화되었던 재정수지가 개선되기 시작했다. 정부의

말대로라면 내년에는 균형재정을 이룰 것이므로 내후년부터는 재정준칙이 없어지게 된다.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이미 진입한 우리나라로서는 재정건전성의 유지와 개선이 그 어느 나라보다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재정준칙을 입법화해야 해야 한다고 본다.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재정준칙이 폐기되었을 때 재정건전성이 빠르게 악화되는 경우가 나타났다. 미국은 1990년 예산집행법(BEA)에 따라 지출상한선과 PAYGO 제도를 도입한 이후 1992년부터 재정적자가 급속히 개선되었다. 그 결과 1990년대 후반에 들어서 재정수지는 흑자로 돌아섰으며 국가채무비율은 크게 낮아졌다. 그러나 2002년에 지출상한제와 PAYGO 제도가 폐지된 이후 한동안 안정세를 유지하던 재정건전성은 2008년부터 크게 악화되기 시작했다. 재정건전성의 회복을 위해 미국은 2010년 2월에 PAYGO 원칙을 법률로 부활시켰다. 재정준칙을 입법화했을 때 따르는 문제점은 없는지, 또 어떤 유형의 재정준칙이 우리에게 가장 바람직한지에 관해서는 더 깊은 논의가 필요하지만 임시적, 비법률적 준칙보다는 항구적, 법률적 준칙이 훨씬 강력한 힘을 발휘할 것이란 점은 분명하다고 생각한다.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해결하는 데 복지지출의 초점 맞춰야



신영석

한국보건의사회연구원 부원장

본 보고서의 재정관리 필요성에는 동의하지만 내용 구성 과정 및 결과 해석에는 시각 차이가 있는 것 같다. 복지지출 장기전망을 보면, OECD 평균은 2007년, 우리나라는 2050년으로 비교 시점에 차이가 있다. 이는 2050년이 되어야 OECD 평균 수준에 도달한다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으며 그만큼 우리나라 복지수준이 낮은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다른 나라들의 경험으로 보았을 때 복지지출을 억제하지 못한 국가들이 최근 재정위기를 초래한 것을 반면교사로 삼으면서 향후 우리나라 복지정책이 어떻게 가야할지를 논의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본 보고서의 기본 논리에는 동의하나 세부적으로 복지는 어느 정도 수준까지 가능한지, 즉 중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사회지출이라는 것은 사회적 형평성 차원에서 여러 위험요인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러한 위험을 얼마나 사회적으로 담보할 것인가를 나타내는 척도이다. 앞선 나라들의 경험을 보면 소득수준이 발달하면서 이러한 사회적 위험요인의 많은 부분을 pooling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상대적으로 pooling 규모가 작은 규모이지만, 앞으로는 어떠한 수준으로 pooling할 것인지 생각해 보아야 하고, 만약 pooling 규모가 크다고 하면 소득 중에서 많은 부분을 부담한다 하더라도 위험을 이미 상위에서 보장

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소득이 줄어도 크게 문제되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복지를 어느 수준으로 할 것인가는 결국은 국민의 선택인 것 같다. 다만, 개인적으로 현재 우리는 '저부담-저복지' 수준에 있지만, 향후 어느 수준으로 가는 것이 걱정인 것인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한다. 비교적 시사점을 줄 수 있는 나라들이 영국, 미국, 흔히 영미형 국가와 추가적으로 일본 정도까지 포괄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다. 또한 보건사회연구원의 자체 연구에서 보면 현재 상태에서 2050년까지 지속가능할 수 있는 수준은 GDP 대비 3% 정도 추가 지출여력이 있는 것으로 나온다.

이에 더해, 본 보고서의 분석을 더욱 정교하게 하는 차원에서 보고서 83p.의 그림을 고령화를 반영한 사회복지지출로 다시 그려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회지출이 고령화 속도와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또한 앞서 말씀드렸듯이 영·미형을 선택한다 하더라도 부분적으로 어떠한 파트가 부족한가도 고민을 해봐야 한다. 아시다시피 연금, 즉, 노령 쪽에 해당하는 부분은 우리가 연금이 아직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에 노령화가 진행될수록 OECD 평균수준을 넘어 설 것으로 보이고, 보건부문도 지난 몇 년 간의 추세를 볼 때 시간이 지나면 OECD 평균에 근접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따라서 개인적으로 복지지출을 확대하더라도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인구 고령화·저성장 기조하에서는 비용효율적 제도 개편이 이루어져야



전영준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최근의 재정정책에서 entitlement program이 증가하였다는 점에서 전통적으로 재정건전성 평가의 지표로 이용되던 국가부채와 재정적자의 유용성이 감소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연금제도의 미성숙, 그리고 빠른 고령화 속도로 인해 이들 지표의 유용성이 제한적이라고 평가되고 있다. 현재 정부의 재정지출 수준은 OECD 주요국에 비하여 낮은 편이나 국민연금을 비롯한 복지제도와 인구의 고령화 진전과 더불어 복지급여가 증가하여 정부지출 수준이 OECD국가 평균 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현행의 재정정책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현 시점에서의 재정지출 및 수입뿐만 아니라 현행의 재정정책으로 인해 실현될 미래시점의 재정지출과 수입흐름도 평가할 필요가 있다. 이 논문은 장기재정추계를 바탕으로 현행의 재정정책을 평가하고 향후 재정운용 방향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본 연구는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먼저, 현행의 재정정책, 특히 복지정책을 유지할 경우 2030년에는 영미형 국가와 유사한 구조로, 2050년에는 남유럽형 국가와 유사한 구조로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다시 말하면 2050년경이 되면 수입에 비하여 지출이 과도하여 재정 불균형이 심화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다. 또한 복지지출 수준도 현재 수준은 OECD국가


중 낮은 수준이지만, 2050년경에는 OECD국가 평균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이러한 복지지출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복지제도가 생활보장, 소득재분배 측면에서 기능적으로 미흡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며, 향후 보편적 복지제도를 지향할 경우 이러한 경향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문제가 있다.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계층에 대해 지원을 집중하여 비용효율적인 제도와 재정운용이 필요한 점을 현행의 복지정책이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적절히 지적한 것으로 사료된다.

인구의 고령화, 저성장 기조하에서 정부 수입의 대폭적인 확대가 어려운 상황하에서는 비용효율적인 제도 개편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제한된 재원으로 지원이 필요한 계층에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지원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적은 계층에 대한 이전지출 정책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현행 제도하에서 복지제도를 통해 지원되어야 하는 target group이 적절히 선정되어 있는지, 예산의 제약하에서 각종 위험에 대비한 지원 수준이 부문별로 적절히 배분되어 있는지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재정준칙의 강화가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경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재량적 정책이 필요할 수도 있으나, 과거 불경기에 적자재정을 통해 경기진작을 위한 재정운용이 이루어진 반면, 경기회복기 흑자재정을 통해 재정건전성을 제고하는 노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하였다. 이로 인해 국가부채의 상승기조가 지속되었다. 따라서 재량적인 정책이 제대로 유지되기 어려운 점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가 의무적 지출과 재량적 지출을 구분하여 관리할 필요성을 제기한 점도 의미가 있다. 선진국의 재정지출 중 정부가 재량적으로 관리하기 어려운 entitlement program의 증가로 인해 재정운용에 어

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새로운 entitlement program 도입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건강보험재정이 향후 재정에 가장 큰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과거 공적연금의 재정건전성에 대해 많은 논의가 있었다. 최근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급여 수준이 낮아짐으로써 연금재정 안정화에 상당수준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국민연금보험료 상향 조정 및 특수직역연금 급여-보험료 구조의 개선이 필요하지만, 재정불균형의 심각성은 건강보험재정에서 더 심각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현재의 건강보험 구조하에서 의료비 증가를 억제하기 어려울 것이므로 향후 진료비 지불체계 개편, 급여체계 개편, 보험료 부가체계 개편, 건강보험재정의 기금화 등을 통한 안정적인 재정운용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주요국의 조세 · 재정동향

- EU
- OECD
- 호주
- 캐나다
- 프랑스
- 독일
- 그리스
- 아일랜드
- 이탈리아
- 일본
- 포르투갈
- 스페인
- 영국
- 미국
- 대만
- 네덜란드

* 이 자료는 한국조세연구원 재정지출분석센터에서 발간하고 있는 「재정동향」과 세법연구센터의 「주요국의 조세동향」 자료를 요약·정리한 것입니다. <편집자 주>

 EU

- EU 집행위, 단일 금융 감독기구(Single Supervisory Mechanism: SSM) 설립 계획 발표(2012. 9. 12.)¹⁾
 - 단기적인 차원에서 금융위기 확산 방지를 위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은행동맹(Banking Union)의 대략적인 내용과 추진 일정을 발표(2012. 9. 3.)²⁾
 - 은행동맹(Banking Union)은 2단계에 걸쳐 추진할 계획이며, 1단계로 단일 금융감독기구 설립 관련 입법을 제안하고 올해 말까지 완료할 예정
 - 단기적으로 도입될 수 있는 방안에 초점을 맞춘 중간보고서는 10월 정상회의에서, 최종보고서는 12월 정상회의에서 보고할 예정
 - (배경) 유럽연합 내 상호 의존성 증가로 개별 은행 문제의 파급효과(spill-over effects)가 확대되어 문제 해결의 한계점이 존재
 - 유럽통화동맹(EMU)의 성공적인 달성을 위해 현재의 위기 극복과 성장 회복, 역대 불균형 해소 등을 위한 조치가 필요
 - (구조) ECB는 유로존의 모든 금융기관에 대한 최종적인 진전성 감독 책임과 권한을 보유, 회원국의 감독당국은 ECB에 부여되지 않은 감독업무를 수행
 - (감독대상) 2014년까지 유로존 내 총 6천개 은행에 대한 관리와 감독 권한 부여
 - 단, 단계적인 적용 기간(phasing-in period)을 두고 적용
 - (감독권한) 내년 1월부터 구제금융을 받거나 요청한

금융기관, 7월부터 대형은행, 2014년 1월부터는 모든 은행까지 순차적으로 늘릴 예정

- 유럽중앙은행(ECB), 유로존의 무제한 국채 매입프로그램 ‘OMT(Outright Monetary Transaction)’ 발표(2012. 9. 6.)³⁾
 - ECB는 지난 6일 통화정책회의를 통해 스페인, 이탈리아 등 재정적 위기를 겪고 있는 국가를 대상으로 유통시장에서 무제한 국채 매입프로그램을 발표
 - (목적) 적절한 통화정책 파급 경로를 보호하고 통화정책의 단일성을 확보, 위기 확산을 효과적으로 저지하기 위함
 - (조건부 시행) 국채 매입을 원하는 국가들은 먼저 유럽안정메커니즘(ESM) 등에 구제 금융을 요청하고 긴축과 구조개혁 요구를 수용해야 하는 전제조건이 존재⁴⁾
 - (지원범위) 매입 대상은 1~3년 만기(잔여만기 포함) 국채, 규모는 무제한
 - (채권자 대우) 유로지역 국가에 의해 발행되고 OMT를 통해 유로시스템이 매입한 채권에 대해, 민간 채권자 및 여타 채권자 간 동등한 대우(pari passu)를 인정
 - (투명성) OMT의 보유 총액 및 시장 가치는 주간 단위로 공개, OMT를 통해 보유한 평균 듀레이션은 국가별로 구분하며 월간 단위로 공개
 - (불태화) 무제한 국채매입을 통해 과도한 유동성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유발을 방지하기 위해 불태화정

1) European Commission, "Commission proposes new ECB powers for banking supervision as part of a banking union," 2012. 9. 12.

European Commission, "Commission proposes a package for banking supervision in the Eurozone," 2012. 9. 12.

2) European Commission, "Towards a genuine economic and monetary union", 2012. 9. 3.

3) ECB, "Technical features of Outright Monetary Transactions," 2012. 9. 6.

4) 개별 국가에 맞게 설정하고 감시하는 역할로 IMF의 개입을 모색할 수 있음



책⁵⁾(sterilization)을 동시에 시행할 예정

- (한계) 주요 외신은 ECB의 자산투자 손실과 지원대상국의 긴축 및 구조개혁 유인, 유로존 통합 강화 유인 등이 감소한다는 점에 대해 우려하고 있음

〈표 1〉 ECB의 국채 매입 프로그램 비교¹⁾

	SMP(Securities Market Programme)	OMT(Outright Monetary Transaction)
도입 시기	2010년 5월	2012년 9월
신청 절차	국채 금리가 연 7%로 급등 시 ECB가 자체 판단	자금 지원 필요 시 EFSF나 ESM에 요청
매입 대상	장립 · 단기 국채	단기 국채(1~3년물) 및 3년 이내 만기가 돌아오는 장기 국채
매입 방식	유통시장	ECB는 유통시장에서, EFSF와 ESM은 발행시장에서 국채 매입
규모	제한적	무제한
기간	한시적으로 국채 매입	목적 달성 때까지 지속, 단, 긴축 등 전제조건 불이행 시 중단

주: 1) OMT 시행을 결정함과 동시에 SMP는 종료되며, SMP를 통해 공급된 유동성은 지속적으로 흡수, 기존의 자산은 만기까지 보유함

■ 유럽통계청(Eurostat), 2분기 GDP 발표(2012. 9. 6.)⁶⁾

- 유로존(EA17)의 2분기 GDP는 1분기 대비 0.2%, EU 27개국은 0.1% 수치를 기록, 전년동기 대비 유로존(EA17)은 -0.5%, EU 27개국은 -0.3%를 기록
- 재정긴축, 실업률 상승, 유로존에 대한 불확실성이 경제성장률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
- 1분기 대비 벨기에에 -0.6%, 스페인 -0.4%, 포르투갈 -1.2%, 핀란드 -1.1% 등 대부분의 유럽 국가에서 전반적으로 하락한 수치를 기록

〈표 2〉 Quarterly growth rates of GDP in volume

(단위: %)

국 가	전분기 대비				전년동기 대비			
	2011		2012		2011		2012	
	Q3	Q4	Q1	Q2	Q3	Q4	Q1	Q2
벨 기 예	0.0	-0.1	0.2	-0.6	1.4	0.9	0.4	-0.4
독 일	0.4	-0.1	0.5	0.3	2.7	1.9	1.2	1.0
에스토니아	1.4	0.1	0.3	0.4	8.1	5.1	3.7	2.5
아일랜드	-1.1	0.7	-1.1	-	0.8	2.9	1.4	-
그리스 ¹⁾	-	-	-	-	-5.0	-7.5	-6.5	-6.2
스페인	0.0	-0.5	-0.3	-0.4	0.6	0.0	-0.6	-1.3
프랑스	0.3	0.0	0.0	0.0	1.5	1.2	0.3	0.3
이탈리아	-0.2	-0.7	-0.8	-0.7	0.4	-0.5	-1.4	-2.5
키프로스	-1.0	-0.2	-0.4	-0.8	-0.3	-0.7	-1.5	-2.4
룩셈부르크	1.7	0.1	-1.5	-	2.5	1.0	0.0	-
말타	0.2	-0.7	-0.1	-	2.2	0.1	-0.4	-
네덜란드 ²⁾	-0.3	-0.6	0.2	0.2	0.9	-0.4	-1.0	-0.5
오스트리아 ³⁾	0.0	0.2	0.5	0.2	2.1	1.1	1.1	1.0
포르투갈	-0.6	-1.4	-0.1	-1.2	-2.0	-3.0	-2.3	-3.3
슬로베니아	-0.2	-1.1	0.0	-1.0	1.0	-1.0	-0.7	-2.2
슬로바키아	0.7	0.8	0.7	0.7	3.2	3.3	3.1	3.0
핀란드	1.0	-0.7	0.9	-1.1	3.7	0.8	1.8	0.1
EA 17	0.1	-0.3	0.0	-0.2	1.3	0.6	0.0	-0.5
불가리아	0.1	0.1	0.0	0.3	1.4	0.9	0.5	0.5
체코	0.0	-0.2	-0.8	-0.2	1.3	0.6	-0.7	-1.2
덴마크	-0.3	-0.3	0.3	-0.5	-0.2	0.1	0.3	-0.9
라트비아	1.4	0.9	1.0	1.0	5.8	5.7	5.4	4.3
리투아니아	1.2	0.8	0.3	0.5	6.7	5.2	3.9	2.8
헝가리	0.0	0.1	-1.0	-0.2	1.3	1.2	-1.2	-1.0
폴란드	0.7	0.8	0.6	0.4	4.0	4.0	3.5	2.5
루마니아	1.1	-0.1	0.1	0.5	3.2	2.2	1.2	1.7
스웨덴	0.8	-0.9	0.9	1.4	3.9	1.2	1.6	2.2
영국	0.6	-0.4	-0.3	-0.5	0.5	0.6	-0.2	-0.5
EU 27	0.2	-0.3	0.0	-0.1	1.4	0.7	0.1	-0.3

주: 1) Percentage change compared to the same quarter of the previous year calculated from non-seasonally adjusted data. For Greece, more information can be found on the web-site of the Greek Statistical Office.
 2) Percentage change compared to the same quarter of the previous year calculated from working-day adjusted data.
 3) Growth rates for Austria are calculated using the trend component.

5) 중앙은행이 물가상승 우려를 감안해 시중에 풀었던 유동성을 다시 흡수하는 정책을 의미함

6) EU (<http://europa.eu/rapid/pressReleasesAction.do?reference=STAT/12/127&format=HTML&aged>)

- EU 통계청, 7월 인플레이션율과 실업률 발표⁷⁾
 - 유로존 17개국의 7월 인플레이션율은 연 2.4%, EU 27개국은 연 2.5%로 6월과 동일한 수치를 기록함 (2012. 8. 16.)
 - 그리스 0.9%, 아일랜드 2.0%, 스페인과 프랑스 각 2.2% 등 기록함
 - 그러나 유럽중앙은행(ECB) 안정 목표치인 2.0%를 여전히 상회하고 있음

- 유로존 17개국의 7월 실업률(계절조정)은 11.3%, EU 27개국은 10.4%로 전분기 대비 동일한 수준을 기록함(2012. 8. 31.)
 - 네덜란드 5.3%, 독일과 룩셈부르크는 각각 5.5%로 낮은 수치를 보인 반면, 스페인 25.1%, 그리스 23.1%⁸⁾로 높은 실업률을 기록



〈표 3〉 인플레이션율

(단위: %)

Country	Annual rates				
	2011.7	'12.7	'12.6	'12.5	'12.4
Belgium	4.0	2.0	2.2	2.6	2.9
Germany	2.6	1.9	2.0	2.2	2.2
Estonia	5.3	4.1	4.4	4.1	4.3
Ireland	1.0	2.0	1.9	1.9	1.9
Greece	2.1	0.9	1.0	0.9	1.5
Spain	3.0	2.2	1.8	1.9	2.0
France	2.1	2.2	2.3	2.3	2.4
Italy	2.1	3.6	3.6	3.5	3.7
Cyprus	3.5	3.8	2.9	3.7	3.6
Luxembourg	3.2	2.7	2.6	2.7	3.0
Malta	2.4	4.2	4.4	3.7	3.8
Netherlands	3.2	2.6p	2.5	2.5	2.8
Austria	3.8	2.1p	2.2	2.2	2.3
Portugal	3.0	2.8	2.7	2.7	2.9
Slovenia	1.1	2.6	2.4	2.4	2.9
Slovakia	3.8	3.8	3.7	3.4	3.7
Finland	3.7	3.1	2.9	3.1	3.0
Euro area	2.6	2.4p	2.4	2.4	2.6
EU	2.9	2.5p	2.5r	2.5	2.7

자료: Eurostat, p=provisional, r=revised

- *Interim Outlook*⁹⁾ 발표(2012. 9. 6.)
 - 유로지역에서의 지속적인 불경기의 영향으로 하반기 경제성장도 전반적으로 약화(weak)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
 - 무역과 신뢰성 측면에서의 유로지역의 경제위기는 OECD 지역 안팎의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
 - 지속적인 재무조정과 소비자들의 신뢰도 하락으로 가계 수요가 약화되었고 기업 투자도 감소하고 있음. 이러한 경제약화는 유로지역에서 중심국가(core)로 확산
 - 유로지역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세계 경제에 대한 가장 중요한 위험요소인 통화동맹(monetary union)에 대한 보다 나은 신뢰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7) 유럽통계청 홈페이지 (<http://ec.europa.eu/eurostat>)

8) 그리스 실업률은 5월에 발표한 수치임

9) OECD는 2003년 3월 이래 *Economic Outlook*이 발표되기 전 단기 전망에 대한 약식발표를 하고 있음.

핸드아웃 원문: <http://www.oecd.org/eco/economicoutlookanalysisandforecasts/Interimassessment6September2012.pdf>



〈표 4〉 G7 국가들의 GDP 성장 및 전망치

(단위: 전분기 대비 성장률의 연율화, %)

	Year 2011	Year 2012	'11Q2	'11Q3	'11Q4	'12Q1	'12Q2	'12Q3	'12Q4
미국	1.8	2.3	2.5	1.3	4.1	2.0	1.7	2.0	2.4
일본	-0.8	2.2	-1.9	7.4	0.3	5.5	1.4	-2.3	0.0
유로3개국 ²⁾	2.0	-0.2	1.2	0.8	-1.0	0.1	-0.3	-1.0	-0.7
독일	3.1	0.8	1.8	1.5	-0.6	2.0	1.1	-0.5	-0.8
프랑스	1.7	0.1	0.2	1.1	0.0	0.1	-0.2	-0.4	0.2
이탈리아	0.5	-2.4	1.4	-0.9	-2.9	-3.3	-2.9	-2.9	-1.4
영국	0.8	-[0.7] ³⁾	-0.4	2.4	-1.4	-1.3	-1.8	-[0.7] ³⁾	0.2
캐나다	2.4	1.9	-1.0	4.5	1.9	1.8	1.8	1.3	1.9
G7	1.4	1.4	1.1	2.3	1.7	1.8	0.9	0.3	1.1

주: 1) 2012년 9월 4일까지 발표된 자료 중 사용빈도가 높은 지표 및 GDP 공식 자료 이용. 계절조정(seasonally adjusted)을 하였고 경우에 따라 실노동일 조정(working day adjusted)을 거침

2)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의 가중평균

3) 영국의 예측치는 6월 Diamond Jubilee 공휴일로 인해 2사분기에서 3사분기의 변화분을 반영하지 않음. 또한 올림픽의 영향도 반영하지 못함

출처: OECD, "An Interim Assessment"

- 경제성장의 약화는 노동시장에 있어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
 - 모든 국가에서, 특히 유로지역 국가에서 고용률 제고, 임금조정, 실업률 고착화에 대한 위험 감소를 위해 노동시장개혁(labour market reform)이 필요
 - 일자리 창출에 대한 잠재력이 있는 부문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제품시장개혁(product market reform)은 비교적 빠르게 노동시장성장을 개선시킬 수도 있음
- 몇몇 재정정책은 국가경제를 위험에 노출시키고 있음
 - 중·장기 전망에 대한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몇몇 국가에서 재정건전화에 단기 경제활동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음. 따라서 보다 나은 재정건전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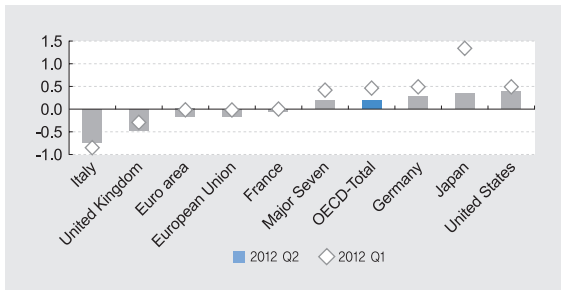
노력이 필요

- 유로지역 국가들은 공식적인 적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지속적인 재정건전화 계획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유로 안정화를 약화시키는 부정적인 연결고리(adverse feedback loop)를 막기 위해 세 가지 조치가 필요
 - 광범위한 공적자금(public funds)과 공동감독하에 부실채권에 대한 완전한 인식, 예금보증제도(deposit guarantees)와 공통적 은행정리조치(common bank resolution regime)를 포함한 은행동맹(banking union)
 - 유럽국채은행(ECB)이 금리 스프레드가 경제기초 여건에 합당한 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채권시장에 개입함으로써 유로지역 탈퇴에 대한 우려를 막는 것
 - 시장정책은 유용한 규율장치이지만 국가부채가 높을 때는 불안정을 야기할 수 있음을 인지

- OECD 2사분기 실질GDP 성장률 발표(2012. 8. 27.)
 - OECD 회원국의 전체적인 GDP 성장률이 전 분기 0.5%에서 0.2%로 감소
 - 일본은 전 분기 1.3%에서 0.3%로 큰 폭으로 하락하였고 미국과 프랑스는 전 분기와 비슷한 수준 기록
 - 유로존 국가들과 유럽연합 회원국들은 전 분기 0%대에서 마이너스(-) 성장률로 돌아섰고 이탈리아와 영국은 전 분기와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성장률 기록

[그림 1] 실질 GDP 성장률

(단위: %)



주: GDP 성장률은 전 분기 대비 성장률이며 계절조정을 거침
 자료: OECD Quarterly National Accounts-Quarterly Growth Rates of real GDP, change over previous quarter
 (http://stats.oecd.org/index.aspx?queryid=350)

호주

- 호주 기후변화 및 에너지효율부¹⁰⁾ 장관인 그렉 콤베 이는 호주와 유럽연합의 탄소배출제 연동을 발표함 (2012. 8. 28)
- 호주 정부는 톤당 23달러의 탄소배출 거래가격제를 중단하고 유럽연합과 연계할 방침을 발표하였으며, 늦어도 2018년 7월부터 시행될 것이라 밝힘
 - 첫 번째 변화로 최저가격제도(the price floor)를 도입하지 않음으로서, 2015년부터 탄소가격 하한선이 사라짐
 - 두 번째 변화로 호주의 탄소배출 기업이 국제거래를 통해 배출 허용량의 최고 50%까지 유럽에서 구입할 수 있게 됨¹¹⁾

10) Department of Climate Change and Energy Efficiency (http://www.climatechange.gov.au)

11) 그 동안 호주 기업들이 국제 탄소배출 허용권(carbon permits)에 접근할 수 있는 범위는 기업 총배출 허용량의 12.5%였음

12) 캐나다 정부는 2011년 12월, 보건시스템의 접근성 및 지속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방정부에 대한 보건이전지출(Canada Health Transfer)을 FY2018-19까지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수립

13) Department of Finance Canada Quarterly Financial Report for the Quarter Ended June 30, 2012(UNAUDITED): 재정관리법(Financial Administration Act)에 의해 각 분기(1/4분기 제외)마다 발표되는 보고서로, 의회로부터 부처가 승인받은 지출 규모와 이에 대한 지출 진행 상황을 보고한다.

캐나다

- 캐나다 재무부, 2012년 2/4분기 「FISCAL MONITOR」 발표(2012. 8. 31.)
 - 2012년 2/4분기 재정적자는 소득세 수입 증가로 전년동기 대비 약 23억캐나다달러 감소한 20억캐나다달러
 - (수입) 개인소득세 및 법인소득세 수입 증가 등으로 전년동기 대비 28억캐나다달러 증가
 - (프로그램지출) 보건이전지출¹²⁾ 등 이전지출 증가로 전년동기 대비 10억캐나다달러 증가

<표 5> 캐나다 2012년 6월 「Fiscal Monitor」 주요 결과

(단위: 백만캐나다달러)

		2011년 2/4분기	2012년 2/4분기
수입 (Revenues)		59,837	62,678
지출 (Expenses)	프로그램지출(Program expenses)	-55,822	-56,827
	공공채무비용(Public debt charges) ¹⁾	-8,259	-7,829
재정수지 (Budgetary balance)		-4,244	-1,978

주: 1) 공공채무비용은 시장채무비용, 비시장성부채에 대한 이자지출 등을 포함
 출처: 캐나다 재무부, 「The Fiscal Monitor」, June 2012.

- FY2012-13 1분기(2012년 2/4분기) 세출예산 집행결과 보고서¹³⁾ 발표(2012. 8. 31.)
 - 캐나다 재무부는 FY2012-13 1분기 세출예산 집행결과를 발표하고, 회계연도 말까지 지출 가능한 잔액(authorities available for use)을 보고함



〈표 6〉 FY2012-13 1분기 세출예산 집행결과 및 지출가능 잔액

(단위: 만캐나다달러)

	FY2012-13		FY2011-12	
	회계연도 내 지출가능 잔액	1분기 지출	회계연도 내 지출가능 잔액	1분기 지출
총 일반예산 (Total budgetary authorities)	85,398,406	21,592,074	85,636,776	21,418,614
총 투·융자예산 ¹⁾ (Total non-budgetary authorities)	20,611	16,655,878	20,611	16,337,495

주: 1) 투·융자 예산은 융자, 투자 및 선금으로 구성
 자료: 캐나다 재무부, FY2012-13 1분기 세출예산 집행결과 보고서, Statement of Authorities 재구성

■ 민간부문 경제전망치 조사 결과 발표(2012. 8.)

- 캐나다 재무부는 민간부문의 경제 전문가를 대상으로 조사한 향후 5년간의 경제전망치를 발표¹⁴⁾
 - (실질GDP 성장률) 2013년 실질GDP 성장률은 2.2%로 전망되어, 2011년 12월 전망치보다 낮게 전망한 2012년 3월 전망치보다도 0.1%p 낮은 수준
 - (실업률)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의 실업률 모두 3월에 전망한 수치보다 낮은 수치를 전망
 - (물가상승률) 2013년 물가상승률은 3월에 전망한 2%보다 0.1%p 높은 수치 전망

〈표 7〉 민간 경제 전문가 대상 경제전망치 서베이 결과

(단위: %)

		2012	2013	2014	2015	2016
실질GDP성장률 (Real GDP Growth)	2011년 12월	2.0	2.5	2.5	2.4	2.3
	2012년 3월	2.1	2.4	2.4	2.4	2.2
	2012년 6월	2.1	2.2	2.4	2.4	2.2
실업률 (Unemp. Rate)	2011년 12월	7.4	7.1	6.8	6.7	6.5
	2012년 3월	7.5	7.2	6.9	6.7	6.6
	2012년 6월	7.3	7.1	6.8	6.6	6.5
물가상승률 (CPI Inflation)	2011년 12월	2.1	2.0	2.0	2.0	2.0
	2012년 3월	2.1	2.0	2.0	2.0	2.0
	2012년 6월	2.0	2.1	2.0	2.0	2.0

프랑스

- 재무부, 2013년 예산 및 주요 재정정책 대한 가이드 라인 발표(2012. 9. 12)¹⁵⁾
 - 2013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2%에서 0.8%로 하향 조정
 - 2013년 300억유로(약 43조원) 규모의 예산 감축을 단행하며, 2017년 재정수지 균형 달성을 위해, 2013년 GDP 대비 재정적자 비중을 3%로 감소시킬 계획(2012년 4.5%)
 - 200억유로 이상의 가계 및 기업에 대한 증세와 함께 100억유로의 정부지출감축 실시
 - 대기업에 대해 대출이자 공제를 제한하고, 법인세율을 35%까지 인상
 - 연 100만유로 이상 고소득자에게 부과하기로 한 75% 소득세율 적용을 재확인
 -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등 고용상황 개선에 주력

14) 캐나다 재무부는 민간 경제 전문가를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경제전망치를 조사하여, 수집된 전망치의 평균값을 발표한다. 최근에는 2012년 3월, 2011년 12월 등에 실시하였으며, 이러한 전망치는 매년 2~3월에 발표되는 예산안이나 기일에 발표되는 경제 및 재정전망 업데이트 보고서에 활용된다.

15) 출처: 프랑스 정부 포탈, 2012. 9. 12, (<http://www.gouvernement.fr/>)

- 정부 산하부문 8만개 일자리와 교육부문 6만개 일 자리를 창출하며, 특히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기업들에게 '연령별 계약(generation contract)¹⁶⁾을 적용

• 예산안은 9월 28일경 발표될 예정

■ 교육수당 증액 및 교사충원 결정(2012. 8. 20)¹⁷⁾

• 뤼이용(PEILLON) 교육장관과 투렌느(TOURAINE) 사회보장장관은 교육수당 25% 증액 및 교사 1천여명 충원에 합의

- 이번조치로 500만명의 학생들이 증액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3억 7,200만유로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됨

• 교육수당(ARS:Allocation de rentree scolaire)은 가족수당기금(CAF)에서 지출되며, 학교를 다니는 자녀(6~18세)를 가진 재정적인 형편이 어려운 가정에 지급됨¹⁸⁾

〈표 8〉 교육수당 증액 내역

(단위: 유로)

구분	2012	2013
6~10세	284.97	356.20
11~14세	300.06	375.85
15~18세	311.11	388.87

자료: French civil service's official

■ 노동부, 고용촉진 프로그램인 “미래를 위한 계약(Contracts for the Future)” 발표(2012. 8. 29)¹⁹⁾

• 현재 프랑스의 실업률은 10.1%로 유로존 평균인 11.2%보다는 낮은 수준이지만 25세 이하 청년층의 실업률은 22.8%로 심각한 상태

• 2014년까지 15만명의 청년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목표이며, 2013년 예산으로 23억유로(약 3조 3천억원)를 배정할 계획

- 정부는 고졸 학력 이하의 저소득층 청년(16~25세)을 고용하는 공기업, 비영리재단, 민간기업에 최저임금의 75%까지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

- 2013년에 10만개, 2014년에 5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추정

• 내각의 승인은 이미 이루어졌으며, 9월 10일 국회에 관련 법안을 제출할 계획

■ 재무부, 유류세 인하 결정(2012. 8. 28)²⁰⁾

• 유가 동결은 올란드(Hollande)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였으나, 수단 등 주요 수입원으로부터의 원유 공급이 차질을 빚으면서 연료 가격이 오름세를 보임

- 28일 기준 휘발유 평균 가격이 리터당 1.70유로(2,420원)에 이름

• 재무장관은 정유업체 3사와의 합의를 거쳐, 차량용 연료 가격을 리터당 최대 6유로센트(85원) 인하하기로 결정

- 휘발유와 디젤 가격을 국가 세금에서 3유로센트(43원), 정유사들이 1~3유로센트(14~43원)씩 각각 내리기로 결정함

16) 고졸 학력 이하의 저소득층 청년(16~25세)을 고용하는 공기업, 비영리 재단, 민간 기업에 최저임금의 75%까지 보조금을 지급

17) 프랑스 정부 포탈 (<http://www.gouvernement.fr/>)

18) French civil service's official (<http://www.service-public.fr/>)

19) 노동부 (<http://www.travail-emploi.gouv.fr/>)

20) 프랑스 정부 포탈 (<http://www.gouvernement.fr/>)



- 연료값 인하 조치는 29일부터 3개월간 시행되며, 이 조치로 프랑스 정부는 3억유로(4,270억원)의 세수를 잃게 될 것으로 예상됨²¹⁾

독일

- 독일 헌법재판소, 신재정협약 비준 및 유럽안정메커니즘(ESM) 설립 집행 정지 가치분 신청²²⁾ 기각 판결(2012. 9. 12)²³⁾
 - 안드레아 포스쿨레(Andreas Voßkuhle) 독일 헌법재판소장은 6일 발표한 결정문에서 “헌법재판관들이 ESM과 신재정협약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힘
 - 최종 위헌 여부는 2013년 1월 판결 예정
 - 메르켈 총리는 현재의 판결에 대해 독일과 유럽을 위해 좋은 신호라고 환영하였고, 반대파들은 독일이 채무동맹으로 가고 있다고 비난
 - 다만, 독일 현재는 독일의 분담금을 1,900억유로로 제한하고, 보증한도 규모를 상향조정 시 연방하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조건을 제시
 - 독일 현재 판결에 따라 장-클로드 융커(Jean Claude Juncker) 유로그룹의장은 성명을 내고 10월 8일 룩셈부르크에서 첫 ESM 이사회를 열기로 결정했다고 발표

그리스

- 그리스 재무부는 세수확대를 위해 탈세 조사 착수
 - 그리스 재무부 산하의 금융·경제범죄 단속부(S.D.O.E: Financial and Economic Crime Unit)는 탈세와 연루된 개인과 법인 121명의 은행계좌, 주식, 부동산 등 자산 동결(2012. 9. 6.)
 - 압수 자산은 아테네 및 뉴욕 주식시장에 상장된 주식과 고가 부동산을 포함하고 있으며, 압류한 계좌에서 수천만유로와 외국통화를 찾아냄
 - 금융·경제범죄 단속부(S.D.O.E), 개인 탈세에 긴급 감사 조치(2012. 9. 7.)
 - 2009년부터 2012년까지 기간 동안 해외 송금한 한 5만 4천명을 대상으로 조사할 예정이며, 총 금액은 22억유로 상당
 - 100만유로 이상을 송금한 3천명을 우선적으로 감사
 - 계좌를 동결하는 경우, 높은 벌금 부과 및 미신고액에 대한 세금을 부과
- 그리스 재무부는 독일에 제2차 세계대전 배상금 요구를 목적으로 GAO(General Accounting Office) 실무조직 설립(2012. 9. 10.)
 - 그리스 정부는 나치 학대에 따른 손해 보상금을 추가로 요구할 계획이며, 2012년 12월 말까지 피해 배상액 산정과 보상 요구 근거 등을 마련할 예정
 - 그리스는 독일로부터 배상금 약 410억달러를 받은 바 있음

21) Le Monde, 2012. 8. 29.

22) 지난 6월 좌파당, 시민연대, 기독교사회당(CSU) 페터 가우바일러(Gauweiler) 의원은 약 3만 7천명(9월 4일 기준)의 시민과 연계해 독일 헌법재판소에 헌법 소원을 제출

23) 독일 연방정부 홈페이지(<http://www.bundesregierung.de/>), 주 독일 대한민국 대사관(<http://deu.mofat.go.kr/>).

- 유럽투자은행(EIB)으로부터 7억 5천만유로의 자금 조달(2012. 9. 14)²⁴⁾
 - 에너지, 교육, 수송 및 중소기업 분야의 지원을 포함하며, 이를 통해 시장에 유동성 공급 효과 기대
 - 특히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4억 4천만유로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

아일랜드

- IMF는 아일랜드와의 확대협약²⁵⁾에 따른 7차 검토(Seventh Review Under the Extended Arrangement) 완료(2012. 9. 5)
 - 불리한 세계 경제전망과 지속적인 유로 지역의 위기에 불구하고, 아일랜드 정부는 경제 프로그램을 잘 시행하여 확대협약의 7차 검토에서 규정한 2012년 6월말까지의 성과 기준과 목표를 달성했다고 결론
 - 확대협약에서 규정한 2012년 6월말까지 기초재정수지(primary balance)의 목표치는 GDP 대비 -9.6%였으며 아일랜드는 GDP 대비 -8.7%를 달성
 - 확대협약에서 규정한 2012년 6월말까지 중앙정부 채무한도는 1,301억유로였으며 아일랜드는 1,282억유로의 채무를 보유
 - 7차 검토로 IMF로부터 9억 2억천만유로의 지출이 승인됨
- IMF, 「아일랜드에 대한 경제 정책 자문결과」 발표(“Conclusion of the 2012 Article IV Consultation with Ireland,” 2012. 9. 10.)
 - (금융) 아일랜드정부의 주요 정책 목표는 구조적인 개혁을 구현함으로써 경제활동과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며 견고한 기반 위에 공공재정과 경제 회복을 지원할 수 있도록 은행시스템(banking system)을 복구하는 것
 - 아일랜드는 은행시스템(banking system)을 재구성하고 자본을 확충하여 은행시스템의 자본비율(capital ratios)을 복원하고 예금을 안정화하는데 성공하였다고 평가
 -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수익여신(NPL: Non Performing Loan)²⁶⁾이 높은 수준에 이르렀으며 은행수익성(bank profitability)도 약하다고 봄
 - (재정정책) 2009~2012년 동안 예산 조치(budget measures)를 통해 구조적인 기초 재정적자(structural primary deficit)가 GDP 대비 8%로 줄어 들면서 재정건전화는 EU-IMF의 구제금융지원 프로그램하에 잘 진행되고 있다고 평가
 - 2012년에 재정은 재정적자 목표인 GDP 대비 8.6%를 향해 잘 진행되고 있다고 평가하였으며 2015년까지 재정적자를 GDP 대비 3% 이하로 줄이기 위한 중기 재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을 언급
 - (경제정책) 2012년 성장률이 예상보다 부진하고 실업률은 15%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 2012년에 무역상대국의 성장이 약화됨으로서 아일랜드의 성장은 0.4% 정도 둔화, 2013년에 국내 수요와 수출 회복 속도가 느려져서 성장이 1.4% 정도 완화될 것으로 전망

24) Press Release, Ministry of Finance, 2012. 9. 14

25) 확대협약은 2010년 12월 16일에 3년간 IMF의 특별인출권(Special Drawing Rights)으로 235.5억유로를 인출할 수 있도록 확대신용차관(Extended Fund Facility: EFF)을 체결한 것임

26) 부실대출금과 부실지급보증금을 합친 개념으로 금융기관이 빌려준 돈을 회수할 가능성이 없거나 어렵게 된 부실채권을 의미한다.



- 높은 수준의 실업률을 감소하는 것이 중요하며 지속적인 경제 회복을 촉진하기 위해 강도 높은 추가 정책 활동이 필요하다고 언급

■ 아일랜드 국채관리기구(National Treasury Management Agency)는 처음으로 분할상환채권(Amortising Bonds²⁷)을 국채 시장에 판매(2012. 8. 23)

• 채권은 만기 15년에서 35년까지 범위를 가지며, 5.91%의 평균 수익률에 10억유로를 판매

• 정부의 재원 마련을 위해 국채시장으로 복귀한 또 다른 중요한 진전

• 분할상환채권(Amortising Bonds)은 연금 산업의 요구를 충족하도록 설계됨

- 분할상환채권(Amortising Bonds)은 연금 기금에 안정적인 수익을 제공하고 연금 펀드의 적자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임

- 국채관리기구(National Treasury Management Agency)는 연금기금 재단이 2012년 6월 7일에 연금위원회에 의해 발표된 기금 기준에 따라 자신의 재원 마련 계획을 완료하면 분할상환채권(Amortising Bonds)을 추가 발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이탈리아

■ 이탈리아 재무부, 2012년 1월부터 7월까지 세입 모니

터링 결과보고서를 발표함(2012. 9. 12.)²⁸⁾

• 2012년 1월~7월, 이탈리아 전체 세입(Totale Entrate tributarie)은 2,401억 900만유로로 2011년 2,292억 3,200만유로보다 4.7% 증가하였고, 지방자치단체(Enti territoriali) 세입은 214억 6,600만유로로 전년동기 대비 7.2% 증가하였음

- 2012년 예산(Bilancio Stato) 세입은 2,320억 200만유로로 전년동기 대비 4.7% 증가하였고, 예산 세입 증가의 세목으로 인지세, 개별소비세(에너지 관련 세금), 증권 및 금융소득세 등이 있음²⁹⁾

〈표 9〉 세입 현황

(단위: 백만유로, %)

	2011	2012	증가율
Totale(전체세입)	229,232	240,109	4.7
Bilancio Stato(예산)	221,643	232,002	4.7
Ruoli (incassi)	4,045	3,966	-2.0
Enti territoriali(지방자치단체)	20,029	21,466	7.2

주: 2011년 1~7월, 2012년 1~7월 각각의 세수입 현황임
출처: "MONITORAGGIO ENTRATE TRIBUTARIE E CONTRIBUTIVE-QUADRO GENERALE," 이탈리아 재무부, 2012.9.12.

일본

■ FY2012 「제1사분기 예산사용 상황³⁰⁾의 개요」 발표(2012. 9. 7)

• FY 2012 제1사분기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액 대비 수입 비율은 2.1%, 이번년도 사용가능한 금액 대비 지출 비율은 20.9%

27) 분할상환채권(Amortizing Bonds)은 채권 액면가의 정기적인 분할 상환 스케줄이 발행할 때에 정해져 있는 채권

28) 참고: 이탈리아 재무부, http://www.rgs.mef.gov.it/_Documenti/VERSIONE-I/Monitoragg1/2012-07/Rapport_o_n_7-2012.pdf

29) 인지세 전년동기 대비 158.1%, 개별소비세(에너지 관련 세금) 전년 동기대비 117.4%, 증권 및 금융 소득세 전년동기 대비 44% 증가함

30) '예산사용 상황'은 재정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근거한 국회 및 국민에 대한 보고로서, 일반회계의 세목별 조세 등의 수납상황 및 소관, 조직, 항목별 지출 상황과 특별회계 지출상황에 대해서 각 부처 등으로부터의 매월 보고에 의해 재무성에서 분기마다 집계한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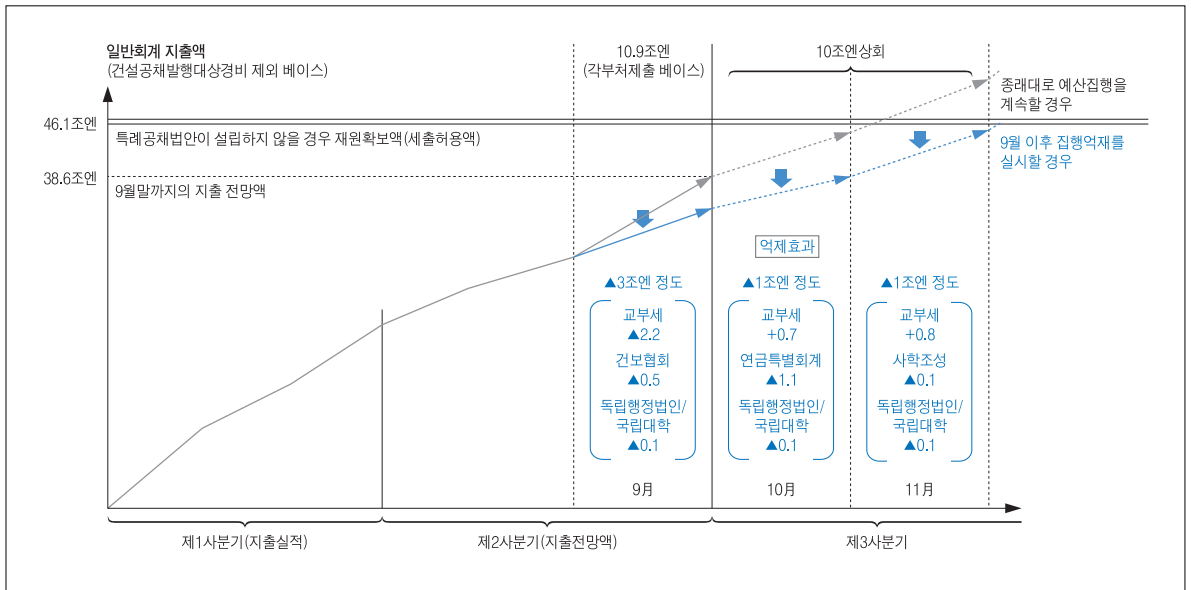
〈표 10〉 FY2012 제1사분기 예산사용 상황의 개요

(단위: 억엔, %)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		세출		세입		세출	
세입예산액(A)	903,339	이번년도에 사용가능한 금액(D)	973,907	세입예산액(A)	4,083,946	이번년도에 사용가능한 금액(D)	4,083,882
제1사분기 국가에 수납된 금액(B)	19,386	제1사분기에 국가에서 지출된 금액(E)	203,689	제1사분기 국가에 수납된 금액(B)	1,327,390	제1사분기에 국가에서 지출된 금액(E)	1,303,548
세입예산액 대비 수입 비율(B/A)	(전년동기 3.3%) 2.1	이번년도 사용가능한 금액 대비 지출비율(E/D)	(전년동기 22.7%) 20.9	세입예산액 대비 수입 비율(B/A)	(전년동기 35.0%) 32.5	이번년도 사용가능한 금액 대비 지출비율(E/D)	(전년동기 31.6%) 31.9
제1사분기까지 누계(C)	19,386	제1사분기까지 누계(F)	203,689	제1사분기까지 누계(C)	1,327,390	제1사분기까지 누계(F)	1,303,548
세입예산액 대비 비율(C/A)	(전년동기 3.3%) 2.1	이번년도 사용가능한 금액 대비 지출비율(F/D)	(전년동기 22.7%) 20.9	세입예산액 대비 비율(C/A)	(전년동기 35.0%) 32.5	이번년도 사용가능한 금액 대비 지출비율(F/D)	(전년동기 31.6%) 31.9

출처: 일본 재무성, FY2012 「제1사분기 예산사용 상황의 개요」

〈그림 2〉 이번 예산집행 억제 효과



주: 1. 현시점 전망으로 계수의 변동이 있을 수 있음
 2. '총래대로 예산집행을 계속할 경우'에 대해서는 연도 당초부터 실시하고 있는 치밀한 집행관리(일반회계로부터 특별회계에의 이월시기 연기 등)의 효과를 포함하고 있음
 3. '9월 이후 집행억제를 실시할 경우'에 대해서는 11월분 교부세를 취급하는 것이 향후 검토될 예정이지만, 이번 같은 억제를 계속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전망하고 있음
 (9월 교부세 억제효과에는 도부현분 보통교부세 교부억제(△1.4조엔)외에 교부세 특별회계의 이월 조기실시 증지(△0.7조엔)를 포함함)

출처: 일본 재무성, '이번 예산집행 억제 효과'



- 예산집행 억제 방침 발표(2012. 9. 7)
 - 국회 회기말을 앞둔 시점 특례공채법안이 통과가 어려워짐에 따라 일반회계 재원고갈이 우려되어, 특례공채법안이 성립될 때까지의 예산집행 억제 방침을 발표
 - 이번 예산집행 억제로 인하여 재원고갈 시기를 늦출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11월까지 재원이 거의 고갈될 전망
- FY2013 「일반회계 개산요구액」 발표(2012. 9. 12)
 - FY2013 「일반회계 개산요구액」은 98조 8억엔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7조 6,669억엔 증가
- 중기재정 프레임(FY2013~FY2015) 발표(2012. 8. 31)
 - 재정운영전략으로 정했던 FY2015의 GDP 대비 기초재정수지 적자목표를 착실히 달성하는 관점에서 FY2013~FY2015를 대상기간으로 하는 이번 개정을 실시
 - 사회보장 및 세제 일체 개혁 실현과 동시에 「일본 재생전략」에 입각하고 동일본대지진으로부터의 부흥 및 후쿠시마의 재생을 최우선으로 하는 것을 기본 인식으로 함
 - (공채발행액) FY2013 신규공채발행액은 FY2012 당초 예산 수준(약 44조엔)을 상회하지 않는 것으로 함
 - (세입) 소비세법 개정법안 등과 삼당합의에 기초한 세제의 발본적인 개혁을 진행
 - (세출) '기초적재정수지대상경비' 를 적어도 전년도 예산 규모를 상회하지 않도록 엄격히 통제하고, FY2014, FY2015년도에는 사회보장충실 등에 관한 경비를 각년도 예산편성과정에서 검토하여 '세출의 대략적인 한도' 에 가산함

〈표 11〉 FY2013 일반회계 개산요구액

(단위: 억엔)

소 관	전년도예산액 (당초)	FY2013 개산요구액	전년 대비 증감액
황실비	62	61	△1
국 회	1,384	1,382	△2
재판소	3,147	3,038	△109
회계검사원	166	161	△6
내각 · 내각본부 등	12,642	13,341	699
경찰청	2,400	2,376	△24
총무성	174,526	178,557	4,031
(내 지방교부세교부금 등)	(165,940)	(169,321)	(3,381)
법무성	7,325	7,048	△277
외무성	6,173	6,465	293
재무성	17,796	21,410	3,614
(내 동일본대지진부흥 특별회계 이월)	(5,507)	(9,377)	(3,870)
문부과학성	54,128	55,821	1,693
후생노동성	266,873	300,266	33,393
농림수산성	20,388	21,666	1,278
경제산업성	8,846	11,648	2,803
국토교통성	45,960	48,014	2,053
환경성	2,347	3,171	823
방위성	47,135	46,530	△605
경제위기대응 · 지역활성화 예비비	9,100	9,100	-
예비비	3,500	3,500	-
소 계	683,897	733,553	49,656
(기초적재정수지대상경비)			
(내 연금차액분)	(-)	(26,658)	(26,658)
국채비	219,442	246,455	27,013
합 계	903,339	980,008	76,669

주: 1. 상기 계수는 특별중점요구액 및 중점요구액을 포함한 것
 2. 지방교부세교부금등 개산요구액은 세수 등에 대해서 기계적 전망을 실시한 임시 금액
 3. 연금차액분 개산요구액은 소비세인상분을 상환재원으로서 확보한 연결공채(연금특례공채)를 발행한 후 연금재정에서 이월되기로 한 기초연금국고부담 비율 2분의 1과 36.5%의 차액
 4. 계수는 반올림하고 있기 때문에 끝수의 합계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5. 각 부처에서 요구한 금액을 그대로 집계한 것으로, 정밀조사 결과 금액의 변동이 있을 수 있음

출처: 일본 재무성, FY2013 「일반회계 개산요구액」

[표 12] FY2013~FY2015 기초적재정수지대상경비

(단위: 조엔)

	세출의 대략적인 한도		
	FY2013	FY2014	FY2015
기초적재정수지대상경비	71	71	71
내 경제위기대응·지역활성화예비비	0.9	0.9	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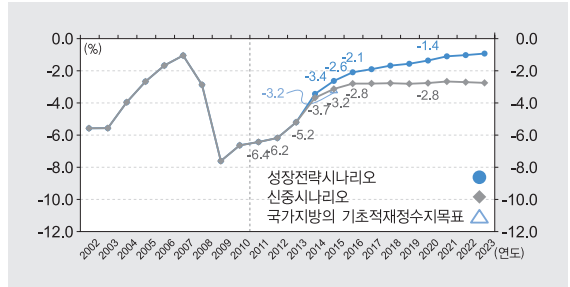
출처: 일본 국가전략실, 중기재정 프레임(FY2013~FY2015)

출처: 일본 국가전략실, 중기재정 프레임(FY2013~FY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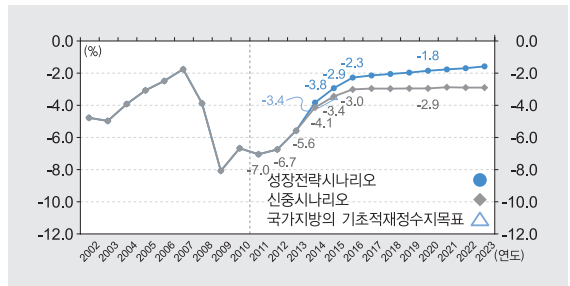
■ 경제재정 증장기 전망 발표(2012. 8. 31)

- 사회보장 및 세제일체 개혁관련 법안 통과 및 중기재정 프레임에서의 FY2015 '세출의 대략적인 한도'를 전년도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가정 아래 다음과 같이 전망
 - FY2015 GDP 대비 국가·지방의 기초적재정수지(복구·부흥대책 경비 및 재원 금액을 제외한 베이스, 이하 같음)는 FY2010 수준에서의 적자반감 목표(GDP 대비 $\Delta 3.2\%$)에 대해서, $\Delta 3.2\%$ 정도로 해당목표 달성
 - FY2015 GDP 대비 국가의 기초적재정수지는 FY2010 수준에서의 적자반감 목표(GDP 대비 $\Delta 3.4\%$)에 대해서, $\Delta 3.4\%$ 정도로 해당목표 달성
- FY2020 GDP 대비 국가·지방의 기초적재정수지와 국가의 기초적재정수지는 각각 GDP 대비 $\Delta 2.8\%$ 정도, GDP 대비 $\Delta 2.9\%$ 정도로 두 부문 모두 흑자화 목표 달성을 위한 수지개선이 필요함
- FY2020 GDP 대비 공채 등 잔고는 209% 정도로, 이후 증가(악화)가 전망되어 안정적인 저하를 위해 더욱 노력이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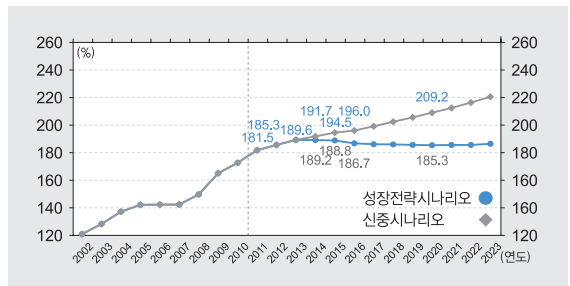
[그림 3] 국가·지방의 기초적재정수지(GDP 대비)



[그림 4] 국가의 기초적재정수지(GDP 대비)



[그림 5] 국가·지방의 공채 등 잔고(GDP 대비)



주: 복구·부흥대책 경비 및 재원 금액을 제외한 베이스

출처: 일본 내각부, 경제재정 증장기 전망

- FY2013 예산의 개산요구 기준 각의 결정(2012. 8. 17)

- FY2013 예산의 개산요구 기준에서는 예산을 포함



한 당면의 재정 운용에 대한 방침을 기본으로 중점적 · 전략적인 예산의 대담한 편성을 위해 중점 배분해야만 할 분야, 예산의 재편성을 위한 구조 등 FY2013 예산의 개산 요구에 대한 기본 방침 및 특별중점 요구 등을 결정함

〈표 13〉 FY2013 예산의 개산 요구 기준

FY2013 예산을 포함한 당면의 재정 운용에 대한 기본 방침	
1) 재정건전화목표(FY2015의 GDP 대비 기초적 재정수지적자를 FY2010 수준까지 반감) 달성을 위해 작년 개정한 중기재정프레임(FY2012~FY2014)에서 결정된 세출 범위 7조엔을 준수	
2) 「일본재생전략」을 기반으로 하여 경제의 재생 · 성장을 위한 대담한 예산 편성에 의해 성장과 재정 건전화의 양립을 도모	
3) 사회보장 및 세제일체 개혁(소비세율 인상)에 대해 국민의 이해를 얻기 위해 계속해서 행정의 효율화 및 간소화를 철저히 행함	
4) 사회보장 및 세제일체 개혁에 수반하여 FY2014부터 소비세율 인상에 대해 경제상황 등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일본 경제 동향 등을 살펴본 후에 기동적이고 탄력적인 대응을 실시	
FY2013 예산의 개산 요구에 대한 기본 방침	
1) 동일본 대지진(재해)로부터의 부흥 대책, 재해방지 및 감소대책 중점화	
2) 그린(Green)을 중심으로 하는 「일본재생전략」에 입각한 예산 분배의 중점화	
3) 부채 단위를 넘어선 대담한 예산 편성에 이바지하는 편성 구조의 도입	

주: 1) 정부의 국가전략회의를 통해 FY2020까지의 경제성장 전략을 정리하여 결정된 것으로 2012년 7월 31일 각의결정됨 ①재해지역 부흥을 최우선, ②의료, 환경, 농림어업의 세 가지를 중점분야로 하고 중소기업 활력 향상을 포함한 4대 프로젝트 실시, ③2020년까지 평균 명목 3%, 실질 2%의 경제성장률 목표(디플레이션 조기탈각, 급속한 엔고진행 대응), ④예산 편성의 중점화(정책중심, 횡단적 조직), ⑤진척 관리의 철저함을 기본 방침으로 함
 자료: 일본 재무성, 「FY2013 예산의 개산요구 기준에 대해서」

- 「FY 2012 경제동향에 대해서(내각부 연중시산)」 발표 (2012. 8. 17)
 - 일본 경제가 완만하게 회복되고 있고 세계 경제는 감속하는 가운데, 내각부는 이번 시산에서 FY 2012 GDP 성장률을 실질 약 2.2% 명목 1.9% 정도로 전망
 - 일정한 가정에서 FY2013을 시산한 결과 실질GDP

성장률은 1.7%, 명목 GDP 성장률은 1.8%, 소비자물가상승률은 0.5% 정도로 전망

〈표 14〉 주요경제지표

(단위: %)

	FY2011 (실적)	FY2012 (정부경제전망)	FY2012 (이번시산)	FY2013 (참고시산)
실질국내총생산	△0.0	2.2	2.2	1.7
명목국내총생산	△2.0	2.0	1.9	1.9
완전실업률	4.5	4.3	4.3	4.1
고용자수	△0.1	0.8	0.5	0.6
국내기업물가	1.4	0.7	△0.2	0.8
소비자물가(종합)	△0.1	0.1	0.2	0.5
GDP 디플레이터	△1.9	△0.2	△0.3	0.2

주: 1. FY2012 「정부경제전망」은 「FY2012 경제전망과 경제재정 운영의 기본적태도(2012.124. 각의결정)」에서 발표된 전망
 2. 일본 경제는 민간활동이 그 주체를 이루고, 국제환경의 변화에는 예측하기 어려운 요소가 많은 것에서 비추어보아, 위의 표의 모든 계수는 어느 정도 범위를 감안해서 생각해야 할 필요가 있음
 3. FY2011(실적)의 완전실업률과 고용자수는 총무성의 공표치가 이와테현, 미야기현 및 후쿠시마현을 제외한 전국치로 되어 있기 때문에, 「노동력조사에 있어서의 동일본대지진에 수반하는 보완추계치」(총무성)를 바탕으로 내각부가 전국치를 산출한 것
 4. 국내기업물가는 FY2011(실적) 과 FY2012(이번시산)에 대해서는 FY2010 기준이며, FY2012(정부경제전망)에 대해서는 FY2005 기준임
 5. FY2013 참고시산은 FY2013 거시경제를 생각하기 위한 기계적 시산으로, 여러 가지 불확실성을 수반하기 때문에 상당한 범위를 감안하여 이해할 필요가 있음
 6. FY2013 정부경제전망은 FY2013 정책대응 및 향후 경제동향에 입각하여 연말에 확정하고 각의결정(주무대신 관할)되는 「FY2013 경제전망과 경제재정운영의 기본적태도」에서 명확히 함
 7. 완전실업률은 노동력인구(15세 이상 인구 중 일할 의욕이 있는 사람, 취업자+완전실업자) 중 완전실업자(직업이 없이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의 비율을 의미하며 총무성의 노동력조사에 의해 발표됨
 자료: 일본 내각부, 「FY2012 경제동향에 대해서(내각부 연중시산)」

포르투갈

- 포르투갈 정부, 2013년 국가예산 추가긴축조치 발표 (2012. 9. 7.)³¹⁾
 - Passos Coelho 총리는 대국민 성명을 통해 긴급재

31) 참고: 포르투갈 정부, 보도자료 (<http://www.portugal.gov.pt/pt/mantenha-se-atualizado/20120912-pm-declaracao.aspx>)

정 목표달성을 위한 2013년도 국가예산의 추가 긴축조치를 발표함

- (사회보장공제율) 긴축재정 목표달성을 위해 2013년부터 근로자의 사회보장 공제율(TSU)을 현행 11%에서 18%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밝힘
- (기업공제율) 기업의 생산비용 절감, 경쟁력 강화와 수출촉진을 위해 기업공제율을 현행 23.75%에서 18%로 감소하는 추가긴축안을 발표함

■ 트로이카(IMF, EC, ECB), 포르투갈 제5차 구제금융 프로그램 평가 결과 발표(2012. 9. 11.)³²⁾

- 제5차 트로이카 대표단은 포르투갈의 재정긴축 달성시한을 1년 연장하였으며, 올해(2012년)부터 내년(2013)년까지의 재정적자 감축 목표 수준을 완화하는 것에 합의함
 - (총 평) 포르투갈이 재정적자 목표치를 달성하지는 못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트로이카가 제시하였던 구제금융 프로그램이 전반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고, 현재 포르투갈 정부가 혹독한 긴축재정을 이행하고 있기 때문에 2014년부터는 부채가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발표함
 - 감축시한의 연장은 단기적으로 포르투갈 경제와 사회에 미치는 타격을 완화할 것이라고 언급함
 - (재정적자 감축 목표) 2012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이 4.5%에서 5.0%로 상향 조정되었으며, 2013년 재정적자 비율은 3%에서 4.5%로 상향 조정되었음

- (경제성장률 전망치) 2013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0.2%에서 -1%로 하향 조정되었으며 2013년 2사분기부터 경제가 회복될 것이라고 전망함
- (노동 분야) 노동시장 개혁의 가속화를 언급하며, 임금과 해고로 인한 손해배상금 감축 및 노동시장의 유연성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힘
- (국영 기업) 국영기업의 적자감소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민·관협력기업의 비용감소, 공공행정의 합리화 등도 요청하였음

■ 포르투갈 재무회계국(DGTF), 국영기업에 관한 보고서 발표(2012. 9. 5.)³³⁾

- 포르투갈 재무회계국(DGTF)이 발표한 2012년 국영기업에 관한 보고서에 'State Business Sector-Report 2012' (Sector Empresarial do Estado-Report 2012)에 따르면 2012년 상반기 국영기업의 적자는 6억 9,150만 유로로 작년 동기 3억 3,550만 유로에 비해 2배 정도 증가함
- 국영기업의 매출이 작년 동기 대비 5.3% 증가하고, 7,380만유로의 노동비용 감축이 있었지만 이것은 재정비용의 증가를 상쇄하기에는 불충분하다고 밝힘

■ 트로이카(IMF, EC, ECB), 포르투갈 5차 구제금융 프로그램 평가 시작(2012. 8. 28.)³⁴⁾

- 유럽위원회(EC), 유럽중앙은행(ECB), 국제통화기금(IMF)으로 구성된 트로이카 대표단은 포르투갈의 제5차 구제금융 프로그램 평가 시작

32) 참고: "Statement by the EC, ECB, and IMF on the Fifth Review Mission to Portugal," IMF, Press Release 2012, 9. 11 (<http://www.imf.org/external/np/sec/pr/2012/pr12310.htm>)

33) 참고: 포르투갈재무회계국 DGTF - Ministry of Finance - Directorate General of Treasury and Financm, 'Sector Empresarial do Estado- Report', 2012, Julho

34) <http://www.portugaldailyview.com/whats-new/bailout-will-portugal-tap-the-markets-in-2013-asks-the-troika>



- 지난해 5월 포르투갈에 780억유로 규모의 구제금융 지원을 약속한 트로이카는 포르투갈 정부의 재정개혁 성과 등을 평가할 예정임
- 포르투갈 정부는 2012년 재정적자 축소 목표인 GDP의 -4.5% 달성을 위해 지출 감축, 수출 증대, 국채이자율의 인하 등을 통해 정부 역량에 달린 목표는 모두 달성함
 - 하지만, 2012년 7월 말까지 재정수입이 3.5% 감소하여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 긴축재정 목표 미달성과 관련해 추가 긴축조치 요구 여부 및 트로이카의 평가는 향후 43억유로의 구제금융 집행 여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 포르투갈, 공공부문의 개혁 및 경영투명성 강화 법안 승인함(2012. 8. 30)³⁵⁾
 - 포르투갈은 구제금융 프로그램(a troika no Programa de Assistência Económica e Financeira)의 일환으로 공공 부문의 개혁 및 경영투명성을 강화하는 법안을 승인함
 - 재무부의 힘을 강화하여 부채가 많은 국영기업에 관해 면밀한 조사가 이루어질 것이며, 부채가 많은 국영기업의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세계 각국의 모범 사례를 참고하여 투명한 규칙을 만들 것이라고 밝힘

 스페인

1. 재정동향

- 자치지역 유동성 기금(Fonde de Liquidez Autonómico: FLA) 재원조달을 위해 80억유로의 은행 크레딧 공급 합의(2012. 9. 13)³⁶⁾
 - 경제부(Ministerio de Economía y Competitividad)는 자치지역 채무이행 지원을 위해 여러 은행들과 80억유로의 크레딧 공급에 합의
 - 30억유로는 9월 말, 50억유로는 10월 중순에 공급될 예정
 - 지역재정지원 기금은 2012년 총 180억유로이며 나머지 재원은 국가복권자금 60억유로, 국채(desembolso del Tesoro) 40억유로로 조달
- 자치지역의 2012년 상반기 집행결과 재정적자는 약 98억유로, GDP의 0.93% 규모로 집계(2012. 9. 13)³⁷⁾
 - 예산안정법(la Ley de Estabilidad Presupuestaria)에 따른 지역정부의 2012년 재정적자목표는 GDP의 1.5%로 설정되어 있음
 - 국민계정 기준의 재정적자는 약 81억유로(GDP의 0.77%)이며, 이는 2011년 상반기 재정적자(174억유로)에 비해 53.7% 감소된 수준
- 한시적 실업보상 제도(Professional Re-qualification Programme: PREPARA) 연장 및 확대 방안 정부승인(2012. 8. 24)³⁸⁾

35) <http://www.portugal.gov.pt/pt/os-ministerios/ministerio-das-financas/mantenha-se-atualizado/20120830-mf-see.aspx>

36) 스페인 경제부 보도자료 (<http://www.mineco.gob.es/porta/site/mineco/>)

37) 스페인 재무부 보도자료 (<http://www.minhap.gob.es/en-GB/Prensa/Paginas/NotasPrensaHome.aspx>)

38) 스페인 정부 홈페이지 (<http://www.lamoncloa.gob.es/IDIOMAS/9/Gobierno/News/index.htm>)

- 2012.8.15일 종료 예정이었던 실업보상 제도의 연장 및 확대 방안이 정부에서 승인되어 8월 16일부터 소급 적용하고, 2013.2.15까지 기간 연장
 - 실업보상 제도는 소득원이 없고 다른 급여의 자격 조건을 상실한 경우 적용
- 3인 이상의 부양가족이 있는 실업자에 대해 최저 보상금을 400유로에서 450유로로 인상
 - 2012년 6월 기준 수급자는 약 21만명, 7월 누적 수급자 수 약 50만명이며 2012년 5월까지 소요된 실업보상 제도 총 비용은 약 11억유로로 집계

■ EU 어업협정(모로코) 중단에 따른 재정지원 확대 (2012. 8. 22)³⁹⁾

- 모로코와의 어업협정 중단으로 피해를 입은 어민에 대해 12월 14일까지 실업보상을 6개월 확대
- 추가 보조금 예산은 총 536만유로이며, 1인당 실업 일 1일 기준 45유로에 해당
 - 농업 · 식품 · 환경부(Ministry of Agriculture, Food & Environmental Affairs)는 관계 법안을 9월 말 내각회의(Council of Minister)에 제출할 예정

2. 조세동향

- 스페인 관보는 법인세법,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등의 개정 사항이 포함된 개정세법(Royal Decree-Law 20/2012 of 13 July 2012)을 2012년 7월 14일에 공 포함
 - 동 개정세법은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2012년 7월

15일부터 유효함

- 개정세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가. 금융비용공제 제한제도의 적용대상 확대 등 법인세 개정

- 금융비용공제 제한제도(limitation on the deduction of financial expenses)의 적용대상이 변경되고 과세 기간이 1년 미만인 법인에 대한 최소공제액(minimum deduction)이 제한됨

- 스페인은 2012년 3월 31일에 단행된 개정세법 (Royal Decree-Law 12/2012 of 30 March 2012)을 통해 과소자본세제를 폐지하는 대신 금융비용공제 제한제도를 신설한 바 있음

- 금융비용공제 제한제도란 과도한 차입금 사용을 억제하기 위해 법인의 금융비용을 일정 한도까지만 과세소득에서 공제하는 제도임

- 2012년 3월 31일에 신설된 금융비용공제 제한제도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 기업그룹의 계열사를 적용대상으로 함
- 적용대상 법인은 영업이익⁴⁰⁾의 30%에 달하는 금융비용을 과세소득에서 공제 가능

- 다만, 1백만유로는 최소공제액으로서 한도와 관계 없이 공제 허용

- 이번 세법 개정으로 금융비용공제 제한제도의 적용대상 및 최소공제액이 다음과 같이 변경됨

- 기업그룹의 계열사뿐만 아니라 모든 법인에 대해 금융비용공제 제한제도가 적용됨. 다만, 보험회사, 금융회사 및 청산절차를 밟고 있는 회계연도

39) 스페인 정부 홈페이지 (<http://www.lamoncloa.gob.es/IDIOMAS/9/Gobierno/News/index.htm>)

40) 이때 영업이익은 법인세, 이자 및 감가상각비 차감 전 영업이익(Earnings Before Interest, Taxes, Depreciation and Amortization, EBITDA)을 의미함



에 해당하는 일부 법인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됨

- 과세기간이 1년 미만인 법인에 대해 1백만유로인 최소공제액을 과세기간에 비례하여 계산하는 방식으로 제한함

• 이와 같은 개정사항은 2012년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됨

■ 일정 규모의 법인에 대한 이월결손금 공제한도가 축소됨

- 스페인은 세수확보를 위해 2011~2013 과세연도에 대해 한시적으로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를 두고 있음
 - 매출액이 2천만유로 이상 6천만유로 미만인 법인: 이월결손금의 75%까지,
 - 매출액이 6천만유로 이상인 법인: 이월결손금의 50%까지 당기이익에서 공제 가능함

- 이번 세법개정으로 다음과 같이 2012~2013 과세연도에 대한 이월결손금 공제한도가 기존보다 축소됨
 - 매출액이 2천만유로 이상 6천만유로 미만인 법인: 이월결손금의 50%까지,
 - 매출액이 6천만유로 이상인 법인: 이월결손금의 25%까지 당기이익에서 공제 가능함

■ 무한 내용연수를 가진 무형자산에 대해 허용되는 연간 감가상각률이 10%에서 2%로 인하됨

- 다만, 인수합병 또는 구조조정으로 발생한 영업권에 대한 연간 감가상각률은 이번 세법개정에도 불구하고 기존과 동일하게 1%로 유지됨

나. 소득세 원천징수세율 인상

- 강의, 기고, 예술 또는 과학 업무로부터 발생한 소득 과 전문활동에 대한 대가 지급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세율이 기존 15%에서 다음과 같이 인상됨
 - 2012년 12월 1일~2013년 12월 31일: 21%
 - 2014년 1월 1일 이후: 19%

다. 부가가치세율 인상 및 표준세율 적용대상 용역거래의 확대

- 2012년 9월 1일부터 부가가치세율이 다음과 같이 인상됨
 - 표준세율: 18%에서 21%로 3% 인상
 - 경감세율: 8%에서 10%로 2% 인상
 - ☞ 초경감세율은 변동 없이 4%로 유지됨
- 2012년 9월 1일부터 호텔, 디스코장, 예술공연, 영화, 일반공연, 동물원, 놀이공원, 장례서비스, 특별 공제 대상이었던 학교설비 이용거래 등에 대해 경감세율 대신 표준세율이 적용됨

 영국

- 캐머런 총리, 건설경기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계획 발표(2012. 9. 6.)⁴¹⁾
 - (방안) 건설업자 및 무주택자를 지원하고 건축 관련 규제를 완화함
 - 신규 기금과 인프라 보증을 통한 주택 공급 확대(1만 5천호), 주택 미분양 문제 해결(5천호), 임대주

41) 참고: 총리실 보도자료, 2012. 9. 6.

(<http://www.number10.gov.uk/news/plans-to-boost-uk-housebuilding-jobs-and-the-economy/>)

- 택시장 활성화(5천호) 등
-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약 1만 6,500명) 지원을 위한 대출(FirstBuy Scheme)을 2억 8천만파운드 확대
- 건설업에 적용되던 각종 규제 및 건축물 개량 관련 규제 완화
- (효과) 투자 촉진은 물론 일자리 창출과 서민 주택 마련의 기회를 제공할 전망
- 약 7만호의 신규 주택 공급, 14만개의 일자리 창출, 400억파운드의 인프라 프로젝트 및 100억파운드 규모의 신규 주택 보증

■ 북해 유전사업에 대한 감세 계획 발표(2012. 9. 7.)⁴²⁾

- 오스본 재무부장관은 북해 유전개발 투자 촉진을 위해 “재개발지역(brown field)”의 사업에 대한 세금 감면 시행을 발표함

■ 영국중앙은행, 자산매입프로그램(양적완화)의 분배 효과 발표(2012. 8. 23.)⁴³⁾

- 중앙은행의 양적완화가 없었다면 경제성장 부진, 실업 등이 더 악화되었을 것임
- 지난 양적완화 조치로 실질 GDP 1.5%~2%의 상승 효과 발생
- 국채매입으로 인한 각종 자산 가격 상승은 가계 소득에 영향을 미침
- (저축자) 저금리 정책으로 인해 이자수입은 감소하나, 양적완화를 통한 자산가격 상승이 가계의 금융재산 가치를 높임

- ☞ 다만 소득 상위 5%가 자산의 40%를 보유하는 편향된 분포임
- (연금수급자) 양적완화 이전 기수급자의 연금소득에는 영향이 없으며 연금 제도에 따라 영향이 다름
- ☞ (확정급여형) 완전적립형 연금은 국채매입이 소득의 순가치에 거의 중립적인 영향을 미치나 적자 상태의 확정급여형 연금의 경우 국채매입프로그램으로 적자 규모가 증가해 근로자와 미래 세대에 부담으로 작용함
- ☞ (확정기여형) 양적완화의 영향으로 연금지급률이 하락하나 연금지급 자산의 가치가 상승해 연금소득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상쇄됨

 미국

■ FY2013 예산 잠정세출결의안⁴⁴⁾(Continuing Resolution; H.J.Res 117) 하원 통과(2012. 9. 13)

- (결의안 효력기한) 2013년 3월 27일 또는 FY2013 예산 세출법안 통과 시까지
- (자금지출비율_Rate of Funding) \$1,047조달러 → 전년도 수치보다 266억달러 낮아진 규모
- (전쟁관련 및 재해 지출_Disaster and War Spending) 연방재해본부(FEMA)의 재해구제자금(Disaster Relief Fund)은 전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지급, 국방부의 해외 긴급 작전(Overseas Contingency Operations) 지출규모는 정부가 요청한 885억달러 승인
- ※ (세출법안 진행경과) 총 12개의 세출법안이 하원세출위원회에서 승인되었으나, 이 중 7개 법안만이 하원을 통과한 상태 → 상원은 아직 진행된 사항이 없음

42) 참고: 재무부 보도자료, 2012. 9. 7. (http://www.hm-treasury.gov.uk/press_78_12.htm)

43) 영국 중앙은행 보도자료, 2012. 8. 23 (<http://www.bankofengland.co.uk/publications/Pages/news/2012/073.aspx>)

44) 잠정세출결의안은 다른 일반 결의안과 달리, 법안과 같은 동등한 법적 지위를 가진



■ 미국 의회예산정책처(CBO) 보고서, 「FY2012~FY2022 예산/경제 수정 보고서」- 'Updated Budget and Economic Outlook' 발표(2012. 8. 22)

- (재정) FY2012 재정적자는 1조 1천억달러로 GDP의 7.3%로 전망
 - 이는 지난 3월에 발표한 적자전망(1조 2천억달러) 보다 다소 낮아진 규모이나, FY2009를 기점으로 연속 4년간 재정적자 1조달러 이상으로 기록될 것으로 전망

〈표 15〉 FY2012~FY2022 재정전망

(단위: 십억달러)

구분	Actual	Estimate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세입													
(Jan.)	2,302	2,523	2,988	3,313	3,568	3,784	4,039	4,243	4,456	4,680	4,926	5,181	
(수정)	2,303	2,435	2,913	3,208	3,541	3,817	4,083	4,328	4,551	4,790	5,039	5,295	
세출													
(Jan.)	3,598	3,601	3,573	3,658	3,836	4,086	4,259	4,439	4,714	4,960	5,205	5,520	
(수정)	3,603	3,563	3,554	3,595	3,754	4,003	4,206	4,407	4,681	4,932	5,183	5,509	
재정적자 (Deficit) (-)													
(Jan.)	1,296	1,079	585	345	269	302	220	196	258	280	279	339	
(수정)	1,300	1,128	641	387	213	186	123	79	130	142	144	213	

- (국가채무) 비정부 부문 소유채무(Debt held by the public)는 GDP의 73%, 1950년 이후로 최고치로 기록될 것으로 전망

※ 금융위기와 경제침체 전인 FY2007의 규모보다 2배 이상 증가한 규모 → FY2007의 비정부부문 소유채무는 36.9%(〈표 16〉 참고)

〈표 16〉 FY2007~FY2013 국가채무 추이

(단위: 십억달러)

FY (회계연도)	Actual					전망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Debt held by the Public	5,035	5,803	7,545	9,019	10,128	11,318	12,064
% of GDP	36.9	40.8	53.0	62.1	67.7	72.8	76.1

- (경제) FY2012 실질 GDP 성장률은 전년도와 비슷한 2.0%를 유지할 것으로 보이나, FY2013 실질 GDP 성장률은 전년도 대비 1.6%p 감소한 0.4%로 하향 전망

〈표 17〉 FY2012~FY2015 경제전망

(단위: %)

경제전망	2012		2013		2014		2015	
	1월	수정	1월	수정	1월	수정	1월	수정
실질 GDP 성장률	2.1	2.0	1.2	0.4	2.7	1.9	4.8	4.7
명목 GDP 성장률	3.7	3.9	1.6	2.0	4.2	3.3	6.3	6.4
CPI (U) (% of Change)	2.2	2.3	1.4	1.4	1.5	1.7	1.6	2.0
실업률	8.8	8.3	9.0	8.5	9.0	8.9	7.8	8.0

- (재정정책 변화) 2013년부터 시행 예정인 재정(경제) 관련 정책 변경사항

- ① 세금감면 조치(Tax Relief), 실업보험 연장법안(Unemployment Reauthorization), 고용촉진법(Job Creation Act of 2010) 금년(2012년) 말 종료
- ② 고령(65세 이상) 의료보험(medicare)제도하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사들이 받는 의료지급비용(Medicare's payment rates for physicians' services) 대폭 하락
- ③ 2011년에 발효된 예산통제법(Budget Control Act of 2011)에 의한 재량지출과 의무 지출의 자동

삭감조치(automatic enforcement procedures) 시행

④ 비상실업수당(emergency unemployment benefit) 연장과 사회보장 급여세(payroll tax for Social Security) 2%p 삭감조치 금년(2012년)말 종료

• 재정정책 변화 시나리오별 전망

- (위의 열거된 정책변화들이 예정대로 진행될 경우) FY2013의 재정적자는 FY2012 재정적자보다 5천억달러 감소한 6,410억달러로 대폭 감소전망
→ 즉, 재정수지는 개선될 것으로 보이나, 이로 인해 FY2013년도부터는 실질 경제성장률은 (-)0.5%까지 하락, 실업률은 2013년도 하반기(calendar year 2013)에는 9%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

• (재정절벽⁴⁵⁾ 회피에 합의하는 경우) FY2013의 재정적자는 1) 만료되는 세금감면의 무기한 연기, 2) 대체 최저세액⁴⁶⁾(ATM_Alternative Minimum Tax) 제도의 2011년 이후 인플레이션에 연동하여 적용, 3) Medicare 지급비율 현 수준으로 동결, 4) 예산통제법에 따른 자동지출삭감 시행(automatic spending reductions)이 보류될 것을 전제로 한 전망치는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약 4천억달러 높은 1조달러 전망

→ 즉, 재정수지는 악화되지만, 경제는 실질 GDP가 1.7%(FY2013) 성장, 실업률은 8.0%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

대만

■ 대만 입법부는 2012년 7월 25일에 주식매매 등에 대한 자본이득을 과세하는 내용이 포함된 소득세법(Income Tax Act, ITA)과 소득기본세법(Income Basic Tax Act, IBTA)을 개정함

- 새로운 규정은 개인과 법인에 모두 적용하며,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임
- 소득기본세는 소득세에 조세혜택을 더하여 계산한 과세소득을 재계산한 후 일정률로 과세하는 방식으로 최저한세와 유사한 개념으로 파악됨

■ 새로운 규정의 시행 이전 주식의 매매 등에서 발생하는 자본이득은 법인과 개인이 달리 과세됨

- 법인 납세자에 대한 소득세가 면제되고, 소득기본세 계산 시 고려됨
- 즉, 소득기본세 계산 시 주식매매
- 개인 납세자도 법인납세자의 과세방식과 거의 유사하게 과세되지만, 소득기본세 계산 시 비상장주식의 처분에 대한 것만 고려됨

■ 참고로 대만에는 증권거래세와 선물거래세가 있으며 이번 개정에 따라 증권교역세에 큰 변동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지만, 은행채와 회사채에 대한 증권거래세는 2010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부여하지 않음⁴⁷⁾

- 대만의 증권거래세는 국채를 제외한 모든 종류의 주식에 대한 거래 시 적용되며, 증권거래세율은 최근에 변동된 바 없음

45) 재정절벽의 영문 명칭은 'Fiscal Cliff'이며, 정부의 재정지출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경기 회복의 발목을 잡는 현상

46) 대체 최저세액은 세금 혜택(공제)을 받더라도 일정 수준 이상의 세금은 내도록 하는 제도

47) <http://www.ibfd.org/>



- 회사가 발행한 주식에 대하여 거래가액의 0.3%
- 회사채, 금융채 및 정부가 비준한 유가증권에 대하여 거래가액의 0.1%
- 대만의 선물거래세는 1998년 이후로 약정금액에 근거하여 거래 양 당사자에게 거래건별로 부과하고 있음
 - 세율은 0.01%보다 낮거나 0.06%보다 높지 않도록 결정함

- 만뉴타이완달러로 축소함
- 소득기본세율을 10%에서 12%로 인상함

- 대만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주식 등의 거래로 인한 자본이득에 대한 소득기본세가 적용되지 않음을 명확하게 함

가. 법인 납세자

1) 소득세

- 개정 전에 면세소득이었던 주식매매 등에 대한 자본이득을 개정에 따라 과세소득으로 전환하여, 주식매매 등에 대한 자본이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함
 - 주식매매 등에 대한 자본이득은 대만 선물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옵션, 선물, 상장·비상장주식 및 그 외의 시장성 있는 주식의 매매로부터 얻은 자본이득을 말함
- 3년 이상 보유한 주식에 대해서는 자본이득의 50%를 면제하고, 손실은 5년간 이월공제가 가능하도록 함

2) 소득기본세

- 개정 전과 마찬가지로 소득기본세 계산 시에도 해당 자본이득을 고려함
- 소득기본세율의 세율을 인상하고 소득기본세의 면제 한도를 축소함
 - 개정 세법도 개정 전과 같이 주식매매 등에 대한 자본이득을 소득기본세를 계산하기 위해 고려하는 범위에 잔존시킴
 - 소득기본세 면제한도를 2백만뉴타이완달러에서 50

나. 개인 납세자

1) 소득세

- 개정 세법에 따르면, 개인은 2013년과 2014년에는 이중보고시스템, 2015년에는 단일시스템을 적용
 - 이중보고시스템에서는 임퓨테이션 기준과 실제 기준을 적용하며, 단일시스템은 실제 기준만을 적용
- 이중보고시스템에서 개인은 주식의 매매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지불하기 위해 두 가지의 대안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함
 - 실제 기준은 거래에서 발생한 자본이득에 대하여 15% 혹은 20%의 단일세율로 과세하는 방식임
 - 납세자가 이 방식을 선택하면 해당 자본이득을 포함하여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함
 - 자본손실은 이월공제되지는 않고 당해 연도에 보고되는 자본이득을 한도로 공제가능함
 - 임퓨테이션 기준은 원천징수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으로, 타이완 주식 교환지수(weighted average index of the Taiwan Stock Exchange, TAIEX)가 8,500포인트 이상이면 주식의 매매가액에 대하여 0.01~0.03%의 범위의 누진세율로 과세하는 방식임
 - 누진세율은 TAIEX가 8,500포인트 이상이면 0.01%, 9,500포인트를 초과하면, 0.02%, 1만 500포인트를 초과하면 0.03%를 적용

- 이 기준은 2015년부터 폐지될 것임

- 다음의 경우에는 임퓨테이션 기준을 적용할 수 없음
 - 대만의 신흥주식시장에 십만 주 이상을 매각한 경우
 - 최초 공모로부터 취득한 십만 주 이상을 매각한 경우
 - 2013년 1월 1일 이후에 대만 증권 시장에서 회사의 신규상장으로 취득한 주식을 매각하는 경우
 - 실제 기준만 적용할 수 있는 비거주자인 경우
- 실제 기준을 선택한 개인이 1년 이상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 자본이득의 50%가 면제되고, 신규상장 이후에 3년 이상 보유한 신규 상장주식을 매각하는 경우 자본이득의 75%를 면제함

2) 소득기본세

- 개인의 주식 등 매매에 대한 자본이득은 소득기본세의 고려대상에서 제외함

네덜란드

- 네덜란드 상원(Eerste Kamer der Staten-Generaal)은 7월 10일에 표준부가가치세율 인상 등의 개정안이 포함된 2013년 예산안을 가결
 - 주요 세법 개정안은 다음과 같음

가. 법인세

- 개정안에 따르면 지분투자자와 관련된 이자비용이 75만유로를 초과하는 경우 지분투자관련 이자비용을 소득에서 공제할 수 없음
 - 지분투자관련 이자비용은 총이자비용에 평균적인 지분투자관련 부채가 총부채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함

- 현행 규정에 따르면 네덜란드나 외국회사에 투자하기 위하여 조달한 금융비용은 소득에서 공제됨
 - 한편 그 주식으로부터 수취한 배당금 등은 지분관련 이 중 과 세 방 지 제 도 (Dutch Participation Exemption)에 따라 과세에서 면제됨
 - 지분관련 이중과세방지제도(Dutch Participation Exemption): 법인이 수취한 배당소득에 대한 수입 배당금 익금불산입제도를 의미함

나. 부가가치세

- 10월 1일부터 부가가치세 표준세율을 현행 19%에서 21%로 인상
 - 부가가치세율을 인상하여 사업자가 고용을 증대할 경우 증가하는 조세부담을 완화시킬 예정이나, 아직 까지 이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이 발표되지는 않음

다. 부동산취득세(Real Estate Transfer Tax)

- 현행 부동산취득(이전)세는 네덜란드 국내에 있는 부동산을 취득할 때 그 취득에 대해서 과세되는 세금으로, 세액은 취득금액의 6%임
 - 부동산취득세는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사람이 부담함
- 2011년 6월 15일 현재 이후로 개정안에 따르면 개인 주택(private dwelling)의 경우 부동산취득세의 세율을 현행 6%에서 2%로 인하함
 - 이 세율인하 조치는 네덜란드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2011년 6월 15일부터 2012년 7월 1일까지 시행함



라. 비상인건비추가부담금(Wage Tax Crisis Levy) 도입

- 고용주(employer)가 종업원(employee)에게 2012년에 지급한 급여 중 종업원별로 15만유로를 초과한 경우 고용주는 그 초과한 금액의 16%를 비상인건비추가부담금(wage tax crisis levy)으로 납부하여야 함
 - 비상인건비추가부담금은 2012년에 지급한 급여에 한하여 적용됨
 - 현행규정에 따르면 급여가 15만유로를 초과한 경우의 소득세율은 52%임
 - 비상인건비추가부담금은 고용주가 부담하는 것이므로 종업원에게 이전되어서는 아니 됨

| 정책 흐름 |



- 2013년 예산안, '경제활력 · 민생안정 예산' 으로 편성
- 2012~2016년 국가재정운용계획
- 2013년 국세 세입예산(안)
- 2012년 상반기 중앙정부 재정수지(잠정)
- 한국 고용의 현주소

2013년 예산안, '경제활력·민생안정 예산'으로 편성

- 균형재정 기조하에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강화 -

* 본 자료는 2012년 9월 20일 기획재정부 예산실에서 발표한 '2013년 예산안, '경제활력·민생안정 예산'으로 편성'의 전문입니다. (편집자 주)

I. 2013년 예산안 주요 내용

【총괄】

- '13년 예산안은 미래 대비 재정여력 확보, 대외신인도 제고를 위해 균형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강화하는 '경제활력·민생안정 예산'으로 편성
- 어려운 세입여건하에서 총지출 증가율은 '11~'15년 계획상의 증가율 5.1%보다 0.2%p 확대된 5.3%로 설정 (총지출 342.5조원)
 - ☞ 재정수지는 균형재정 기조 범위 내에서 관리 (GDP 대비 $\Delta 0.3\%$)
 - ☞ 국가채무비율(GDP 대비)도 금년보다 축소 ('12년 전망 34% → '13년 33.2%)

2013년 재정총량안

(단위: 조원, %)

	'12예산	증가율	'13(안)	증가율
◇ 총 수입	343.5	9.3	373.1	8.6
◇ 총 지출	325.4	5.3	342.5	5.3
◇ 관리재정수지* (GDP 대비)	$\Delta 14.3$ ($\Delta 1.1$)		$\Delta 4.8$ ($\Delta 0.3$)	
◇ 국가채무 (GDP 대비)	445.9[445.2]** (33.3)[(34.0)]**		464.8 (33.2)	

*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 수지 흑자를 제외

** []은 '12년 전망치

- 이와 함께 재정운용방식 개선을 통해 재정수지를 추가 악화시키지 않으면서도 실제 총지출 증가율을 5.3% → 7.3%로 확대하는 효과 유도
 - ☞ 재정용자지출 6.7조원*을 이차보전 방식으로 지원하여 내년 실제 총지출 증가율을 2.0%p 확대
 - * 6.7조원=기존 재정용자 3.5조원을 이차보전 방식으로 전환+신규 이차보전 지원으로 민간용자 3.2조원 창출
 - ☞ 기존 재정용자지출 3.5조원의 이차보전 전환을 통해 확보한 가용재원은 경기대응(1.5)·민생안정(0.7)·지방지원(1.3)에 중점 투자

재정용자의 이차보전 전환

- (개념) 재정용자를 시중은행 용자로 전환하여 수혜자는 동일한 지원을 받도록 하고 재정은 이차만 지원하는 방식
- (장점) 민간 금융시장의 풍부한 자금을 활용함으로써 동일한 효과를 거양하면서도 재정부담 완화

【2013년 예산안의 중점 및 추진과제】

- '13년 예산안은 경제활력과 민생안정을 목표로 4가지 과제에 중점을 두고 편성

경제회복을 위한 『활력 예산』	• 내수·수출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복지, 안전을 위한 『든든 예산』	• 일자리 확충, 맞춤형 복지, 안전한 사회
경제체질을 탈바꿈하는 『튼튼 예산』	• 성장동력 확충, 글로벌 인재양성, 전통·취약부문 체질 강화
재정의 균형을 뚫는 『알뜰 예산』	• 재정운용방식 개선, 세출구조조정

(1) 경제회복을 위한 『활력 예산』

- 경제활력 제고 투자를 통해 당면한 경제 어려움을 극복
 - ① **(내수 활성화)** 국내외 기업 투자 촉진으로 실물 경기 회복 지원
 - ☞ 중소기업 정책금융* 8.5조원 확대(69.5 → 78.0조원)
 - * 정책자금, 신용보증, 매출채권보험
 - ☞ 중소·중견기업 설비투자 펀드 1.2조원 공급 (0.6 → 1.2조원)
 - ☞ 해외투자기업 U턴 및 외국기업 투자유치 강화
 - ② **(수출지원 강화)** 무역금융 확대, 수출역량 강화 중점 지원
 - ☞ 수출금융·무역보험 등 무역금융 30조원 확대(270 → 300조원)
 - ☞ 해외매장 직접 진출 등 중소기업 수출지원(신규 100억원)
 - ☞ FTA 활용 제고 및 국제 지식재산권 분쟁 대응 지원
 - ③ **(지역경제 활성화)** 지방재정 지원, 지역 SOC 등 투자 확대
 - ☞ '11·'12년도 취득세 감소분 및 '12년도 영유아 보육료 지자체 부담분 등을 고려, 목적예비비로 지방재정 1.3조원 보완
 - ☞ 지방교부세는 전년 대비 2.5조원 증액(7.6%)
 - ☞ 경자구역, 산업단지 진입도로 등 지역산업 인프라 1.2조원 지원

☞ 완공소요 위주로 SOC 투자 지원(23.1 → 23.9조원)

(2) 일자리, 복지, 안전을 위한 『든든 예산』

- 일자리 확충, 맞춤형 복지를 통해 서민생활을 개선하고, 폭력·재해 등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조성
 - ① 일을 통한 소득·복지 증진

재정지원 일자리 확충	근로유인형 일자리 안전망 강화, 고용구조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정지원 일자리 2.5만명 확대 (취업 취약계층 위주 58.9만명 지원) • 청년친화적 일자리 10만개 창출 (유망중소기업 인턴, 글로벌 일자리 등) • 베이비붐세대 재취업 3배 확대 (중장년 재도약 일자리 등 1 → 3만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업성공패키지 훈련수당 인상(월 31.6 → 40만원, 25% 인상) • 실업급여*·사회보험료 대상 확대 * 65세 이상, 영세자영업자 신규 지급 등 • 긴급고용안정 지원 강화, 고용연장 및 장시간근로개선 지원

- ② 생애주기별(양육·보육, 학비, 주거 등) 맞춤형 복지 지원

생애주기별	주요 프로그램
영유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유아 필수예방접종에 뇌수막염 추가 • 양육수당 소득하위 70%까지 확대 • 공공형(1 → 1.5천개)·국공립 어린이집(43개소 신설) 확대
학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아동센터 240개소 추가 지원(3.5 → 3.7천개소) • 국가장학금 규모 5천억원 확대(1.75 → 2.25조원) • 든든학자금(ICL) 규모 확대(24.2 → 29.8만명)
장년·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세자금 및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융자지원 4조원 확대 • 노인 일자리 1만개 확대(22 → 23만개) • 독거노인 돌봄서비스 3만명 확대(142 → 172천명)

③ 수혜대상별(저소득층, 장애인, 농어업인 등) 맞춤형 복지 지원

수혜대상별	주요 프로그램
저소득층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초수급자 3만명 추가 보호(140 → 143만명) 이행급여(6 → 10천가구), 희망키움통장(18 → 32천가구) 대상 확대
장애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2만원 인상(5~6만원 → +2만원) 장애인 활동지원 대상 확대(장애 1 → 2등급)
다문화가족 이탈주민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문화가족 지원 예산 9.4% 확대(871 → 953억원) 북한이탈주민 초기 정착금 100만원 인상(600 → 700만원)
농어업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지연금 가입대상 20% 이상 확대(190 → 237억원) 농어업 재해보험 대상품목 62 → 71개로 확대
장병 국가유공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병등급 15% 인상(월 9.8 → 11.2만원) 무공영예수당·참전명예수당 월 2만원 인상

④ 폭력·재해로부터 안전한 사회 조성

☞ 성폭력, 학교폭력에 대한「예방-신속대처-사후조치」강화

* 예산('12 → '13년): 성폭력(2,631 → 4,055억원), 학교 폭력(1,849 → 2,957억원)

	예방	신속대처	사후조치
성폭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찰 전담조직 설치 경찰 등 증원(1,259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치추적시스템 보강 이동방법 CCTV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피해자 지원시설 아동지킴이 확대
학교 폭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교전담 경찰관 증원 비행예방센터 증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어린이안전 CCTV 확대 경찰 대응능력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소년 정신보건 센터 정신보건상담소 신설

☞ 재해·먹거리·교통 안전 강화 및 국방력·국격제고(브랜드 ODA 육성 등) 지원

(3) 경제체질을 탈바꿈하는 「튼튼 예산」

■ 성장동력 확충, 글로벌 인재양성 등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구축하고, 우리경제 전통·취약부문의 체질을 강화

① (미래성장동력 확충) 창조·선도적 R&D, 서비

스산업 등 투자

- ☞ 신성장동력 R&D 3.5조원, R&D기술 사업화 2.3조원 지원
- ☞ 녹색성장 투자에 21.3조원 지원, 세일가스 등 신에너지 개발
- ☞ 문화펀드 출자(문화계정 신규 400억원, 영화계정 100억원), 한류 확산(K-Pop 공연장), 글로벌 제약 M&A 펀드 조성 등 서비스산업 육성

② (글로벌 인재양성) 대학 경쟁력 강화 및 후진학 생태계 조성

- ☞ 글로벌 연구역량강화 투자 확대(930억원) 등 대학 경쟁력 강화
- ☞ 산학협력선도대학(LINC) 지원 확대(1,680 → 2,169억원) 및 선취업 후진학 지원 예산* 2.5배 확대

* 일터 기반의 평생학습중심대학(15→53억원), 사이버대 확대(4 → 7개교) 등

③ (전통·취약부문 체질강화) 뿌리산업·소상공인·가계 등 역량 강화

- ☞ 섬유·디자인·금형 등 뿌리산업의 첨단화·생산성 제고 지원
- ☞ 소상공인 계정 신설(1.1조원) 등 소상공인 경쟁력 제고
- ☞ FTA 보완대책 지원규모 확대(2.1 → 2.5조원) 등 농어업 경쟁력 강화
- ☞ 주택금융공사 출자(1,200억원), 모기지론 금리 인하(최대 1%p) 등 가계부채 연착륙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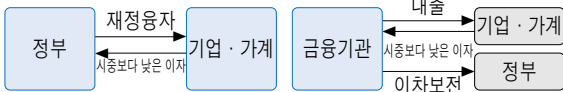
(4) 재정의 균사를 뺀 「알뜰 예산」

■ 재정운용방식 개선, 세출구조조정 추진으로 추가 가용재원 확보

① (재정운용방식 개선) 용자지출 6.7조원(기존 3.5조원, 신규 3.2조원)의 이차보전 방식 지원

재정용자지출

이차보전 방식



☞ 기존 재정용자지출 3.5조원의 이차보전 전환을 통해 확보한 가용재원은 경기대응·민생안정·지방지원에 중점 투자

분야	금액	활용 분야
경기대응	1.5조원	- 지역 SOC 투자, 산업·중소기업 지원
민생안정	0.7조원	- 일자리, 취약계층, 가계부채 안정 지원
지방지원	1.3조원	- 취득세를 인하, 보육으로 인한 지방부담 완화

② (세출구조조정) 3대 유형, 8대 영역 구조조정으로 3.7조원 수준 절감

- ☞ 집행부진, 성과미흡, 외부지적 사업에 대해 2.2조원 수준 절감
- ☞ R&D, 보조금, 국방 분야 등 8대 영역에 대해 1.5조원 수준 절감

II. 2012~2016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주요 내용

(1) 기본방향

- 국내외 경제 불확실성 및 복지수요 확대 등 늘어나는 재정위험 요인에 대응하여 재정건전화 기조를 견지
- 사회·경제 구조적 과제를 중장기적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재정에서 뒷받침

(2) 중기 재정전망 및 재정운용 목표

- 총지출은 '12~'16년 기간 중 연평균 4.6% 증가하도록 관리
- 균형재정 기조 유지를 위해 총지출 증가율(4.6%)은

총수입 증가율(6.3%)보다 1.7%p 낮게 관리

- 관리재정수지는 '13년에는 균형재정 기조를 유지하고 '14년 이후부터 흑자 규모를 점차 확대하여 '16년 GDP 대비 0.5% 흑자 달성
- 국가채무비율(GDP 대비)은 재정수지 개선에 따라 하락세를 지속 유지하면서 '15년에 30% 이내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

'12~'16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재정총량

(단위: 조원, %)

	'12	'13	'14	'15	'16	연평균 증가율
◇ 총수입	343.5	373.1	396.1	415.2	439.1	6.3
(증가율)	(9.3)	(8.6)	(6.2)	(4.8)	(5.7)	
• 국세	205.8	216.4	238.9	259.1	280.4	8.0
◇ 총지출	325.4	342.5	357.5	373.1	389.7	4.6
(증가율)	(5.3)	(5.3)	(4.4)	(4.4)	(4.4)	
• 의무지출	151.9	160.6	174.0	186.6	201.0	7.3
• 재량지출	173.5	181.9	183.5	186.5	188.7	2.1
◇ 관리재정수지	△14.3	△4.8	1.0	2.2	8.3	
(GDP 대비)	(△1.1)	(△0.3)	(0.1)	(0.1)	(0.5)	
◇ 국가채무	445.2*	464.8	470.6	481.2	487.5	
(GDP 대비)	(34.0)*	(33.2)	(31.4)	(29.9)	(28.3)	

* '12년 전망치 기준 ('12년 예산기준은 445.9조원, 33.3%)

의무지출 전망 및 재량지출 관리계획

- ◇ 의무지출은 '12년 151.9 → '16년 201.0조원으로 증가하여 재정지출의 46.7 → 51.6% 수준까지 확대될 전망
- 의무지출은 '12~'16년 기간 중 연평균 7.3% 증가할 전망이며 이는 같은 기간 총지출 증가율(4.6%)의 1.6배 수준
 - * 지방이전재원, 공적연금, 건강보험 등 지출소요의 빠른 증가가 의무지출 증가율을 높이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
- ◇ 의무지출의 높은 증가율(7.3%)을 감안하여 재정 건전성 유지를 위해 재량지출을 연평균 2.1% 수준으로 관리

(3) 재원배분 방향

- 창의와 상생을 바탕으로 성장잠재력 확충
 - 기술혁신과 창조를 통해 신산업·신시장 기회를 선점하고 중견기업, 서비스 산업 육성 등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강화
 -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고 SOC, 농업 분야의 국가경쟁력을 제고
- 서민·중산층의 삶의 질 향상
 - 일하는 복지·맞춤형 복지를 통해 민생안정을 지원하고 보육·양육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및 교육비 부담 경감을 추진
 - 소외계층의 문화예술 향유기회를 확대하고 환경위해요인 사전 예방 등 환경서비스 질 개선 지원
- 안전하고 품격 있는 사회 구현
 - 강한 군대 육성과 병영생활 기본여건 개선에 중점 투자하고 국제기여 확대, 외교역량 강화 등 국격 제고 뒷받침
 - 기상이변, 사회범죄 등으로부터 모든 국민이 안전

하게 생활할 수 있는 사회기반을 확충

(4) 재정관리시스템 개선

- 재정위험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위해 장기-중기-단기를 연계하는 재정관리시스템을 확립
- 장기적으로 재정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연금, 의료 등 10개 분야에 대해 2060년까지의 재정규모 등 전망 실시('13년)
- 지방재정과 공공기관 재무건전성을 집중적으로 관리하여 잠재적 재정위험요인을 사전 차단
- 자치단체의 무분별한 낭비성 재정지출을 억제하고 지방세의 비과세·감면을 지속적으로 정비
-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제고를 위해 재무리스크 요인을 점검하고 다양한 관리방안을 마련
- 발생주의 기준 국가통합재무제표 작성, 재정통계 개편 등을 통해 재정관리 인프라를 선진화

III. 향후 계획

- 정부는 '2013년 예산안'과 '2012~2016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9.25일(화) 국무회의를 거쳐 10.2일(화)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

2012~2016년 국가재정운용계획

* 본 자료는 2012년 9월 20일 기획재정부 예산실에서 발표한 「2012~2016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전문입니다. <편집자 주>

I.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의의

- 국가재정운용계획은 중장기적 시계에서 재정운용 전략과 재원배분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수립
- 5개년도 단위의 재정계획으로 경제상황과 재정운용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연동 계획을 매년 수정
- '04년 최초 계획수립('04~'08년) 이후 '07년부터 국회에 제출

* 국가재정법 개정('10년)에 따라 국가재정운용계획의 국회 제출 전에 계획의 수립방향에 대해 국회 보고 의무화

- '12년은 재정지출을 의무·재량지출로 구분하여 지출성격별로 전망근거, 관리계획 등을 제시

* 이와 함께 공기업·준정부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첨부서류)을 국회에 제출하는 등 재정건전성 관리를 더욱 강화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절차

- ◇ 기획재정부는 각 부처에 '12~'16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지침 통보('11년말)
- 각 부처는 부처별 중기사업계획을 기획재정부에 제출('12. 1월)
- ◇ 복지·교육 등 분야별 민·관 전문가로 구성된 작업반을 구성하여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작업 추진('12. 2월~)
- ◇ 민·관 전문가가 참여하는 총괄·총량, 보건·

복지, 교육 등 분야별 공개토론회 개최(8개 분야, '12. 6월)

- ◇ 재정정책자문회의 개최를 통해 민간전문가, 자치단체 및 각 부처의 의견수렴('12. 9월)
- ◇ 국무회의 의결 후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12. 10. 2일까지)

참고 1 국가재정운용계획의 발전과정

- 정부는 '82년부터 중기재정계획을 작성
 - 중기재정계획은 개략적인 재정 투자방향을 제시하고 예산 편성시 재정당국의 내부 참고자료로만 활용
- '04년부터 중장기적 시계에서의 전략적 재정운용을 위해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최초로 수립하고 '07년부터 법적 제도화
 - 경제·재정여건을 전망하여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등 5년단위 재정총량 관리목표를 설정하고 12대 분야별 재정투자계획을 제시
 - 국가재정법을 제정하여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및 국회제출을 의무화('07년~)
- 국가재정운용계획의 포괄범위를 확대하고 실효성을 강화
 - 종래 일반회계 등 예산 중심에서 예산과 기금을 모

두 포함하는 총지출 기준으로 작성

- 계획 수립과정에서 관계부처, 자치단체, 전문가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폭 넓게 수렴하여 계획의 전문성·투명성을 제고
- 국가재정운용계획이 제시하는 자원배분 우선순위에 입각하여 재정소요를 분석하고 단년도 예산편성의 기본 틀로 활용

국가재정운용계획의 특징

• 목적	투자방향+총량목표+구체적인 자원배분계획
• 실효성	단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의 편성틀로 활용
• 수립방식	관계부처, 자치단체, 전문가 등 관계자의 폭넓은 참여
• 법적 근거	국가재정법(국회제출 의무화)

참고 2 '11~'1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의 특징

- 재정총량 측면에서는 재정건전성을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조기 복원한다는 목표를 제시
- 관리재정수지는 재정건전화 노력으로 '13년 균형을 달성하고 이후 흑자기조를 유지
 - 이를 위해 계획기간 중 재정수입은 연평균 7.2%, 재정지출은 연평균 4.8%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
- 국가채무비율(GDP 대비)은 재정수지 개선 등에 따라 '11년 35.1%에서 지속적으로 하락
- 자원배분 측면에서는 서민생활 안정과 지속성장을 위한 미래 대비 투자를 지원하는 것이 주된 내용

'11~'15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재정총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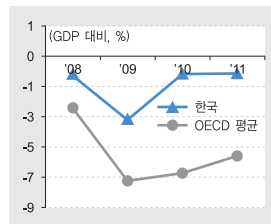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연평균
재정수입(조원)	314.4	343.5	375.7	395.8	415.3	7.2
(증가율, %)	(8.1)	(9.3)	(9.4)	(5.3)	(4.9)	
• 국세수입(조원)	187.6	205.8	224.2	242.6	262.3	
재정지출(조원)	309.1	325.4	341.9	357.5	373.1	4.8
(증가율, %)	(5.5)	(5.3)	(5.1)	(4.6)	(4.4)	
관리재정수지(조원)	△25.0	△14.3	0.2	3.1	5.6	
(GDP 대비, %)	(△2.0)	(△1.1)	(0.0)	(0.2)	(0.3)	
국가채무(조원)	435.5	445.9	460.0	466.4	471.6	
(GDP 대비, %)	(35.1)	(33.3)	(31.3)	(29.6)	(27.9)	

II. 재정운용의 성과와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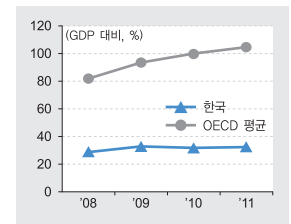
1 재정운용 성과

- 글로벌 금융위기('08년) 극복 이후 지출통제 강화, 세수실적 호조 등에 힘입어 재정건전성이 예상보다 빠르게 개선
 - * '10년부터 재정지출 증가율을 재정수입 증가율보다 낮은 수준으로 관리
- 주요 선진국과 비교하더라도 재정건전성이 양호한 모습
 - * 재정수지(%), '09 → '12: (한국) △4.1 → △11, (OECD 평균) △8.1 → △5.3

재정수지 실적



국가채무 실적



- 최근 주요국의 신용등급이 하락하는 추세에서도 건전한 재정을 바탕으로 3개 신용평가사가 우리 신용등급을 이례적으로 상향

* (무디스, 8.28일) A1 → Aa3, (피치, 9.6일) A+ → AA-, (S&P, 9.14일) A → A+

- IMF 등 국제기구도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와 노력을 높이 평가

- 재정건전성을 강화하면서도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적극 추진
- 일자리 확충, 맞춤형 복지 · 일하는 복지, 교육비 부담 경감 등 서민생활 안정 지원
- 녹색성장, 신성장동력 확충, 국제제고 등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강화

② 향후 과제

- 중장기 재정위험을 감안하여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필요
- 낮은 출산율로 인해 생산가능인구가 감소('17년)하고 노인인구 비중이 증가하여 연금 · 의료 분야 지출이 급격히 상승할 전망
 - * 생산가능인구 전망(만명): ('12)3,656 → ('30)3,289 → ('60) 2,187
 - * 노인 비중: ('12) 11.8% → ('40) 32.3% → ('60) 40.1%
- 글로벌 재정위기 등 위기 상황의 상시화 · 장기화 가능성과 고령화, 통일 등에 대비하여 충분한 재정 여력 확보 필요
- 장기적 · 구조적 저성장 국면에 대응하기 위해 긴 호흡으로 중장기 시계에서 경제체질을 개선하는 재정운용 추진
- 생산성 저하, 노동공급 둔화 등으로 잠재성장률 하락이 예상되고 글로벌 경쟁 심화로 추격형 성장전략은 한계에 봉착
 - * GDP 성장률(%): ('71~'79) 8.3 → ('80~'89) 7.7 → ('90~'99) 6.3 → ('00~'09) 4.4
- 지속적인 기술 혁신, 인적자원의 고도화 등 만성적 인력부족 해소와 선도기술 개발을 위한 재정의 뒷받침이 요구

- 서민 · 중산층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민생안정을 지원하고 부문간 격차 해소 노력도 강화할 필요
- 소득 · 고용지표 호전에도 불구하고 서민생활 체감 개선이 미흡하고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 등 소득 분배 악화요인 상존
 - * 소득 5분위배율(2/4분위): ('04)4.89 ('09)5.16 ('10)4.96 ('11)4.89 ('12)4.76
 - * 취업자 증감(만명): ('04)41.8 ('09)△7.2 ('10)32.3 ('11)41.5 ('12.1/4)46.7 ('12.2/4)43.1
- 일자리 창출 및 맞춤형 복지 등으로 복지체감도를 제고하고 안전한 사회 등 선진국형 생활여건 조성이 필요

III. '12~'16년 경제 · 재정운용여건

① 경제여건

세계경제 여건

- (2012년) 유럽 재정위기의 여파가 실물경제로 확산되면서 전반적으로 성장세가 약화되고 하방위험이 확대
- 선진국은 유로지역 경기침체, 미국의 회복속도 제약 등으로 경기회복세가 부진
 - EU · ECB 등 유럽 정책당국과 국제기구의 정책 대응에 따라 불확실성 완화 정도와 시기가 좌우될 전망
- 중국 등 신흥국도 글로벌 경기 약화에 따라 수출을 중심으로 성장세 둔화
- (2013년 이후) 완만한 회복 흐름을 보이겠으나 당분간 유로존 불안, 선진국 재정긴축 등의 하방위험도 상존
- 미국 등 선진국 경기가 완만하게 개선되고 중국 등 신흥국 성장세도 점차 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될 전망
- 다만, 글로벌 재정위기 해소과정에서의 선진국 재

정진축 등은 경기회복세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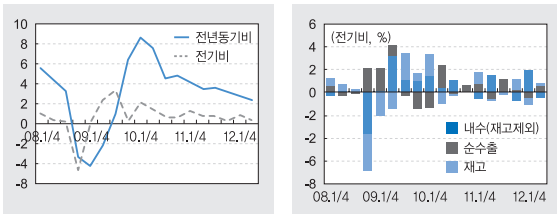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 , IMF, '12.7월)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세계	3.9	3.5	3.9	4.4	4.5	4.6
- 선진국	1.6	1.4	1.9	2.4	2.6	2.7
- 신흥국	6.2	5.6	5.9	6.2	6.3	6.3

국내경제 여건

- (2012년) 유럽 재정위기 등 대외여건 악화로 하방 위험 증대
- 글로벌 경기 침체 등으로 수출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불확실성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으로 내수도 둔화
- 전반적으로 경기가 바닥을 다져가는 모습이나, 대외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회복세가 지연

GDP 성장률 추이 내수 · 순수출의 성장기여도



- (2013년 이후) 세계경제가 점차 개선되면서 국내 경제도 회복세를 보일 전망
- 글로벌 수요 회복에 따라 수출이 점차 개선되고 불확실성 완화로 소비 · 투자 등 내수도 증가세를 보일 전망
- 인구증가세 둔화에도 불구하고 여성 · 고령층 경제 활동 참가가 확대됨에 따라 노동공급 둔화가 완화될 전망

- 서비스산업 선진화, 신성장동력 확충, FTA 확대 등의 정책효과가 가시화되면서 성장세 회복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

② 재정운용여건

재정수입

- (국세수입) '12~'16년 기간 중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국세수입도 지속 증가할 전망
- 경기회복 지연으로 '13년 국세 증가율은 다소 둔화될 전망이나 '14년 이후부터는 경기가 정상화되면서 예년 증가율을 회복
- 다만, '12년, '13년 성장 회복세 지연에 따라 전반적으로 국세수입은 '11~'15년 계획보다는 감소할 전망
- (세외수입) '12~'16년 기간 중 세외수입은 점차 감소할 전망
- '13년 이후 정부 보유지분 매각수입 감소 등의 영향으로 세외수입은 점진적으로 감소할 전망
- 세종시 이전에 따른 유희청사 매각, 미수채권 회수율 제고 등의 노력을 통해 '11~'15년 계획보다는 다소 증가할 전망

- (기금수입) '12~'16년 기간 중 기금수입은 점차 증가할 전망
- 가입자 증가, 임금상승 등에 따른 사회보장성기금 수입 증가로 기금 수입은 지속 증가
- 다만, 부동산 시장 침체 장기화에 따른 국공유 부동산 등 매각가치 하락 위험요인도 상존

재정지출

- (의무지출) 4대 공적연금, 지방이전재원 등 의무지출 수요가 확대될 전망
- 고령화, 연금제도 성숙 등으로 노후소득 및 건강보

장에 대한 재정소요가 지속 증가

- 내국세의 일정 비율을 교부하는 지방이전재원(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소요는 내국세 증가에 따라 확대

- **(새로운 지출소요)** 사회복지 수요, 경기둔화 대응 등에 따른 지출확대 요구도 지속될 전망
- 복지 기대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항구적 재정부담을 유발하는 신규제도 도입 요구가 확대
- 글로벌 재정위기로 위축된 내수기반을 확대하고 지속 성장 기반 강화를 위한 투자확대 필요성이 제기

'12~'16년 부처 증기요구 규모

- ◇ 각 부처에서 요구한 '12~'16년 중기사업계획 지출규모 증가율은 연평균 7.2% 수준
- '11~'15년 계획상 재정지출 증가율 4.8%를 크게 상회

'11~'15년 계획 대비 '12~'16년 부처요구(조원)

	'11	'12	'13	'14	'15	'16	증가율
• '11~'15년 계획	309.1	325.4	341.9	357.5	373.1	391.0	4.8%
<계획대비 추가요구>			+23.4	+30.9	+33.8	+38.1	126.1
• '12~'16년 부처요구	-	325.4	365.3	388.4	406.9	429.1	7.2%

IV. '12~'16년 재정운용방향

1 재정운용 기본방향

기본방향

- ◇ 대내외 재정위험 요인에 대응하여 재정건전화 기조 견지
- ◇ '성숙한 선진 일류국가 건설'을 재정에서 적극 뒷받침

- 국내외 경제 불확실성 및 복지수요 확대 등 늘어나는 재정위험 요인에 대응하여 재정건전화 기조를 견지
- 위기의 상시화·장기화에 대비하여 충분한 재정여력(fiscal space)을 확보할 필요
 - * (스페인 사례): 국가채무비율이 '07년 36%에서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11년 68%로 크게 상승하여 재정위기에 봉착
- 저출산·고령화, 통일비용 등 경제·사회구조 변화에 대응하여 잠재적인 재정위험 관리 강화
 - * (고령화에 따른 복지지출 비율, 조세연: (10년) 6.0 → (50년) 17.8%(조세연)
 - * (통일비용, 조세연): 10년간 연 GDP의 7~12% 소요
- 사회·경제 구조적 과제를 중장기적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재정에서 뒷받침
- 우리 경제의 질적 도약을 주도할 수 있도록 성장기반을 구축하고 중견기업 육성 등 경쟁력 있는 기업 생태계를 조성
- 100세 시대 진입에 대비한 사회·경제체제를 구축하고 맞춤형 복지서비스, 일과 복지 연계 강화 등으로 우리 사회의 이종구조 해소
- 재해·재난 및 사회범죄로부터의 안전, 일과 가정의 조화, 건강한 생활환경 등 선진형 생활여건 조성

2 중기 재정전망 및 재정운용 목표

재정수입

- 재정수입은 '12~'16년 기간 중 연평균 6.3% 수준 증가할 전망
- 국세수입은 경제성장에 따라 연평균 8.0% 증가
- 세외수입은 정부 보유지분 매각이 '15년에 마무리 되면서 '12년 28.3조원에서 '16년 26.1조원으로 감소
- 기금수입은 사회보장성기금 수입 증가 등으로 연평균 4.9% 증가

중기 재정수입 전망(조원, %)

	'12	'13	'14	'15	'16	연평균 증가율
■ 재정수입 (증가율)	343.5 (9.3)	373.1 (8.6)	396.1 (6.2)	415.2 (4.8)	439.1 (5.7)	6.3
• 국세수입	205.8	216.4	238.9	259.1	280.4	8.0
• 세외수입	28.3	37.4	33.6	26.7	26.1	△2.0
• 기금수입	109.5	119.3	123.6	129.5	132.6	4.9

- 조세부담률과 국민부담률은 '13년 이후 점진적으로 상승할 전망
- 조세부담률은 '12~'16년 기간 중 0.7%p(19.8% → 20.5%) 상승하고 국민부담률은 1.0%p(26.0% → 27.0%) 증가 예상

조세부담률 및 국민부담률 전망(%)

	'12	'13	'14	'15	'16
■ 조세부담률	19.8	19.8	20.2	20.4	20.5
■ 국민부담률	26.0	26.1	26.6	26.8	27.0

참고 세입기반 확충방안

- 조세감면제도의 효율성·공평성 제고를 위해 지원 목적을 달성하였거나 실효성이 미미한 비과세·감면을 지속적으로 정비
- 금융소득 비과세·감면제도를 정비하고 과도한 조세감면을 방지하기 위해 대기업의 최저한세율 상향 조정
- 조세지출 성과관리 제도(성과목표관리 등)를 도입하고 재정지출과 연계를 강화
-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해 세원투명성 제고 등 과세기반 확대
- 성실신고확인제도, 전자세금계산서,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등 세원투명성 제고방안의 정착·내실화 추진
- 주식양도차익·파생상품 거래 등에 대한 과세제도 선진화를 통한 공평과세 및 세입기반 확충 노력 지속
- 면세유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등 수급관리를 강화하고 부정 유통시 등록취소 등 처벌 강화
- 국유재산 관리 강화 및 제도개선 등을 통해 세입확충 지속 추진
- 보존할 필요성이 낮은 국유지 적극 매각 및 부적절한 무상 사용·양여를 제한
- 국가채권 회수율 제고 등 각 부처의 국가채권 관리를 평가하고 연체 채권 회수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
- 정부출자 공기업의 배당을 적정 수준으로 유도

재정지출

가. 총괄

- 재정지출은 '12~'16년 기간 중 연평균 4.6% 증가하도록 관리
- 균형재정 기조 유지를 위해 재정지출 증가율(4.6%)

은 재정수입 증가율(6.3%)보다 1.7%p 낮게 관리

- 예산지출은 연평균 4.8% 증가하고 기금지출은 연평균 4.2% 증가할 전망
- 경기회복세가 지연되는 '13년 재정지출 증가율은 5.3%를 유지하고 '14년 이후 경기회복에 따라 증가율을 4% 중반대로 관리
- 의무지출은 7.3% 증가하고 재량지출은 2.1% 증가할 전망
- 의무지출은 '12년 151.9조원에서 '16년 201.0조원으로 증가하여 재정지출의 51.6% 수준까지 확대될 전망

중기 재정지출 계획(조원, %)

	'12	'13	'14	'15	'16	연평균 증가율
■ 재정지출	325.4	342.5	357.5	373.1	389.7	4.6
(증가율)	(5.3)	(5.3)	(4.4)	(4.4)	(4.4)	
① 예산·기금별 구분						
• 예산지출	228.1	242.4	252.7	263.5	275.0	4.8
(비중)	(70.1)	(70.8)	(70.7)	(70.6)	(70.6)	
• 기금지출	97.3	100.1	104.8	109.7	114.7	4.2
(비중)	(29.9)	(29.2)	(29.3)	(29.4)	(29.4)	
② 지출성격별 구분						
• 의무지출	151.9	160.6	174.0	186.6	201.0	7.3
(비중)	(46.7)	(46.9)	(48.7)	(50.0)	(51.6)	
• 재량지출	173.5	181.9	183.5	186.5	188.7	2.1
(비중)	(53.3)	(53.1)	(51.3)	(50.0)	(48.4)	

나. 의무지출

- 의무지출은 '12~'16년 기간 중 연평균 7.3% 증가할 전망이며 이는 같은 기간 재정지출 증가율(4.6%)의 1.6배 수준

- 지방이전재원, 공적연금, 건강보험 등 지출소요의 빠른 증가가 의무지출 증가율을 높이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

* 전체 재정지출에서 차지하는 의무지출 비중은 지방이전재원(22.0%), 복지(18.1%), 이자지출(5.3%), 기타 의무지출(1.3%) 순('12년 기준)

주요 의무지출 산출내역

- (지방이전재원) 지방교부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은 내국세 수입 증가 전망에 따라 연평균 8.8% 증가할 전망
- (복지분야 법정지출) 노인인구, 연금수급자 증가 등에 따라 연평균 7.5% 증가할 전망
 - 특히, 공적연금(10.8%), 장기요양보험(6.8%), 기초노령연금(7.7%), 건강보험(8.8%) 등이 빠른 수준으로 증가
- (이자지출) 국가채무 안정화, 금리 하락 등의 영향으로 연평균 0.6% 증가할 전망

의무지출 유형별 전망(조원, %)

	'12	'13	'14	'15	'16	연평균 증가율
• 지방이전재원	71.5	76.6	84.9	92.3	100.0	8.8
• 복지분야 법정지출	59.0	62.9	67.4	72.5	78.7	7.5
• 이자지출	17.3	16.9	17.4	17.6	17.8	0.6
• 기타 의무지출	4.1	4.1	4.2	4.3	4.5	2.4

다. 재량지출

- 재량지출은 '12~'16년 기간 중 연평균 2.1% 수준으로 관리
- 의무지출의 높은 증가율(7.3%)을 감안하여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해 재량지출을 낮은 수준으로 관리

- 재량지출 비중이 높은 경제 분야는 재정투자를 내실화
 - R&D는 민간투자가 어려운 기초·원천기술, 생명·녹색기술 등에 집중 투자
 - SOC는 그간 축적된 스톡수준을 감안하여 신설보다는 기존 시설의 효용성·안전성 제고에 중점
 - * 재해예방, 교통시설 안전 등 국민안전 관련 분야에 대한 투자를 지속 확대
 - 산업·중소기업은 기술개발·인적자원 고도화 등 체질개선을 위한 투자를 강화
- 사회 분야는 삶의 질 개선을 위한 투자를 확대하되, 지출효율화 노력도 병행
 - 교육은 대학등록금 부담 완화 등의 지원을 확대하는 가운데 대학 교육역량 강화, 구조조정 등 지속 추진
 - 일과 복지의 연계를 통한 자립지원을 강화하면서 사회복지통합망 고도화 등 전달체계의 지속 개선으로 복지서비스 누락 방지
 - 한류 등 문화역량을 강화하고 환경오염 등으로부터 국민의 건강보호를 지원

참고 재량지출 관리계획

◇ 사전기획-편성-집행·사후평가의 사업 단계별 관리

- 기획단계부터 사업관리를 강화하여 낭비적 요인을 사전에 차단
 - 예타 면제신청을 의무화하고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제도를 R&D 및 복지 등 기타 재정부문까지 확대
 - 대규모 재정소요가 수반되는 중장기 계획은 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재정소요 및 재원대책을 철저히 관리

- 예산 반영 전 자치단체·민간과의 역할분담 등 지원 필요성 점검
- 집행부진 등 재량지출에 대해 전면적인 세출구조조정
 - 연례적 집행부진 사업, 국회 등이 예산낭비 사례로 지적한 사업은 부진사유, 구조조정 필요성 등을 검토하여 예산 축소
 - 그동안 지속적으로 예산이 증가해 온 R&D·보조금 등에 대해 유사사업 통·폐합, 이불용 최소화 등 지출효율화 추진
- 사후평가 결과를 예산에 반영하여 성과중심 재정운용을 강화
 -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미흡' 이하인 사업은 원칙적으로 전년 대비 10% 이상 예산 삭감
 - 매년 전체 보조사업의 1/3씩 평가하고 재정지원 타당성이 미흡한 사업은 폐지·감액 등 구조조정
 - 유사·중복사업, 국회 등 외부 지적사업 등에 대한 심층평가를 강화하여 중복투자 방지 및 지출효율화 추진

참고 분야별 지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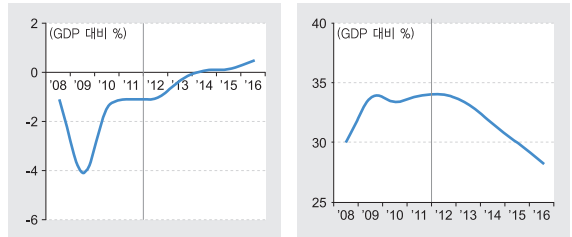
(단위: 조원, %)

구 분	'12	'13	'14	'15	'16	'12~'16 연평균
총지출	325.4 (5.3)	342.5 (5.3)	357.5 (4.4)	373.1 (4.4)	389.7 (4.4)	4.6
1. 보건·복지·고용	92.6	97.1	102.1	107.2	112.9	5.1
2. 교육 (지방교육교부금)	45.5 (38.4)	49.1 (41.0)	53.2 (45.3)	56.7 (49.1)	59.9 (53.1)	7.1 (8.4)
3. 문화·체육·관광	4.6	4.8	4.8	4.9	5.1	2.5
4. 환경	5.9	6.3	6.4	6.5	6.6	2.5
5. R&D	16.0	16.9	17.5	18.2	19.5	5.0
6. 산업·중소기업·에너지	15.1	15.7	15.3	15.3	15.4	0.5
7. SOC	23.1	23.9	23.0	22.7	22.7	△0.5
8. 농림·수산·식품	18.1	18.3	18.5	18.5	18.6	0.6
9. 국방(일반회계)	33.0	34.6	36.2	37.8	39.4	4.5
10. 외교·통일	3.9	4.1	4.4	4.7	5.0	5.9
11. 공공질서·안전	14.5	15.0	15.7	16.5	17.3	4.5
12. 일반공공행정 (지방교부세)	55.1 (33.0)	57.3 (35.5)	61.6 (39.6)	65.7 (43.1)	70.0 (46.9)	6.1 (9.2)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 관리재정수지는 점진적으로 개선되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
 - '13년에는 적자 규모를 GDP 대비 △0.3%로 축소 ('12년 △1.1%)하여 균형재정 기조 유지
 - '14년 이후부터는 관리재정수지 흑자 규모를 점차 확대하여 '16년 +0.5% 흑자를 달성
 - ※ 사회보장성 기금을 포함한 통합재정수지는 계획기간 중 지속 흑자를 보이면서 '16년 2.9%(GDP 대비)까지 개선될 전망
- 국가채무비율(GDP 대비)은 관리재정수지 개선에 따라 점진적으로 하락할 전망
 - '12년 이후 하락세를 지속 유지하면서 '15년에 30% 이내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

관리재정수지 추이 및 전망 국가채무비율 추이 및 전망



주: '08~'11년은 결산, '12~'16년은 전망

참고 '12~'16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의 모습

	'11~'15년 계획	'12~'16년 계획
경제성장	• 세계경제 회복에 따른 완만한 성장세	• 유럽 재정위기 재부각 등으로 성장을 하향 가능성
수입지출	• 재정수입 증가율 7.2% • 재정지출 증가율 4.8%	• 재정수입 증가율 6.3% • 재정지출 증가율 4.6%
재정목표	• '13년 균형재정 회복 • '14년 이후 흑자기조 유지	• 균형재정 기조 유지 • '14년 이후 흑자기조 확대

(단위: 조원, %)

	'12	'13	'14	'15	'16	연평균 증가율
◇ 재정수입	343.5	373.1	396.1	415.2	439.1	6.3
(증가율)	(9.3)	(8.6)	(6.2)	(4.8)	(5.7)	
◇ 재정지출	325.4	342.5	357.5	373.1	389.7	4.6
(증가율)	(5.3)	(5.3)	(4.4)	(4.4)	(4.4)	
◇ 관리재정수지	△14.3	△4.8	1.0	2.2	8.3	
(GDP 대비)	(△1.1)	(△0.3)	(0.1)	(0.1)	(0.5)	
◇ 통합재정수지	18.1	30.6	38.6	42.1	49.4	
(GDP 대비)	(1.4)	(2.2)	(2.6)	(2.6)	(2.9)	
◇ 국가채무	445.2*	464.8	470.6	481.2	487.5	
(GDP 대비)	(34.0*)	(33.2)	(31.4)	(29.9)	(28.3)	
◇ 조세부담률	19.8	19.8	20.2	20.4	20.5	
• 국민부담률	26.0	26.1	26.6	26.8	27.0	

* '12년 전망치 기준('12년 예산기준은 445.9조원, 33.3%)

V. 분야별 재원배분방향

창의와 상생을 바탕으로 성장잠재력 확충

- 기술혁신과 창조를 통해 신산업·신시장 기회를 선점
 - R&D 투자는 선택과 집중으로 추격형에서 선도형으로 전환하고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육성으로 창의형 성장기반 확립
 - 성장과 환경,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녹색 기술·에너지 등 성장 전략 부문 중점 육성
- 중장기적 경제·사회구조 변화에 대응하여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강화
 - 중견기업 육성('16년까지 3,000개 이상), 소상공인·농업 경쟁력 강화 및 지역균형발전 등 동반성장 지원
 - 우수한 인적자본을 바탕으로 우리나라가 비교우위를 가질 수 있는 의료·교육·문화콘텐츠·관광 등 서비스 산업 육성
-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고 SOC, 농업 분야의 국가경쟁력을 제고
 -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산업육성을 지원하고 해외 자원개발 성과를 제고
 - 항만, 산업단지 도로 등 국가물류경쟁력 제고를 위한 투자를 확대하고 생명산업 등 新 성장산업을 적극 육성

재원투자계획 (조원, %)

구 분	'12	'13	'16	연평균
• R&D	16.0	16.9	19.5	5.0
• 산업·중소기업·에너지	15.1	15.7	15.4	0.5
• SOC	23.1	23.9	22.7	△0.5
• 농림·수산·식품	18.1	18.3	18.6	0.6

서민·중산층의 삶의 질 향상

- 일하는 복지·맞춤형 복지를 통해 민생안정 지원
 - 민간 부문의 고용창출 환경을 조성하고 계층별 맞춤형 일자리 확충 및 저소득층 근로 인센티브 확대에 중점
 - 수혜대상별·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서비스 확충, 복지전달체계 개선 등을 통해 국민의 체감도를 제고
- 보육·양육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소외계층에 대한 교육비 부담을 경감
 - 0~2세 보육 및 양육수당 지원 확대를 통해 보육부담을 경감
 - 국가장학금, 든든자금 지원 확대 등 대학생 학비 부담을 완화하고 대학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
- 문화복지 실현 및 환경서비스 질 개선 지원
 - 소외계층의 문화예술 향유기회 확대, 생활체육 육성 등을 통해 문화복지 수혜를 확대하고 국민 체력을 증진
 - 온실가스, 수질오염 등 환경위해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고 환경성 질환으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

재원투자계획 (조원, %)

구 분	'12	'13	'16	연평균
• 보건·복지·고용	92.6	97.1	112.9	5.1
• 교육	45.5	49.1	59.9	7.1
• 문화·체육·관광	4.6	4.8	5.1	2.5
• 환경	5.9	6.3	6.6	2.5

안전하고 품격 있는 사회 구현

- 저작권 전환 대비 핵심능력을 확보하고 장병복지 향상 및 병영문화를 개선하는 데 중점 투자
 - 연합지휘통제체계 구축 등 한국군 독자적 정보능

력을 구비하고 국방개혁 추진을 뒷받침하여 강한 군대를 육성

- 사병봉급 인상 및 피복·급식 등 병영생활 기본여건 개선을 위한 투자를 확대

■ 기상이변, 사회범죄 등으로부터 모든 국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사회기반을 확충

- 재해·재난, 먹을거리 위해보부터 안전한 선진국형 생활여건 조성
- 학교폭력, 성폭력 근절을 위해 예방체계를 강화하고 통합신고시스템 등 인프라 확충

■ 국제기여 확대, 외교역량 강화 등을 통해 국격을 제고하고 선진 일류국가를 실현

- 한류 등 우리 문화 확산, 파급효과가 큰 브랜드 ODA 확대, 외교역량 강화 등 국가위상 제고 노력 강화
- 북한이탈주민의 조기 정착 및 자립·자활을 지원하고 통일에 대한 주변국의 지지를 확보하는 데 외교역량 집중

재원투자계획 (조원, %)

구 분	'12	'13	'16	연평균
• 국방	33.0	34.6	39.4	4.5
• 외교·통일	3.9	4.1	5.0	5.9
• 공공질서·안전	14.5	15.0	17.3	4.5
• 일반공공행정	55.1	57.3	70.0	6.1
(※ 교부세 제외시)	(22.1)	(21.8)	(23.1)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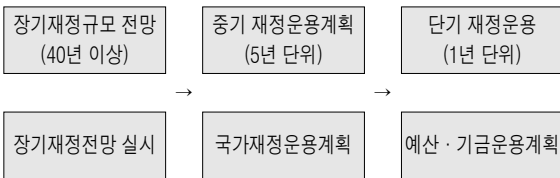
참고 지표로 본 5년 후의 모습

분야	지 표	'12	'16
보건·복지·고용	• 기초수급자 자활성공률(%)	24.0	→ 27.0
	• 공공보육시설 이용 영유아 수(천명)	192	→ 400
	• 고용률(15~64세, %)	64.1	→ 67.1
교육	• 10인 미만 사업장 고용보험 가입자(만명)	309	→ 405
	• 대학생 취업률(%)	59.5	→ 60.0
	• 3~5세 유아 취원율(%)	87.3	→ 93.7
문화·체육·관광	• 초중등 교원 1인당 학생 수(명)	20	→ 17
	• 문화콘텐츠산업 매출규모(조원)	89	→ 142
	• 외래관광객 수(만명)	1,100	→ 1,500
환경	• 생활체육참여율(주 2회 이상, %)	44.0	→ 50.0
	• 전국 좋은물 비율(%)	82.0	→ 85.0
	• 생활폐기물 재활용률(%)	62.0	→ 64.0
R&D	• 환경산업체 해외수출액(조원)	5.0	→ 13.0
	• 기초연구 투자비중(전체 R&D투자 대비, %)	35.2	→ 39.1
	• SCI 게재논문(세계 순위)	11위	→ 10위 이내
산업·중소기업·에너지	• 6대 주요 제조산업 수출액(억불)	2,413	→ 2,933
	• 신산업분야 기술개발(특허출원·등록건수)	640	→ 762
	• 발전설비규모(kW)	7,984	→ 9,870
SOC	• 고속도로 연장(km)	4,048	→ 4,632
	• 고속철도 연장(km)	369	→ 657
	• 하천개수율(%)	64.2	→ 73.1
농림수산식품	• 식량자급률(사료용 제외, %)	54.9	→ 57.0
	• 농식품 수출액(억불)	100	→ 180
	• 배수개선율(천ha, 목표 259천ha)	61	→ 69
국방	• 사병봉급(상병기준, 만원/월)	9.8	→ 17.0
	• 서북도서 요새화 추진율(%)	52	→ 100('15년)
	• 방위력 개선비 비중(%)	30.0	→ 30.8
외교통일	• 남북 상업적거래 교역액(백만불)	1,900	→ 3,000
	• ODA 규모(조원)	1.9	→ 3.0
공공질서 안전	• 국민참여대상재판(건)	513	→ 3,280
	• CCTV 설치개소(누계)	2,800	→ 11,285('15년)
일반공공행정	• U-서비스 만족도(점)	78	→ 83
	• 전자정부 순위	1위	→ 1위

VI. 재정관리시스템 개선

- 재정위험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위해 장기-중기-단기를 연계하는 재정관리시스템을 확립
- 저출산·고령화 등에 따른 복지지출 증가 등 우리나라 장기 재정여건을 분석하여 중-단기 재정운용과 연계
- 이를 위해 장기적으로 재정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10개 분야*에 대해 2060년까지의 재정규모 등 전망 실시(13년)

* 연금(국민·공무원·사학·군인·기초노령), 의료(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고용보험, 산재보험), 교육 등



[참고] OECD 국가의 재정전망 사례

- ◇ OECD 회원국 중 27개국에서 장기재정전망보고서를 작성하고 이 중 23개국은 매년 또는 3~5년 주기로 결과 발표
- (전망기간) 주로 40~50년간의 전망 실시(18개국)
- (전망항목) 연금, 의료 등 인구구조 변화와 관련된 항목

OECD 국가 장기재정전망 실시 현황

작성주기 전망기간	매년	경기(3~5년)	부정기	소계
40년 미만	-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3
40~50년	핀란드,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포르투갈, 영국 등	독일, 스위스 노르웨이, 한국	일본	19
50년 이상	체코, 스웨덴, 덴마크, 미국	-	네덜란드	5
소계	18	6	3	27

- 지방재정과 공공기관 재무건전성을 집중적으로 관리하여 잠재적 재정위험요인을 사전 차단
- 자치단체의 무분별한 낭비성 재정지출을 억제하고 지방세의 비과세·감면을 지속적으로 정비
 - 중앙정부의 자치단체 재정투융자사업 심사* 대상 확대(사업비 300 → 200억원 이상)
 - * 심사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재정투자관리센터 설치를 추진
 - 지방공기업의 무분별한 설립 방지를 위한 사전협의제 도입 추진
 - 지방세 신규 감면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일몰도래 감면 정비를 지속 추진
-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제고를 위해 재무리스크요인을 점검하고 다양한 관리방안을 마련
 - * 공기업 부채(조원): (07) 158 → (09) 239 → (10) 292 → (11) 330
 - * 공공기관 부채(조원): (07) 249 → (09) 342 → (10) 402 → (11) 464
 - 자산 2조원 이상 공기업·준정부기관(41개)의 중장기(5개년) 재무관리계획을 작성하여 국회 제출(12년~)
 - 공공기관 사업(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에 대한 사전 타당성 검증 실시 등 재무건전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
 - 공공기관 경영평가지 부채관리에 대한 평가 비중을 확대하고 부채관리 노력을 정밀 평가
- 발생주의 기준 국가통합재무제표 작성, 재정통계 개편 등을 통해 재정관리 인프라를 선진화
- '11년 결산부터 발생주의 기준 국가통합재무제표를 작성·공표하여 국가 전체 자산·부채의 종합적·체계적인 관리가 가능
 - 국유재산으로 관리되지 않던 사회기반시설, 건설 중인 자산 등을 새롭게 인식함으로써 국가자산의 정합성·투명성 제고
 - 연금충당부채 등 향후 재정지출 가능성이 있는

잠재부채를 인식함으로써 재정위험 관리를 위한
재정 선진화 기반 마련

- 현행 현금주의 기준의 국가채무뿐만 아니라 최신 국제기준에 따라 발생주의 기준의 일반정부 부채 산출 추진
 - 그간 국가채무에서 제외된 미지급금, 예수금 등 발생주의 부채항목 및 비영리공공기관 추가 등을 통해 재정정보 투명성 제고

[참고] 재정통계 개편 주요내용

- ◇ (회계기준) 현금주의에서 발생주의로 전환
- ◇ (정부 포괄범위) 일반정부(일반·특별회계+기금+비영리공공기관) 기준
 - 제도단위* 여부와 시장성 기준** 등에 따라 정부기능을 수행하는 비영리공공기관을 포함
 - * 자율적인 의사결정체계 및 독립적인 자금운용계정 보유
 - ** 원가보상률(판매액÷생산원가)이 50% 이하이면 일반정부, 초과하면 공기업으로 분류
 - 정부와 한은의 재정통계 기준을 일치시키고 지방자치단체도 비영리공공기관을 포함하는 등 중앙정부와 동일한 기준으로 개편

2013년 국세 세입예산(안)

* 본 자료는 2012년 9월 20일 기획재정부 조세분석과에서 발표한 「2013년 국세 세입예산(안)」의 전문입니다. (편집자 주)

1 2013년 국세 세입예산(안)

(1) 2012년 국세수입 전망 및 2013년 국세 세입예산(안)

(단위: 조원, 괄호 안은 증감률, %)

	'12 예산	'12 전망	'12 예산 대비	'13 예산	'12 예산 대비	'12 전망 대비
■ 총국세	205.8	203.3	△2.5 (△1.2)	216.4	10.6 (5.2)	13.1 (6.4)
• 소득세	45.8	45.2	△0.6 (△1.3)	50.6	4.8 (10.5)	5.4 (12.0)
- 근로소득세	20.3	19.0	△1.3 (△6.4)	22.2	1.9 (9.4)	3.2 (16.9)
- 종합소득세	8.7	9.6	0.9 (10.9)	11.2	2.5 (29.1)	1.6 (16.4)
• 법인세	44.5	47.5	3.0 (6.7)	48.0	3.5 (7.7)	0.5 (1.0)
• 부가가치세	56.8	54.1	△2.8 (△4.8)	59.0	2.2 (3.9)	4.9 (9.1)
• 관세	11.6	10.6	△1.0 (△8.8)	11.0	△0.6 (△5.3)	0.4 (3.9)
• 기타	47.0	45.9	△1.1 (△2.3)	47.8	0.8 (1.6)	1.9 (4.0)

① '12년 전망: '12년 예산(205.8조원) 대비 △2.5조원 감소한 203.3조원

'11년 실적(192.4조원) 대비 +10.9조원(+5.7%) 증가

- 유럽 재정위기의 장기화와 세계경제의 동반부진으로 인한 경기회복 지연 등에 따라 예산 대비 다소 부족할 것으로 전망
 - 근로소득세는 원천징수 인하(9.10일 경제활력 제고대책)로 감소(△1.3조원)
 - 종합소득세는 성실신고 등으로 증가(+0.9조원)
 - 법인세는 법인 신고소득 증가 등에 따라 증가(+3.0조원)
 - 부가가치세, 관세는 소비·수입 부진 등으로 감

소(△2.8조원, △1.0조원)

② '13년 예산: '12년 전망(203.3조원) 대비 13.1조원 증가한 216.4조원(+6.4%)

- 세계경제 성장세 회복에 따른 국내경기의 점진적 개선으로 '13년 세입예산은 '12년(+5.7%) 대비 다소 높은 6.4% 수준 증가
 - 소득세는 고용확대 및 점진적 경기회복 등에 따라 증가(+5.4조원)
 - 법인세는 '12년 상반기 영업실적 등을 감안하여 소폭 증가(+0.5조원)
 - 부가가치세, 관세는 소비·수입 회복 등에 따라 증가(+4.9조원, +0.4조원)

(2) 주요 세목별 2012년 세수전망 분석

① 소득세: 45.2조원 ('12년 예산 45.8조원 대비 △0.6조원 감소)

① (근로소득세) 19.0조원('12년 예산 대비 △1.3조원, 6.4%↓)

- 고용확대, 명목임금 상승 등에 따른 증가효과에도 불구하고,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원천징수세액 인하 조치(9.10일)로 감소

* '12년 취업자 수 전망(만명): (당초) 2,444, (수정) 2,466

** '12년 명목임금상승률 전망(%): (당초) 5.5, (수정) 5.8

*** 원천징수 인하 조치로 인한 '12년 세수감: △1.5조원

② (종합소득세) 9.6조원('12년 예산 대비 +0.9조원, 10.9% ↑)

- 성실신고확인제도 시행 등에 따른 사업자 신고 소득 증가로 증가

* 신고 과세표준: ('10귀속) 75조원, ('11귀속) 84조원

② 법인세: 47.5조원('12년 예산 44.5조원 대비 3.0조원 증가)

• 법인 신고소득 증가 등에 따라 예산 대비 증가

* '12월 결산법인 신고 과세표준: ('10귀속) 208조원, ('11귀속) 220조원

③ 부가가치세: 54.1조원('12년 예산 56.8조원 대비 △2.8조원 감소)

• 당초 전망보다 낮은 민간소비·수입액 증가율 등에 따라 감소

* '12년 민간소비증가율 전망(%): (당초) 3.9, (수정) 2.5

** '12년 수입액증가율 전망(%): (당초) 10.5, (수정) 5.0

④ 관세: 10.6조원('12년 예산 11.6조원 대비 △1.0조원 감소)

• 당초 전망보다 낮은 수입액 증가율 등에 따라 감소

* '12년 수입액증가율 전망(%): (당초) 10.5, (수정) 5.0

(3) 주요 세목별 2013년 세입예산 분석

① 소득세: 50.6조원('12년 전망 45.2조원 대비 5.4조원 증가)

① (근로소득세) 22.2조원('12년 전망 대비 +3.2조원, 16.9% ↑)

- 명목임금 상승(6.6%), 고용확대(+31만명) 전망에 따라 증가

- 원천징수 인하 조치로 인해 '12년 전망 대비 +1.0조원 증가효과 발생

* '13년에도 △0.5조원의 추가 세수감이 발생하나 연말정

산 환급액 감소(+1.5조원)로 인해 결과적으로 '12년 전망 대비 +1.0조원 증가

** 원천징수 인하 조치가 없었을 시 세수전망(조원): ('12)20.5 ('13)22.7(10.8% ↑)

② (종합소득세) 11.2조원('12년 전망 대비 +1.6조원, 16.4% ↑)

- '12년 사업소득 증가, 최고세율(38%) 신설효과, 성실신고확인제도 정착 등에 따라 증가

② 법인세: 48.0조원('12년 전망 47.5조원 대비 0.5조원 증가)

• '12년 영업실적 부진으로 신고분 법인세는 감소하나, 금리 상승, 투자세액공제 개선 등 세법개정 효과로 소폭 증가

* 유가증권시장 12월 결산법인 '12상반기 영업이익 증감률(전년 대비, %): △13.9

** 회사채 이자율 전망(3년 만기 AA- 기준, %): ('12) 3.9 → ('13) 4.3

③ 부가가치세: 59.0조원('12년 전망 54.1조원 대비 4.9조원 증가)

• 민간소비 증가(3.6%)와 수입액 증가(10.0%) 등에 따라 증가

④ 관세: 11.0조원('12년 전망 10.6조원 대비 0.4조원 증가)

• 수입액 증가(10.0%) 등에 따라 소폭 증가

2 국민의 조세부담 수준

① 조세부담률: 19.8%('11년) → 19.8%('12년e) → 19.8%('13년e)

• '12년·'13년 조세부담률은 '11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

* '12년 이후 지방세 수입은 최근 10년 평균증가율(7.1%) 유지 가정

OECD 주요국 조세부담률 변동추이

(단위: %)

구분	한국	미국	일본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영국	OECD 평균
'00년	18.8	22.6	17.5	28.4	22.8	30.2	30.2	26.4
'09년	19.7	17.6	15.9	25.7	22.9	29.7	27.6	24.6
변동(%p)	+0.9	△5.0	△1.6	△2.7	+0.1	△0.5	△2.6	△1.8

※ 출처: OECD Revenue Statistics(2011)

* 주별국 조세부담률('09년, %): (대만)12.3 (싱가폴)13.2 (일본)15.9 (중국)17.5

② 국민부담률: 25.9%('11년) → 26.0%('12년e) → 26.1%('13년e)

- 국민부담률은 사회보장부담률의 상승에 따라 점진적으로 증가 예상

참고 '13년 세목별 세입예산(안)

(단위: %)

세목	'12년		'13년 예산	'12예산 대비		'12전망 대비	
	예산	전망		증감액	증감률	증감액	증감률
총국세	2,057,575	2,032,880	2,163,763	106,188	(5.2)	130,883	(6.4)
• 소득세	457,699	451,614	505,950	48,251	(10.5)	54,336	(12.0)
- 근로소득세	203,095	190,166	222,238	19,143	(9.4)	32,072	(16.9)
- 종합소득세	86,596	96,021	111,797	25,201	(29.1)	15,776	(16.4)
• 법인세	445,458	475,451	479,978	34,520	(7.7)	4,527	(1.0)
• 상속증여세	36,879	41,805	48,400	11,521	(31.2)	6,595	(15.8)
• 부가가치세	568,016	540,513	589,893	21,877	(3.9)	49,380	(9.1)
• 개별소비세	60,377	54,234	57,513	△2,865	(△4.7)	3,278	(6.0)
• 증권거래세	42,480	39,565	45,438	2,958	(7.0)	5,873	(14.8)
• 인지세	6,108	6,047	6,584	476	(7.8)	537	(8.9)
• 과년도수입	44,437	57,506	56,445	12,008	(27.0)	△1,061	(△1.8)
◇ 교통에너지환경세	136,863	134,638	130,005	△6,858	(△5.0)	△4,633	(△3.4)
◇ 관세	116,111	105,903	110,010	△6,101	(△5.3)	4,108	(3.9)
◇ 교육세	47,696	46,254	47,409	△287	(△0.6)	1,155	(2.5)
◇ 종합부동산세	10,631	11,050	10,950	319	(3.0)	△100	(△0.9)
◇ 주세	29,481	28,145	30,843	1,362	(4.6)	2,697	(9.6)
◇ 농어촌특별세	55,339	40,155	44,345	△10,994	(△19.9)	4,191	(10.4)

2012년 상반기 중앙정부 재정수지(잠정)

* 본 자료는 2012년 8월 31일 기획재정부 재정관리총괄과에서 발표한 「2012년 상반기 중앙정부 재정수지(잠정)」의 전문입니다. (편집자 주)

■ '12년 상반기 관리대상수지 산출 결과, 전년 동기 대비 10.7조원 악화된 29.9조원 적자 시현

※ 통합재정수지는 11.5조원 적자(전년 동기 대비 9.2조원 악화)

* 관리대상수지(△29.9조원)=통합재정수지(△11.5조원)-사회보장성기금수지(18.4조원)

- 관리대상수지가 전년 동기 대비 악화된 주된 이유는 재정조기집행 강화에 따라 상반기 재정지출이 큰 폭(전년 동기 대비 17.9조원)으로 증가한 데 기인

* 상반기 통합재정지출 집행률(%): '08) 53.1 ('09) 57.7 ('10) 58.5 ('11) 56.1 ('12) 59.3

- 통합재정수입은 조세수입 증가 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 8.8조원 증가한 163.1조원

* 수입증가 내역: 조세수입(+4.7조원), 세외수입(+0.6조원), 사회보장기여금(+3.4조원) 등

- 통합재정지출은 재정조기집행 강화 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 17.9조원 증가한 174.6조원

'12년 상반기 통합재정수지 및 관리대상수지

(단위: 조원, %)

구분	'11년			'12년			증감 (d-b)
	예산 (a)	상반기 (b)	예산대비 (b/a)	예산 (c)	상반기 (d)	예산대비 (d/c)	
A. 통합재정수입	284.8	154.3	54.2	312.5	163.1	52.2	8.8
B. 통합재정지출및순용자	279.5	156.7	56.1	294.3	174.6	59.3	17.9
C. 통합재정수지(A-B)	5.3	△2.3	-	18.1	△11.5	-	△9.2
D. 사회보장성기금수지	30.3	16.8	-	32.4	18.4	-	1.6
E. 관리대상수지(C-D)	△25.0	△19.2	-	△14.3	△29.9	-	△10.7

* 사회보장성기금: 국민연금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고용보험기금

한국 고용의 현주소

- OECD 국가와 주요 고용지표 비교 -

* 본 자료는 2012년 9월 17일 기획재정부 인력정책과에서 발표한 「한국 고용의 현주소」의 전문입니다. <편집자 주>

[요약]

I. OECD 국가와 주요 고용지표 비교

1. 고용총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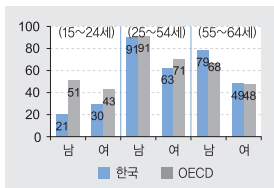
① **(생산가능인구)** OECD 국가 중 생산가능인구(15~64세) 비중(73.2%, '10년)이 가장 높지만, '16년 이후 빠른 속도로 감소할 전망

* '40년 생산가능인구(2010=100): (한)80.2 (미)111.4 (프)100.2 (영)10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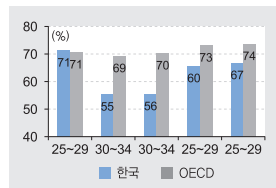
② **(경제활동인구)** '11년 경활참가율(15~64세)은 66.2%로 OECD 국가 중 하위권(OECD 평균 70.6%)

• 청년층의 고학력화와 군입대, 여성의 경력단절 등에 주로 기인

성·연령별 경활참가율



여성 연령별 경활참가율



• 글로벌 금융위기 기간 중 경제활동참가율이 크게

하락하였으나 이후 빠른 수준으로 개선되며 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

* 경활참가율(15~64세, %): ('07)66.2 ('08)66.0 ('09)65.4 ('10)65.8 ('11)66.2

③ **(취업자)** OECD 국가 중 위기 이전('07년)의 취업자 수 수준을 회복한 국가는 15개국이며, 우리나라는 위기 이후 취업자가 81.1만명 증가('08~'11년)해 7번째로 높은 수준

* 취업자 증가 상위 6개국: 멕시코, 터키, 독일, 칠레, 폴란드, 호주

• 신규 취업자 증가 등으로 근속기간 1년 미만의 임금 근로자 비중(37.1%)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

* 근속기간 1년 미만 임금근로자 비중(%): (프)13.4 (영)14.4 (독)14.8 (캐)19.7

• 고용탄성치는 주요 선진국에 비해 낮아 경제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나 최근 큰 폭 상승

* '04~'11년 평균: (한)0.29('11년 0.47) (영)0.42 (프)0.47 (호)0.86 (독)0.93

- 기업들의 해외투자가 확대되고, 취업유발계수가 높은 서비스업의 취업자 비중이 주요 선진국에 비해 낮은 데 일부 기인

* 취업유발계수('10년, 명/10억원): (전산업)12.9 (제조)9.3 (서비스)16.6

• OECD 국가들에 비해 제조업 취업자 비중이 높은 편이며, 비임금근로자 비중은 OECD 국가 중 4번째

* 산업별 취업자 비중(%): (서비스업)69.2 (제조업)16.9 (건설업)7.2 (농림어업)6.4

OECD: (서비스업)72.4 (제조업)12.7 (건설업)6.6 (농림어업)5.1

- 다만, 추세적으로 제조업 취업자 비중은 감소하고 서비스업 취업자 비중은 증가하는 모습

* 제조업 취업자 비중(%): ('04)18.5 ('06)17.5 ('08)16.8 ('10)16.9 ('11)16.9

서비스업 취업자 비중(%): ('04)65.0 ('06)66.5 ('08)67.9 ('10)68.8 ('11)69.2

- 최근 자영업자 증가에도 전반적인 고용호조세 등에 힘입어 전체 취업자에서 비임금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소폭 하락

④ **(실업자)** '11년 실업률(15~64세)은 3.5%로 OECD 국가 중 최저 수준(OECD 평균 8.1%)

• 6개월 이상 장기 실업자 비중(6.8%)도 OECD (48.4%) 국가 중 최저

* 글로벌 금융위기시 소폭 증가하였으나, '00년(14.1%) 이후 추세적으로 하락

• 글로벌 금융위기기간 중 주요 선진국과 비교시 성장률 변동폭에 비해 실업률 변동폭이 상대적으로 완만

2. 고용의 질

① **(근로시간)** '10년 주당평균 근로시간은 44.6시간으로 OECD 국가 중 최고수준

• 다만, 최근 5년간 근로시간이 OECD 국가들 중 가장 빠르게 감소

* 최근 5년('07~'11)간 연평균 △1.66% 감소

② **(임금)** '11년 연평균 임금은 3.5만불(USD PPP환산)로 OECD 국가들 중 중간수준

• 최근 10년간 연평균 실질임금이 OECD 국가들에 비해 빠르게 상승

* 연평균 실질임금 상승률('02~'11, %): (한)2.00 (독)0.29 (일)0.22 (미)0.87 (프)1.01

③ **(단시간 근로자)** '11년 주 30시간 미만의 근로자 비중은 13.5%로 OECD 국가 중 단시간 근로자 비중이 낮은 편

• 여성들의 경제활동참여 저조로 여성의 단시간 근로자 비중이 주요 선진국에 비해 크게 낮은 데 기인

* 단시간 근로 비중(%): (남성) 한국 13.5, OECD 9.1 (여성) 한국 18.5 OECD 26.0

3. 노동 효율성

① **(생산성)** 노동생산성이 최근 크게 개선되었으나, 취업자당 노동생산성은 OECD 국가 중 23번째로 여전히 낮은 수준('10년)

* 노동생산성(2005=100, '10년): (일)95.0 (영)102.9 (독)103.1 (미)104.9 (한)116.3

노동생산성(한국=100, '10년): (일)114.2 (영)127.3 (독)127.6 (미)168.9

• '10년 노동생산성 상승은 OECD 국가 중 취업자 증가율이 높은 편(OECD 국가 중 6위)임에도 GDP 증가율(OECD 국가 중 3위)이 더 높게 상승한 데 기인

* 노동생산성 증가율=GDP 증가율-노동투입량 증가율

② **(단위노동비용)** 단위노동비용 증가율은 0.7%로 OECD 국가(평균 2.9%)들 중 낮은 편('09년)

• 이는 한국의 임금상승률이 노동생산성 증가율에 비해 증가하고 있음을 의미 (단위노동비용 증가율=임금상승률-노동생산성증가율)

4. 고용분야 재정정책

① **(규모)** GDP 대비 고용분야 재정지출 규모는 '07년 0.38%에서 '10년 0.76%로 크게 확대(+0.38%p, OECD +0.55%p)

• 최근 지출규모 확대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고용분야 재정지출 비중은 OECD 국가 중 하위 4번째(OECD 평균 1.72%)

생산가능인구 변화 전망(2010~204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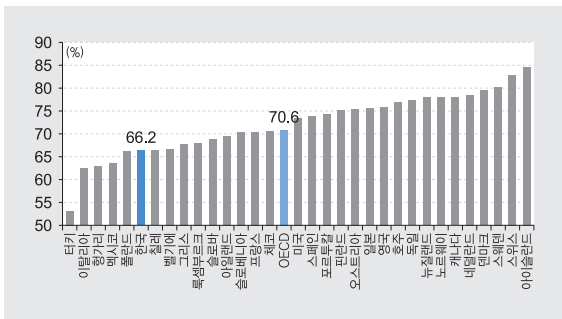
생산가능인구 (2010=100)	한국	미국	프랑스	영국	독일	일본	인도	브라질	중국
2010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2020년	101.6	103.9	99.7	102.2	94.9	90.8	116.9	111.3	101.9
2030년	91.4	106.3	99.9	103.8	84.9	85.1	131.0	114.3	98.9
2040년	80.2	111.4	100.2	104.3	78.4	75.5	140.8	113.2	88.5

- 경제 내 주된 근로 연령층 비중(25~54세/15세 이상)은 '10년 58.7%에서 '40년 37.4%로 큰 폭의 감소 예상

② 경제활동인구

- '11년 경활참가율(15~64세)은 66.2%로 OECD 국가(평균 70.6%) 중 하위권
- * 15세 이상 경활참가율은 61.1%

경활참가율(15~64세, 2011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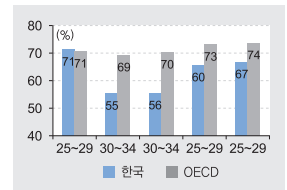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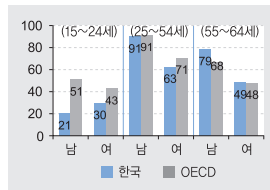


- 55~64세 경활참가율이 높은 반면, 15~24세 남·여, 25~54세 여성의 경활참가율은 주요 선진국에 비해 크게 저조
- 15~24세의 경우 고학력화와 이로 인한 일자리 미스매치 등으로 남성과 여성 모두 경제활동참가율이 저조
- * 15~24세 경활참가율: (한)25.5 (OECD)47.2 → 하위 3번째 (헝가리, 룩셈부르크)

- 특히, 남성의 경우 군복무 문제 등으로 경활참가율이 여성에 비해 크게 낮고, 주요 선진국의 절반 수준에도 미달
- * 15~24세 남성 경활참가율이 여성과 같다면 전체 경활참가율 0.7%p 제고(66.2 → 66.9)
- OECD 평균과 같다면 전체 경활참가율 2.1%p 제고(66.2 → 68.3)
- 25~54세 여성의 경우 30대 이후 결혼·출산 등에 따른 경력단절로 경활참가율이 급격히 하락
- * 20대 후반 크게 상승후 30대 급격히 하락한 뒤 이후 점차 개선되는 M자형 흐름

성·연령별 경활참가율

여성 연령별 경활참가율



- 글로벌 금융위기 기간 중 경제활동참가율이 크게 하락하였으나 이후 빠른 수준으로 개선되며 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
- * 경활참가율(15~64세, %): (07)66.2 (08)66.0 (09)65.4 (10)65.8 (11)66.2
- 다만, 15세 이상 기준으로는 최근 고령층 인구 증가에 따라 아직 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07년 61.8% → '11년 61.1% → '12.8월 계절조정 61.4%)

12. 7월 전체 임금근로자 중 근속기간 1년 미만 근로자

(만명, %)	전체	15~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 이상
전체 임금근로자	1,791.0	27.1	342.8	482.0	469.2	325.2	144.8
연령별 비중	100.0	1.5	19.1	26.9	26.2	18.2	8.1
근속기간 1년 미만	637.4	25.7	176.6	124.4	125.1	109.4	76.2
연령별 비중	100.0	4.0	27.7	19.5	19.6	17.2	12.0

* 통계청 경찰조사 마이크로 데이터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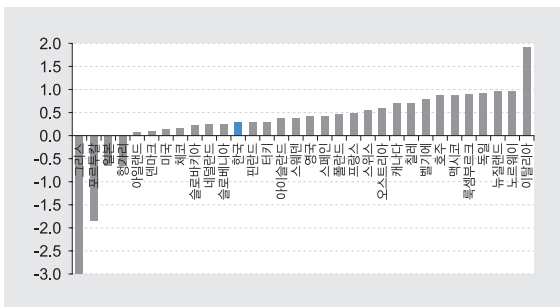
- 성장률 대비 취업자 수 증가율(고용탄성치)은 주요 선진국에 비해 낮아 경제성장을 통한 고용창출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

* '04~'11년 평균: (한)0.29('11년 0.47) (영)0.42 (프)0.47 (호)0.86 (독)0.93

- 기업들의 해외투자가 확대되고, 취업유발계수가 높은 서비스업의 취업자 비중이 주요 선진국에 비해 낮은 데 일부 기인

* 취업유발계수('10년, 명/10억원): (전산업)12.9 (제조)9.3 (서비스)16.6

고용탄성치('04~'11년 평균)



- 산업별로는 OECD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제조·건설·농림어업 취업자 비중이 높고, 서비스업 취업자 비중이 낮은 편

* 산업별 취업자 비중(%, '11년): (서비스업)69.2 (제조업)16.9 (건설업)7.2 (농림어업)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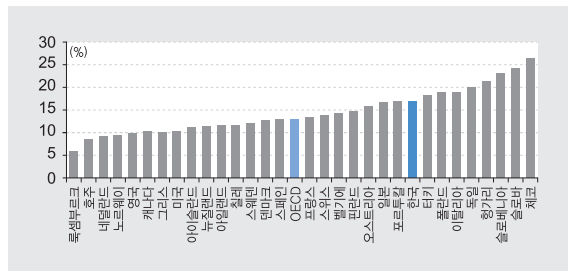
OECD : (서비스업)72.4 (제조업)12.7 (건설업)6.6 (농림어업)5.1

- 다만, 추세적으로 제조업 취업자 비중은 감소하고 서비스업 취업자 비중은 증가하는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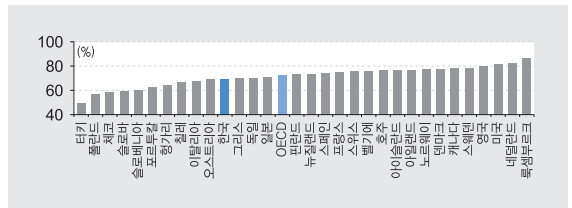
* 제조업 취업자 비중(%): ('04)18.5 ('06)17.5 ('08)16.8 ('10)16.9 ('11)16.9

서비스업 취업자 비중(%): ('04)65.0 ('06)66.5 ('08)67.9 ('10)68.8 ('11)69.2

제조업 취업자 비중(2011)



서비스업 취업자 비중(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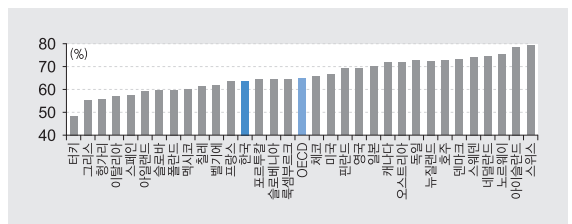


4 고용률

- '11년 고용률(15~64세)은 63.8%로 OECD 평균(64.7%)을 소폭 하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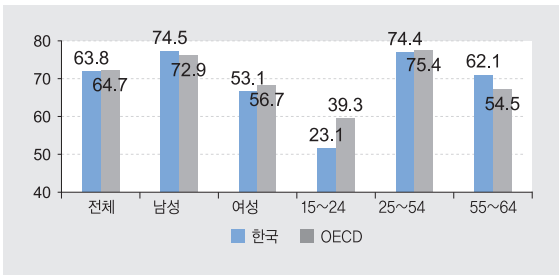
* 15세 이상의 고용률은 59.1%

고용률(15~64세, 2011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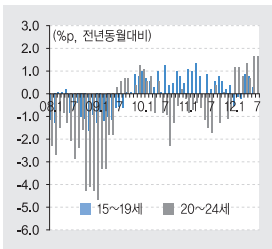
- 여성과 청년층(15~24세)의 고용률이 상대적으로 낮으며, 이는 경제활동참가율이 낮은 데 주로 기인

성·연령별 고용률(15~64세, '11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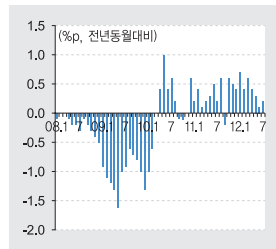


- 다만, 최근 여성, 청년층(15~24세)의 고용률이 점차 개선되는 모습
 - 최근 열린고용 확산 등으로 고교 졸업자의 대학진학률은 감소한 반면, 취업률은 증가하여 청년층 고용률 개선에 기여
 - * 고교 졸업자의 취업률은 29.3%로 '01년 이후 처음으로 증가(6.0%) 전환
 - * 특성화고(전문계고) 졸업자의 대학진학률은 50.0%로 전년 대비 11.0%p 감소하여 '09년 71.3%에 도달한 이후 지속 감소한 반면, 취업률은 77.8%로 전년 대비 9.6%p 대폭 증가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크게 개선되면서 30대 이상 맞벌이 여성이 증가
 - * 30대 이상 맞벌이 여성 증감(만명): ('07)6.0 ('08)4.7 ('09)11.6 ('10)10.1 ('11)9.5

15~24세 고용률 증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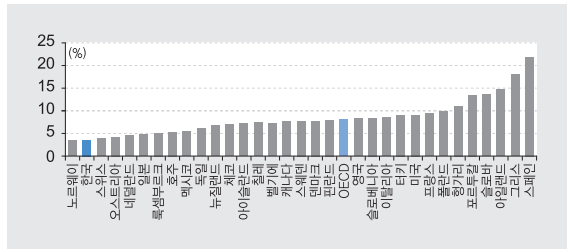
여성 고용률 증감(15세 이상)



5 실업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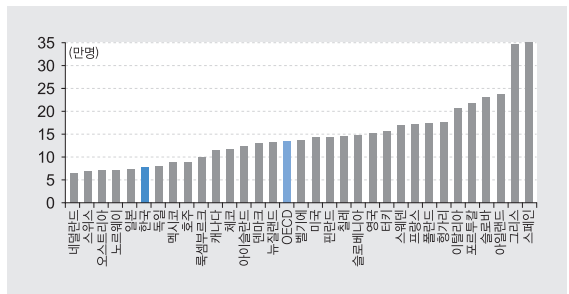
- '11년 실업률(15~64세)은 3.5%로 OECD 국가(평균 8.1%) 중 최저 수준
 - * 15세 이상의 실업률은 3.4%

실업률(15~64세, 2011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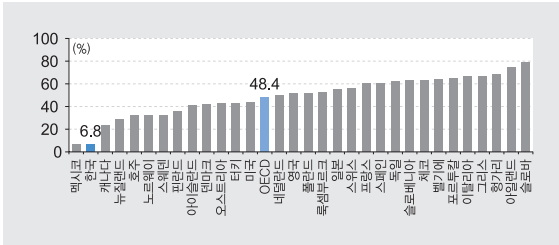
- 청년(15~29세) 실업률(7.6%) 역시 OECD 국가(평균 13.4%) 중 가장 낮은 수준

청년 실업률(15~29세, 2011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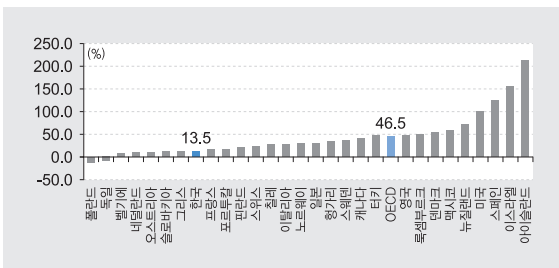
- 6개월 이상 장기 실업자 비중(6.8%)도 OECD 국가 중 최저
 - * 글로벌 금융위기시 소폭 증가하였으나, '00년(14.1%) 이후 추세적으로 하락
- 다만, 주요 선진국에 비해 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사회문화적 요인 등으로 비경제활동인구 비중이 높은 데에도 일부 기인

장기실업자 비중(6개월 이상, 2011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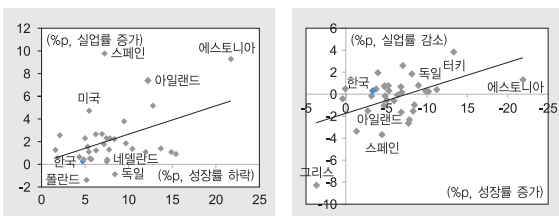
- 글로벌 금융위기기간('08~'09) 중 실업자는 10.6만 명(78.3 → 88.9만명)증가했으나 OECD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호한 수준

실업자 수 증가율('08~'09년)



- 실업률 역시 안정적 수준을 유지하였으며, 주요 선진국과 비교시 성장률 변동폭에 비해 실업률 변동폭이 상대적으로 완만

실업률, 성장률 증감('08~'09) 실업률, 성장률 증감('1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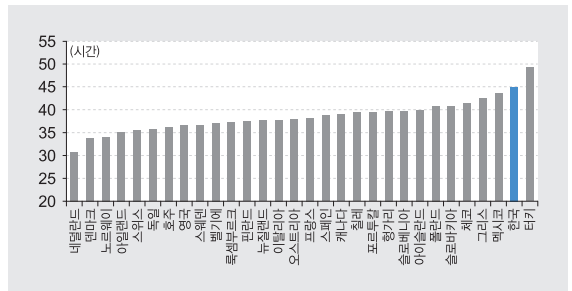


2. 고용의 질

1) 근로시간

- '11년 주당평균 근로시간은 44.6시간으로 OECD 국가 중 최고수준

주당 평균근로시간('11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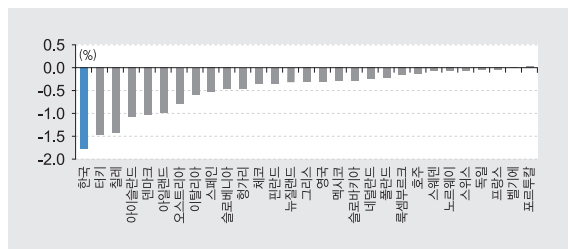


* 한국과 일본은 실근로시간, 기타 국가는 통상 근로시간

- 하지만, 주 40시간 근무제 도입, 여성층의 단시간 근로 확대 등으로 근로시간이 OECD 국가들 중 가장 빠르게 감소

* 최근 5년('07~'11)간 근로시간은 연평균 Δ 1.66%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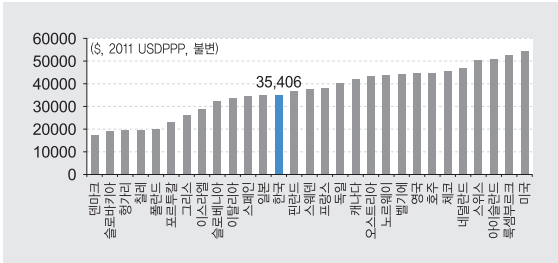
주당 평균근로시간 연평균 증감률('07~'11년)



2) 임금수준

- '11년 연평균 임금은 3.5만불(ppp기준)로 OECD 중간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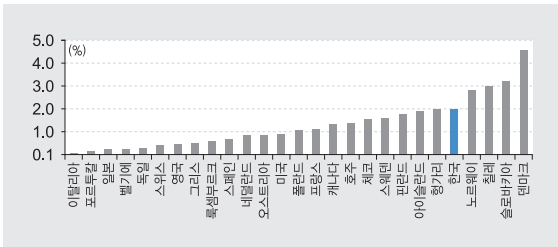
연평균 임금수준(2011년)



* 다만, 임금 산정기준은 국가별로 상이해 단순 비교는 곤란

- 하지만, 최근 10년간 연평균 실질임금이 OECD 국가들에 비해 빠르게 상승 ('02~'11년간 연평균 실질 임금 상승률 :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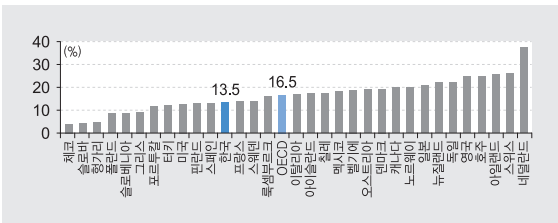
최근 10년간 연평균 실질임금증가율('02~'11년)



③ 단시간 근로자(주30시간 미만)

- '11년 주 30시간 미만의 근로자 비중은 13.5%로 OECD 국가 중 단시간 근로자 비중이 낮은 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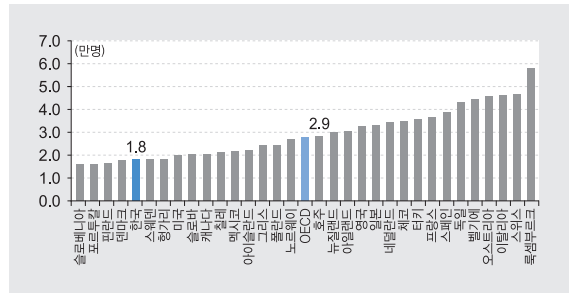
단시간 근로자 비중('11년)



- 여성들의 경제활동참여 저조로 여성의 단시간 근로자 비중이 주요 선진국에 비해 크게 낮은 데 기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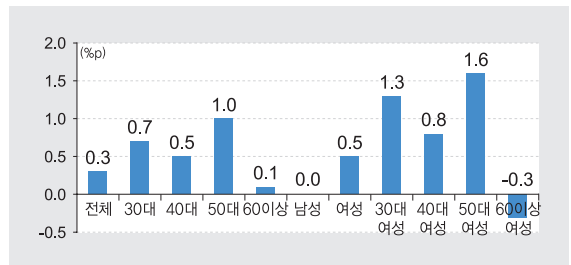
* 단시간 근로 비중(%): (남성) 한국 13.5, OECD 9.1 (여성) 한국 18.5 OECD 26.0

여성 단시간 근로자 비중/남성 단시간 근로자 비중('11년)



- 다만, 최근 남성 외별이 모델에서 선진국형 1.5인 맞벌이 모델로 전환됨에 따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확대되면서 여성의 단시간 근로 증가

경제활동참가율 증감('10~'11)



- ④ (비임금근로자) '10년 비임금근로자가 전체 취업자의 28.8%('11년 28.3%)를 차지하고 있어 OECD 국가 중 4번째로 높은 수준

II. 향후 노동시장의 구조개선 과제

1 우리 경제의 고용창출력 제고

- 주요 선진국에 비해 빠른 속도로 고용이 회복되고 있으나, 위기 이전 추세로 회복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 필요

* '12년 하반기 35만명, '13년 33만명 증가 예상

- '국가고용전략(10.10월) 상의 중기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매년 40만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 필요

* 2020 국가고용전략 고용률 목표: (15~64세 기준)70%, (15세 이상 기준)63.5%

-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주요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우리 경제의 고용창출력을 높일 필요
 - 취업유발계수가 높은 서비스업의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발굴
 - 해외투자기업이 복귀하고, 국내 기업들이 채용을 확대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인센티브를 확대·보완
 - 유연근로제 등 다양한 근무형태 확산과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인력운용의 탄력성을 제고하고 신규 인력 수요를 창출

2 선진국 수준으로 노동생산성 제고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수출증가, 내수회복 등으로 노동생산성이 크게 향상되었으나, 주요 선진국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준

- 노동생산성이 답보된 상태에서 고용만 증가시 소득감소, 고용의 질 하락 우려

- 특히, 최근 도소매, 음식숙박 등 생산성이 낮은 부문에 취업자가 크게 증가하여 고용탄성치는 높으나 경제 전체의 노동생산성은 둔화될 가능성

- 따라서 경제 전체의 노동생산성이 수반되는 일자리 창출 필요

- 취업자의 88%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설비투자 확대를 통해 자본집약도(노동자 1인당 자본량) 제고

*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의 자본집약도가 현저히 낮음

- 자본집약도('10년, 백만원): (전체)321.3 (대기업)839.1 (중소)165.2

- 고부가 서비스산업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해당분야 고용비중을 높이고, 산업간 융합 등 IT부문 기술 확산

3 성장잠재력 제고를 위해 안정적인 노동력 확보

- 향후 인구구조 변화로 생산가능인구(15~64세 기준)는 점차 감소하고 취업자는 50대 이상의 고령층 중심으로 급속히 재편될 가능성

- 연령대별 현 고용률 수준 유지시 '20년 50대 이상 취업자 비중은 35%를 상회할 전망

*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16년을 정점으로 점차 감소

* 50세 이상 취업자 비중(%): ('70)16.3 ('80)18.1 ('90)22.6 ('00)23.0 ('11)32.9

- 안정적인 노동력 확보를 위해서는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인 여성, 청년층의 고용률을 높일 필요

- 여성의 경우 일·가정이 양립할 수 있도록 보육지원을 확대하고, 여성들이 선호하는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창출

- 청년의 경우 고학력화에 따른 미스매치를 완화하고, 노동시장 진입연령이 단축될 수 있도록 열린 고용문화 확산

- 고령층의 경우 고용률이 OECD 평균을 상회하나 대부분 정년보다 이른 시기(약 53세)에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하는 점을 감안하여, 퇴직 연장, 전직 지원 확대 등 검토 필요

4 고용의 질 개선

- **(비정규직)** 노동시장 수급 관점에서 일정부분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고용여건 개선이 필요

- 노동수요 측면에서는 경영 불확실성 등으로 탄력적 인력운용의 필요성이 높아졌으며, 노동공급 측면에서는 학업병행, 일·가정양립 등으로 자발적 선택 비중 증가

- 하지만, 정규직과의 높은 격차 해소를 위해 차별시정제도의 실효성 강화, 처우개선 등 고용여건 개선 노력이 필요
- 또한, 원·하청구조의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통해 비정규직 증가의 구조적 요인을 개선하고, 여성들이 선호하는 정규 파트타임 일자리 창출
- **(자영업)** 노동시장의 완충지대 역할을 하나, 특정부문에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어 구조조정 필요
- 기존의 한계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직업훈련, 생계비 지원 등을 통해 출구전략을 마련해 주고,
- 도소매, 음식숙박 등 생계형 창업에 대해서는 대출·재정지원 요건 강화, 체계적 훈련 프로그램 설계 등을 통해 신규진입 억제
- **(임금격차)** 구직자들이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함께 저임금 분야의 생산성 제고 노력 필요
- 학력, 기업규모, 성별, 고용형태, 지역, 산업, 직업 등 임금격차를 유발하는 요인별로 맞춤형 대책 마련

5 실업률 등 고용보조지표 개발

- 비경제활동인구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의 고용상황을 감안시 고용보조지표 개발을 통해 노동시장 흐름을 보다 면밀히 판단할 필요
- 글로벌 금융위기 기간 중 실업자 외에도 비경제활동인구가 크게 증가
- ILO 국제표준 논의 및 해외 사례 검토 등을 통해 노동저활용지표 등 보조지표 개발을 추진
- * ILO는 '13년 제19차 노동통계회의에서 고용보조지표의 국제표준 채택에 대하여 논의할 예정

6 정부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효율화

- 고용분야 재정지출 중 직접일자리 창출 부문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며, 위기시 급격한 고용악화를 억제하는 데 크게 기여
- 하지만, 향후 일자리 창출 모멘텀이 지속되기 위해

서는 직접일자리 사업뿐만 아니라 고용서비스, 직업훈련 등의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



각 언론매체에 보도된 한국조세연구원 관련 주요 기사내용입니다.

- 편집자 주 -

조세연구원 20주년 세미나 “소득세 안 내는 근로자 10명중 4명”

소득세의 GDP 비중, OECD 평균 크게 못미쳐

한국 소득세의 국내총생산(GDP)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비과세·감면 항목이 너무 많아 근로자 중 세금을 안 내는 사람이 40%에 달하는 등 과세 기반이 취약해 소득세제 개편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19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한국조세연구원 개원 20주년 기념세미나에서 안중석 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중장기 조세 재정정책 운용방향’이란 주제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안 연구위원은 향후 복지비 부담이 갈수록 늘어날 것을 감안할 때 소득세 등을 중심으로 조세부담률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OECD 자료를 인용, 2010년 기준으로 GDP 대비 소득세 비율이 한국의 경우 3.6%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OECD 평균은 8.7% 수준이며 조세부담률이 한국보다 낮은 멕시코, 칠레, 미국, 호주, 터키, 일본 등 6개국의 평균치(6.0%)보다도 크게 낮다.

소득세 비중이 낮은 것은 소득세율이 낮아서가 아니라 비과세·감면 항목이 지나치게 많아 소득이 있는데도 사실상 세금을 내지 않는 사람이 많기 때문이다. 2010년 기준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자 중 세금을 내지 않은 사람은

무려 43.8%에 달했다.

또 근로소득세 과세 대상자 중 과세 기준에 미달하거나 세금 감면 조치 등으로 낸 세금을 고스란히 환급받아 최종 납부세액이 0인 사람 비중은 39.1%였다. 근로자 10명 중 4명은 세금을 안 낸다는 뜻이다.

안 연구위원은 “비과세·감면이 상당 부분 소득공제 형식으로 돼 있어 고소득자일수록 혜택이 크다”며 “소득세 과표구간 상향조정보다는 비과세·감면 항목을 대폭 축소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회보장 관련 부담금(건강보험료 등)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5.7%에 불과해 OECD 평균(9.2%)과 큰 차이가 났다. 일반소비세의 GDP 비중도 한국은 4.4% 인 데 비해 OECD 평균은 6.7%였다.

반면 법인세와 재산세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한국이 다른 OECD 국가에 비해 높은 편에 속했다. 법인세의 GDP 비중은 3.5%로 OECD 평균(2.8%)보다 0.7%포인트 높았고 재산세 비중은 2.9%로 OECD 평균(1.8%)을 웃돌았다.

조세연구원은 복지 재정 마련 등을 위해서는 향후 비과세·감면 축소, 일반소비세(부가가치세) 인상 등을 통해 조세부담률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부가가치세의 경우 1977년 10%로 정해진 뒤 30년 넘게 단일 세율을 유지해오고 있어 개편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조세연구원에 따르면 2010년 한국의 조세부담률은 19.3%로 OECD 33개국 중 멕시코, 일본, 슬로바키아, 미국, 체코에 이어 여섯 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건강보험료

등을 포함한 국민부담률은 25.1%로 멕시코, 칠레, 미국에 이어 네 번째로 낮다.

(한국경제, 2012-09-19)

“복지확대·통일 겹치면 2050년 말 국가 채무 유럽 위기국보다 위험”

조세연구원, 재정 전망 세미나

국내총생산(GDP) 대비 30%대 초반의 낮은 국가채무비율. 한국 경제의 자랑거리다. 3대 국제 신용평가사(무디스·피치·스탠더드앤드푸어스)가 잇따라 한국 신용등급을 올린 주요 근거이기도 하다.

이런 ‘재정 모범국가’ 한국이 2050년이면 지금의 PIGS(포르투갈·이탈리아·그리스·스페인) 국가보다 심각한 ‘재정 불량국’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가 채무가 2050년 말 GDP의 165%까지 치솟을 거란 전망이다. 전제는 있다. 정치권의 4.11 총선 공약을 모두 이행하고, 부실 저축은행 구조조정과 한국토지주택공사 손실보전에 재정을 투입하고, 2040년 남북한 통일을 이루는 국가재정 최악의 3대 시나리오가 현실로 닥칠 경우다. 19일 한국조세연구원 개원 20주년 기념 세미나에서 박형수 조세연구원 연구기획본부장이 발표한 ‘장기 재정 전망과 재정정책 운용 방향’ 내용이다.

이에 따르면 한국의 재정을 위협하는 요인은 크게 세 가지다. 갈수록 늘어나는 복지지출, 공공부문 부실로 인한 재정 투입, 남북 통일. 이 셋이 겹치면 2050년 한국 국가 채무는 GDP의 최고 165.4%에 달할 전망이다. 2010년 말 한국 국가채무비율(33.4%)의 5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치(97.9%)의 1.7배에 달하는 수치다. 현재 재정위기로 어려움에 처한 남유럽 PIGS 국가(평균 120%)보

다 훨씬 높은 위험한 수준이다.

최악은 피하고 정치권의 복지 공약만 따르더라도 국가 채무 급증은 피할 수 없다. 새누리당 총선 공약을 그대로 따르면 2050년 국가부채비율은 102.6%로 추정된다. 민주통합당 공약대로면 이 비율은 114.8%로 높아진다.

국민 주머니에서 나가야 할 세금도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최악의 시나리오 대로면 GDP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율(조세부담률)은 현재 19.4%에서 2050년 24.5%로 쏠린다. 가파르게 늘어날 국가채무를 조금이라도 줄이려면 세금 부담을 이보다 더 늘리는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안중석 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소득세, 사회보장기여금(국민연금·건강보험 등), 부가가치세를 늘리는 보편적 증세”를 해답으로 제시했다.

(중앙일보, 2012-09-20)

여야 복지공약 이행 때 정부지출 75조~165조 늘어

조세연구원, 재정건전성 영향 분석

최악의 경우 2050년 나랏빚 GDP 대비 160% 넘을 수도

여야 정치권이 내놓은 복지공약들을 모두 이행하고 남북통일로 통일비용이 늘어나는 등 재정지출이 급증하면 2050년에 국가채무비율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160%를 넘어갈 것이라는 국책연구기관의 연구결과가 나왔다.

박형수 한국조세연구원 연구기획본부장은 20일 내놓은 ‘장기재정 전망과 재정정책 운용방향’ 보고서에서 “각당의 복지공약이 현재의 고령화 추이와 맞물리면 재정 소요 급증할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의 총선공약에 따른 복지제도 확대 △공공부문 재정위험의 일부 현실화 △남

북통일로 인한 비용발생 등이 동시에 일어나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해 2050년의 국가 재정상태를 전망했다. 그 결과 2010년 현재 19.4%인 조세부담률은 새누리당의 공약을 적용하면 2050년에 23.6%, 민주당의 공약을 반영하면 24.7%까지 각각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다. 또 2010년 33.4%인 국가채무비율도 2050년에는 153.9%(새누리당)와 165.4%(민주당)까지 각각 급증할 것이라고 보고서는 전망했다.

이 보고서는 이어 “올해 4월 새누리당의 총선공약을 반영하면 2013~2017년 중 75조 3천억원, 민주통합당의 공약을 반영하면 164조 7천억원의 복지예산이 더 필요하다”며 “새누리당 공약은 매년 GDP 대비 0.8~0.9%, 민주당 공약은 1.3~2.2%의 추가 예산을 필요로 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한국의 GDP 대비 공공사회복지지출의 비율도 2009년에 9.6%였지만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복지공약이 현실화 되면 2050년에 각각 22.6%, 24.5%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박 본부장은 “정치권의 공약에 의해 늘어나는 복지 지출은 고령화와 상승작용을 일으켜 재정을 급격히 악화시킬 수 있다”며 “정치적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이 재정 건전화의 최대 위협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꼭 필요한 분야에 선별적인 복지확대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동아일보, 2012-09-20)

“파생금융상품 거래세 도입, 급격한 자금유출입 막아야”

조원동 한국조세연구원 원장

조원동 한국조세연구원장은 “급격한 자금 유출입을 막기 위해 거래비용을 높여 완충적인 기능을 해야 한다”며

파생금융상품 거래세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 원장은 지난 18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파생상품 거래세에) 찬성한다. 3년 유예도 안 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세제 개편안에서 선물 0.001%, 옵션 0.01%의 거래세를 부과하기로 했지만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증권사들의 반발을 감안해 3년간 유예 기간을 둔 뒤 2016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조 원장은 “미국이 3차 양적완화로 돈을 풀고 있고, 유럽연합(EU), 개발도상국 등도 마찬가지로 돈을 풀어 최근 국제 유동성이 크게 늘었다”며 “우리 신용등급이 올라간 덕분에 국제시장에 들어온 돈만 70조원, 모기지담보증권(MBS) 등까지 합치면 90조원 가까이 되지만 반대로 어려운 상황이 되면 (자금이) 그만큼 빨리 빠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외환보유액에서 800억달러가 줄었는데, 채권시장에서만 400억달러가 빠져나갔다”며 “금융시장이 불안정한 상황을 고려해 거래비용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증권업계는 파생상품 거래세 도입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파생상품은 현물과 선물 간의 투자 이익과 손실을 상쇄해 투자 위험을 낮추기 위해 마련된 시스템인데 여기에 세금을 부과하면 안된다는 것이다. 조 원장은 “현재 정부가 제시한 세율은 시행해본 적이 없어 100% 확신할 수 없지만 적절한 수준이라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경향신문, 2012-09-20)

재정포럼

2012년 9월호 통권 제195호

- 발행처 / 한국조세연구원
- 발행인 / 조원동 (한국조세연구원 원장)
- 편집위원장 / 노영훈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편집위원 / 김재진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현아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송헌재 (한국조세연구원 부연구위원)
유정숙 (한국조세연구원 부연구위원)
윤성주 (한국조세연구원 부연구위원)
- 편집·제작 / 최병규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출판팀장)
최운용 (한국조세연구원 전문연구위원)
박산유 (한국조세연구원 전문위원)

■ 월간 재정포럼

2012년 9월 21일 발행 / 제16권 제9호(통권 제195호)
1996년 5월 31일 등록 / 등록번호 송파라00035
발행처 / 한국조세연구원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28길 28
TEL : (02) 2186-2130~3 E-mail: pub@kipf.re.kr
Homepage: <http://www.kipf.re.kr>

■ 값 3,000원

- 월간 『재정포럼』에 실린 기사의 내용은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서 한국조세연구원의 공식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 월간 『재정포럼』은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파본은 교환해 드립니다.

■ 편집디자인 / 선 디자인 (02) 2269-2234

■ 인쇄 / 고려문화사 (02) 2277-1509

『재정포럼』 정기구독 신청 안내

■ 정기구독회원이 되시면

원하시는 곳에서 매달 책을 받아보시게 되며, 도중에 책값이 오르더라도 별도 부담이 없습니다.
우송료는 본원이 부담하며 1년 구독 시 두달치의 책값이 절약됩니다.

■ 정기구독 신청방법

정기구독 신청은 우편·전화·FAX·E-mail을 이용하셔서 받아보실 분의 주소·이름·전화번호 및 구독기간을 정확히 알려 주십시오.

- TEL : (02) 2186-2132
- FAX : (02) 2186-2139
- E-mail : pub@kipf.re.kr
- 주소 : 138-774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28길 28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출판팀

■ 정기구독료

1년간 정기구독료는 30,000원입니다.
2~3년간 장기구독도 가능합니다.

■ 구독료 납부방법

- 지로이용 : 본원 소정의 지로용지나 은행 비치 지로용지(지로번호 6923437)를 이용하십시오.
- 온라인 입금 : 우리은행 가락중앙지점
· 계좌번호 : 441-05-000011
· 예금주 : 한국조세연구원